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대한 해설서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2021년 4월 30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publishing@echr.coe.int](mailto:publishing@echr.coe.int) 에 연락해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4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www.echr.coe.int](http://www.echr.coe.int)에서 [Case-law] - [Case-law analysis] - [Case-law guides]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목차

일러두기.....	5
서론.....	6
<b>I. 일반 원칙 및 적용가능성.....</b>	<b>9</b>
A. 민주사회에서 협약 제9조의 중요성과 종교단체의 청구인적격 .....	9
B. 제9조가 보호하는 신념 .....	9
C. 신념을 가질 권리와 표명할 권리 .....	14
D. 국가의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20
1. 권리행사의 제한과 정당한 목적 .....	20
2.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 .....	24
E. 제9조와 다른 조항들에 의한 보호의 경합.....	25
<b>II. 제9조에 의해 보호받는 행위.....</b>	<b>29</b>
A. 소극적 측면.....	29
1. 종교생활을 영위하지 않거나 신념을 밝히지 않을 권리 .....	29
2. 양심적 거부: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 .....	30
B. 적극적 측면.....	37
1. 일반 원칙.....	37
2. 종교의 자유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	38
3. 음식에 관한 율법의 준수 .....	39
4. 종교적 의복 및 상징 착용 .....	40
5. 종교적 자유, 가족 및 자녀 교육 .....	47
6. 설교와 전도 .....	52
7. 예배의 자유.....	53
8. 예배의 장소와 건물.....	56
C. 종교와 이민의 자유.....	60
1. 외국인의 체류 및 고용과 종교의 자유.....	60
2.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가로의 추방 .....	62
<b>III. 종교의 자유 수호자로서 국가의 의무.....</b>	<b>64</b>
A. 소극적 의무: 종교단체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	64
1. 회원국에서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	64
2. 종교단체의 공인, 등록 및 해산 .....	66
3. 종교 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경멸적 용어 사용.....	74

4. 재정지원과 조세 .....	75
5. 종교적 색채를 띤 정당에 대한 조치.....	83
<b>B. 소극적 의무: 종교단체 자율성에 대한 존중.....</b>	<b>84</b>
1. 종교단체 자율성의 원칙.....	84
2. 교단 내 또는 교단 간 갈등에 대한 국가의 개입 .....	86
3. 종교단체와 구성원(신도와 성직자) 간 분쟁 .....	92
4. 종교단체와 직원 간 분쟁 .....	93
<b>C. 적극적 의무 .....</b>	<b>97</b>
1. 제3자에 의한 물리적, 언어적 또는 상징적 공격에 대한 보호 .....	97
2. 직장, 군대, 법원에서의 종교.....	100
3. 재소자의 종교의 자유 .....	104
<b>인용 판례 목록 .....</b>	<b>109</b>

##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9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해당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 국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ECHR 2016).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89, no. 30078/06,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협약"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 )"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협약 제9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예배, 선교, 행사, 의식을 통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 HUDOC 키워드

적극적 의무 (9)

사상의 자유(9-1) – 양심의 자유(9-1) – 종교의 자유(9-1) – 종교 또는 신념의 변경(9-1) – 종교 또는 신념의 표명(9-1): 예배(9-1); 선교(9-1); 행사(9-1); 의식(9-1)

제한(9-2) – 법이 정하는(9-2): 접근가능성(9-2); 예측가능성(9-2); 남용에 대한 보호조치(9-2) – 민주사회에 필요한(9-2):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호(9-2); 보건 보호(9-2) – 도덕 보호(9-2);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9-2)

## 서론

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유럽인권협약뿐만 아니라 국가적, 국제적 그리고 유럽차원의 문서들에서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2. 협약 제9조에 따르면,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예배, 선교, 행사, 의식을 통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이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3. 협약에 대한 제1의정서 제2조는 종교의 자유 중 구체적인 한 측면, 즉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녀교육을 보장할 권리를 다룬다.

"어느 누구에게도 교육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한 모든 기능 행사에 있어, 국가는 부모의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신념에 따라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제9조는 흔히 종교와 견해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14조에 비추어 적용된다(이 점에 관하여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60 및 165 참조).

"이 협약에서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관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를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5. 협약 외에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국제연합(UN)의 주요 기본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를 통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택에 따른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8조는 요컨대 규약의 당사국이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약 제26조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도 포함된다.
6. 종교의 자유 원칙은 제14조에 종교의 자유가 매우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롯한 다른 여러 국제 문서에서도 나타나 있다. 마찬가지로, 인권에 관한 미주국가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역시 "모든 사람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거나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침해하게 될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주국가협약 제12조는 마지막으로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나 피후견인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7. 유럽연합 기본권헌장(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역시 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헌장 제10조). 또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은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교육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칠 부모의 권리는 ...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4조제3항).

8.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대체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토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유럽의 판사들은 종교의 자유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인생관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 실제로, 재판소는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이후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협약상의 독자적인 권리의 지위로 격상했다.
9. 재판소가 제9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건들의 숫자가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사회적 담론에서 종교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 I. 일반 원칙 및 적용가능성

### A. 민주사회에서 협약 제9조의 중요성과 종교단체의 청구인적격

10. 협약 제9조에 명시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협약에서 의미하는 "민주사회"의 토대 중 하나다.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서 신자의 정체성과 인생관을 구성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무관심자에게도 소중한 자산이다. 수 세기에 걸쳐 힘겹게 쟁취한 민주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 다원성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러한 자유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를 표명하거나 표명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Kokkinakis v. Greece*, § 31; *Buscarini and Others v. San Marino* § 34).
11. 따라서 교회 또는 종교단체는 신자를 대신하여 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 72; *Leela Förderkreis e.V. and Others v Germany*, § 79). 즉, 교회 또는 종교단체가 신자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집단적 측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고 제기한 청구는 협약의 인적 관할과 양립할 수 있으며, 교회 또는 종교단체는 협약 제34조에서 의미하는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12. 반면, 이미 승인된 종교단체의 재등록을 거부한 사건에서, 해당 종교단체가 스트라스부르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인 청구인은 종교단체에만 영향을 미친 국가기관의 재등록거부 결정으로 발생한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제9조에 따라 제기한 청구는 협약의 인적 관할 요건과 일치하지 않았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168)
13. 법인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협약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는 행사할 수 없다(*Kontakt-Information-Therapie and Hagen v. Austria*, 위원회 결정).

### B. 제9조가 보호하는 신념

14. "종교"라는 단어는 제9조 본문이나 재판소의 판례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종교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것은 꽤 타당한 이유가 있다. 종교에 대한 정의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다수가 가진 종교와 소수의 종교, 오래된 종교와 새로운 종교, 유신교와 무신교)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하고 개별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으로 제9조는 의견과 신념을 종교적인 것이나 비종교적인 것 모두 보호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의견이나 신념이 반드시 제9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제9조제1항 "행사(practice)"라는 용어가 종교나 신념에 의해 동기부여되었거나 영향받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지는 않는다(*Pretty v. the United Kingdom*, § 82).

15.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협약이 이론적이거나 허구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지적한다. 만약 국가에게 인정된 재량이 종교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신생종교나 소수파의 종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는 정도가 된다면 제9조에 명시된 권리는 매우 이론적이고 허구적일 것이다. 종교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앙의 종교적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기 마련이다. 어쨌든 이러한 정의는 신생 종교에 불리하도록 해석해서는 안 된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14).
16. 개인적 또는 집단적 신념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설득력(cogency), 진지성(seriousness), 밀착성(cohesion), 중요성(importance)**을 가져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종교적 신념이나 그 표현방식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국가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81). 그러므로 어떤 한 종교에서 핵심이 되는 원칙과 신념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에 관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종교적 문제에 대한 해석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69; *Kovaļkovs v. Latvia* (dec.), § 60. 따라서 재판소는 논쟁을 위해 특정 종교의 용어와 개념을 언급할 때 제9조가 적용된다는 판단 외에는 이러한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ibid.* [GC], § 69). 일반적으로 신앙의 기본적인 계율과 국가에 대한 요구들에 관하여 종교단체 내부에서 논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9조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ibid.* [GC], § 134).
17. 재판소와 위원회는 협약 제9조제1항에 의한 보호가 다음 사항들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 (a) 다음과 같은, 수 천 년 또는 수 세기 동안 존재해온 "주요한" 또는 "아주 오래된" 세계적인 종교들.
- 알레비교(Alevism)(*Cumhuriyetçi Eğitim ve Kültür Merkezi Vakfı v. Turkey*;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 불교(*Jakóbski v. Poland*)
  - 다양한 기독교 종파(여러 판례들 중에서, *Svyato-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 하레 크리슈나(Hare Krishna)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힌두교(*Kovaļkovs v. Latvia* (dec.); *Genov v. Bulgaria*)
  - 아흐마디아 종파(Ahmadism)(*Metodiev and Others v. Bulgaria*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교(*Hassan and Tchaouch v. Bulgaria* [GC]; *Leyla Şahin v. Turkey* [GC]))

- 유대교(*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Francesco Sessa v. Italy*)
  - 시크교(*Phull v. France* (dec.); *Jasvir Singh v. France* (dec.))
  - 도교(*X. v. the United Kingdom*, 1976년 5월 18일 위원회 결정)
- (b) 다음과 같은, 신생 종교 또는 비교적 새로운 종교들.
- 만다롬의 오움교(Aumisom of Mandarom)(*Association des Chevaliers du Lotus d'Or v. France*)
  - 오쇼(Osho) 운동으로 알려진 바그완 슈리 라즈니쉬(Bhagwan Shree Rajneesh) 운동(*Leela Förderkreis e.V. and Others v. Germany*; *Mockuté v. Lithuania*, § 121)
  - 문선명 목사의 통일교(*Nolan and K. v. Russia*; *Boychev and Others v. Bulgaria*)
  - 몰몬교,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the United Kingdom*)
  - 라엘리안 운동(Raëlian Movement)( *F.L. v. France* (dec.))
  - 신-이교주의(Neo-Paganism)(*Ásatrúarfélagið v. Iceland* (dec.))
  - "아야우아스카(ayahuasca)"라는 환각 물질을 사용하여 종교의식을 하는 "산토 다이메(Santo Daime)"교(*Fränklin-Beentjes and CEFLU-Luz da Floresta v. the Netherlands* (dec.))
  - 여호와의 증인(*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c) 다음과 같은, 일관성 있고 신실한 다양한 철학적 신념들
- 평화주의(*Arrowsmith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보고서, § 69)
  - 양심적 병역거부(*Bayatyan v. Armenia* [GC])
  - 채식주의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조작과 동물실험 반대(*W.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 낙태반대(*Knudsen v. Norway*), 위원회 결정; *Van Schijndel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 의료철학을 표명하는 한 형태인 대체의학에 대한 의사의 견해(*Nyyssönen v. Finland*, 위원회 결정)

-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평생의 결합이라는 신념과 동성결혼 반대(*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세속주의에 대한 지지(*Lautsi and Others v. Italy* [GC], § 58; *Hamid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 35)
18. 제9조는 앞서 언급한 신념과 교리에 적용되며, 피청구국이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국가가 공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9조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Mockutė v. Lithuania*, § 119).
19. 우리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념이나 철학에 기초하지만 **순전히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이 제9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아직 완전히 분명한 대답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재판소의 전신이었던) 위원회는 영리법인인 유한책임 **회사**가 비록 철학 관련 단체에 의해 운영되지만 제9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그 권리에 기초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Company X.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Kustannus OY Vapaa Ajattelija AB and Others v. Finland*, 위원회 결정).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완전히 상업적인 성격의 광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는 이와 같이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된 진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성격상 단순히 "정보" 또는 "설명"을 제공하는 광고와 판매 목적으로 종교적 물건을 제공하는 상업광고를 구분했다. 광고가 후자의 범주에 속할 경우, 비록 종교적 물건이 특정 수요에 핵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내용의 진술은 신념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영리의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욕구의 표현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한 사건에서, 소비자 보호기관의 재제를 받은 "이-미터(E-meter)" 또는 "허버드 전기계(Hubbard Electrometer)"의 광고에 제9조의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X. and Church of Scientology v. Sweden*, 위원회 결정).
20.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위원회와 재판소는 종교단체의 영리**활동**에 제9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미결정 상태로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문제는 *Cumhuriyetçi Eğitim ve Kültür Merkezi Vakfı v. Turkey* 사건에서 제기됨; 무료가 아닌 요가 강습에 관해서는 *Association Sivananda de Yoga Vedanta v. France*, 위원회 결정, 참조).
21. 이와 관련하여, **사이언톨로지**를 "종교"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 회원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제기한 청구가 다른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룬 적이 없다(*X. and Church of Scientology v. Sweden*, 위원회 결정, *Church of Scientology and Others v. Sweden*, 위원회 결정, *Scientology Kirche Deutschland e.V. v. Germany*, 위원회 결정). 그렇지만,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세 사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에서, 위원회는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종교단체"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2.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 문제를 직접 다룬 재판소는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자제하면서 피청구국 기관의 판단을 존중했다. 러시아 정부가 사이언톨로지 교회(*Church of Scientology*)의 법인등록을 거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일단의 신념과 그것의 행사가 제9조에서 의미하는 "종교"에 해당하는지를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처음에는 비종교적 단체로 등록되었던 사이언톨로지 지부가 그 활동이 "성질상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결국 해체되었다. 법원을 포함한 러시아 국가기관들은 사이언톨로지 단체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라는 견해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9조가 그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Kimlya and Others v. Russia*, §§ 79-81; 또한, *Church of Scientology of Moscow v. Russia*, § 64 참조). 다른 사건에서는, 그 단체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 종교 연구에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같은 유형의 제한을 가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 제한이 종교단체에만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제9조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Church of Scientology of St Petersburg and Others v. Russia*, § 32).
23. 무신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무신론자들이 제9조에 따라 제기한 청구를 심사했다 (*Angeleni v. Sweden*, 위원회 결정). 조금 다른 맥락에서, 위원회는 이 사상의 흐름이 인간에 대한 특정한 형이상학적 개념을 표현했을 뿐이며, 인간의 세계관을 전제로 그 행동을 정당화하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종교와 구별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국가는 이 단체에 대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Union des Athées v. France*, 위원회 보고서, § 79). 그 밖에도, 재판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무관심자에게도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Kokkinakis v. Greece*, § 31).
24. 재판소는 프리메이슨주의(Freemasonry)에 대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 문제는 명확히 다뤄지지 않은 채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다(*N.F. v. Italy*, §§ 35-40).

## C. 신념을 가질 권리와 표명할 권리

25. 협약 제9조제1항은 신념을 **가질** 권리와 그 신념을 **표명할** 권리의 두 가지 권리를 포함한다.

(종교적이든 아니든) 신념을 깊이 **간직할** 권리와 종교나 신념을 변경할 권리: 이 권리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다**. 국가는 개인이 무엇을 믿도록 지시하거나 신념을 변경하도록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Ivanova v. Bulgaria*, § 79; *Mockutė v. Lithuania*, § 119)

- 자신의 신념을 혼자서, 개인적으로 표명할 권리 및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행사할 권리: 이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표명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초안자들은 제9조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측면에 단서를 달았다. 이 제2항은 개인이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에 대한 제약이 법에 규정되어야 하며 제2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80). 다시 말해, 제9조제2항에 명시된 제한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와 관련이 있을 뿐 종교나 신념을 **가질** 권리와는 관련이 없다(*Ivanova v. Bulgaria*, § 79).

26. 제9조제1항은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두 가지 선택을 표현한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라는 문구는 상호 배타적이라거나 국가기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문구는 종교를 두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X. v. the United Kingdom*, 1981년 3월 12일 위원회 결정).

27. 문제된 신념이 필요한 수준의 설득력과 중요성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영감을 받거나 동기부여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행동이 그 신념의 "표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컨대 해당 신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앙의 계율과는 거리가 먼 행위나 부작위는 제9조제1항의 보호범위를 벗어난다. 제9조에서 의미하는 "표명"으로 간주되려면 그 행위가 종교나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한 예로, 일반적으로 종교나 신념 행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형태로 인정되는 예배나 기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종교나 신념의 표명은 이러한 행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제된 행위와 근본적인 신념 사이에 충분히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어떤 행동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경우 해당 종교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82; *S.A.S. v. France* [GC], § 55).

28.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확고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지 못하 채 개인이 주장하고 있는 **신념의 진정성**에 대해 국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피청구국 정부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교 종교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자신이 이슬람교 신자이며 종교적 이유로 베일을 착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나아가, 재판소는 이러한 방식으로 베일을 착용하는 것이 이슬람 여성 중에서도 소수의 여성만이 따른다는 사실이 베일 착용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S.A.S. v. France* [GC], § 56).
- 라트비아 정부는 재소자인 청구인이 원격 성경공부 강좌를 들었다는 것과 국제 크리슈나 의식협회 지부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비슈누파(*Vaishnavism*, 힌두교의 비슈누 신을 믿는 종파) 교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Kovalkovs v. Latvia* (dec.), § 57). 루마니아 정부는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더 좋은 음식을 받기 위해 불교 신자라고 자처했다며 매우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다(*Vartic v. Romania* (no. 2), § 46).

29. 그러나 재판소와 위원회는 예외적인 경우 **개인의 종교에 대한 진정성(sincerity)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 종교 관련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하거나 신념 또는 종교행위의 특정 측면에 대한 해석에서 그 타당성이나 우열을 따지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다. 개인적인 신념의 본질과 중요성은 깊이 탐구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한 사람이 신성하다고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거나 혐오감을 자아내는 것일 수 있으므로 특정 신념이나 종교행위가 종교적 의무의 중요한 요소라는 신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적 또는 논리적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구인의 종교적 주장이 진실한 것이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대해 재판소가 사실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Skugar and Others v. Russia* (dec.)).

30. 예를 들어, 재판소와 위원회는 아래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한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교도소 등록부에 "위카(Wicca)" 종교의 신자로 등록하기를 원했던 재소자의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등록부에 종교를 등록하면 관련 당사자가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정한 특권과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신고한 종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해당 종교의 객관적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X. v. the United Kingdom*, 1977년 10월 4일 위원회 결정).
- 이슬람교 종교 휴일을 지켜야 한다며 같은 해 두 차례 결근한 국영전력회사 직원인 청구인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한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이슬람교를 믿는 시민에게 종교 휴일에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를 알지 못했고 과거 기독교 휴일을 항상 기념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이슬람교 신앙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이 단지 추가 휴가를 받기 위해 이슬람교도라고 주장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소는 법령에서 특정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 특권이나 특별 면제를 설정하는 경우(특히 고용분야), 이러한 특별대우를 받기 위해 해당 종교 공동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도록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Kost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39).

31. 재판소는 객관적으로 개별 종교의 "핵심" 계율에는 속하지 않지만 해당 종교에서 크게 영감을 받았으며 문화적 뿌리가 깊은 전통적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제9조에 따른 보호를 적용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슬람교도 학부모 두 명이 미성년자 딸에 대해 국립학교에서 남녀가 같이 받는 의무적인 수영 수업을 면제받고자 제기한 청구를 조금의 의문도 없이 받아들였다. 코란에는 여성이 사춘기가 된 이후부터만 신체를 가려야 한다는 계율이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슬람교 신앙에 따라 딸들에게 사춘기 때부터 지켜야 할 계율을 지키도록 했다고 진술했다(*Osmanoğlu and Kocabaş v. Switzerland*, § 42).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이슬람교도 남성이 엄격한 종교적 의무는 아니지만 매우 오래된 전통이라 많은 사람이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는 스컬캡(skullcap) 착용을 원하는 것이 제9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Hamid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 30).
32. 재판소와 위원회는 아래의 사건들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이것은 그 청구에 적합한 협약의 다른 조항들에 따라 심리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 교육과정에서와 국가기관과 연락에서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 언어의 자유(*Habitants d'Alsemberg and de Beersel v. Belgium*, 위원회 결정). *Inhabitants of Leeuw-St. Pierre v. Belgium*, 위원회 결정)
  - 의무 투표제인 국가의 총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거부(*X. v. Austria*, 1965년 4월 22일 위원회 결정; *X. v. Austria*, 1972년 3월 22일 위원회 결정)
  - 세례 및 견진성사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X. v. Iceland*, 위원회 결정)
  - 자신의 동거인과 특정한 종교의식을 거친 것만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민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혼인을 거부한 남성(*X. v. Germany*, 1974년 12월 18일 위원회 결정)
  - 불교 신자인 재소자가 불교 잡지에 기고문을 게재하고자 했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종교행위에서 해당 기고문의 게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X. v. the United Kingdom*, 1974년 12월 20일 위원회 결정)
  - 평화사상을 바탕으로 하지만, 무단결근과 군복무수칙을 위반하도록 군인을 선동하는 소책자의 배포(*Arrowsmith v. the United Kingdom*, §§ 74-75; *Le Cour Grandmaison and Fritz v. France*, 위원회 결정)



- 기독교 상징이 있는 공동묘지에 묻히지 않기 위해 유골을 자신의 소유지에 뿌리기를 바라는 청구인의 요청(*X. v. Germany*, 1981년 3월 10일 위원회 결정)
- 재소자가 "정치범"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며 교도소 노역, 죄수복 착용, 감방 청소를 거부한 행위(*McFeel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X. v. the United Kingdom*, 1982년 3월 6일 위원회 결정)
- 민사상의 이혼절차가 완료된 후, 전 부인이 종교적 의식에 따라 재혼하는 데 필요한 이혼증서의 전달을 거부한 유대인(*D. v. France*, 위원회 결정)
- 의사의 직업노령보험 가입 거부(*V.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 관념론적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려는 단체(*Vereniging Rechtswinkels Utrecht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 낙태 규정을 완화하는 법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가교회에서 행정적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여 파면된 성직자(*Knudsen v. Norway*, 위원회 결정)
-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결혼이 유효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법정 결혼연령 미만인 소녀와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남성(*Kha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 이혼을 원하는 청구인(*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 63)
-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이 원자력발전소 재원에 배분된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전액에 대해 납부를 거부한 전기 소비자(*K. and v.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고자 하는 아버지(*Abrahamsson v. Sweden*, 위원회 결정)
- 두 건축가가 법적 요건을 위반하여 건축협회 가입을 거부한 것(*Revert and Legallais v. France*, 위원회 결정)
- 기차역에 정치적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자 하는 것(*K.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 민간 정당에서 개최한 역사 관련 정치 토론의 내용(*F.P. v. Germany*, 위원회 결정)
- 주치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지급한 건강보험료의 환부를 받으려는 청구인(*B.C.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Marty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 기독교 신앙이 동기가 되었지만 낙태시술병원 인근에서 낙태반대 소책자를 배포하려는 청구인(*Van den Dungen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 전 부인과 자녀에게 지급해야 했던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불교 사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고 제소한 남성(*Loga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 미성년자 딸이 종교를 바꿨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아버지(*Karakuzey v. Germany*, 위원회 결정)
- "태도와 행동을 통해 불법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의견을 받아들였음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이 내려진 터키 공군 대령인 군법무관 사건. 이 사건에서 문제의 처분은 청구인의 종교적 의견과 신념이나 종교적 의무의 이행 방식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군율과 세속주의 원칙을 위반한 청구인의 행동을 근거로 내려짐(*Kalaç v. Turkey*)
- 종교적 동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특정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부모(*Salonen v. Finland*, 위원회 결정)
- 변호사가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을 변호하도록 공식 배정된 업무를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Mignot v. France*, 위원회 결정)
-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온전성을 보호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한 운전자(*Viel v. France* (dec.))
- 이슬람 구국전선(Islamic Salvation Front)에서 활동 중인 알제리 국민이 정치적 선전을 위해 사용한 통신 매체를 스위스 당국이 압류한 결정에 대해 제소한 사건(*Zaoui v. Switzerland* (dec.))
- 약국 공동소유자의 피임약 판매 거부(*Pichon and Sajous v. France* (dec.))
- 개인의 자율성 원칙에 대한 신념에서 조력자살을 실행하려는 것(*Pretty v. the United Kingdom*, § 82)
- 무프티(mufti, 이슬람교 율법고문) 임명에 반대하여 자신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가 제기한 소송절차를 그가 사망한 후 소송수계하려는 청구인들(*Sadik Amet and Others v. Greece* (dec.))
- 종교적이든 그 밖의 것이든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신념에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나,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대학 캠퍼스 출입을 거부당한 학생(*Tiğ v. Turkey* (dec.))
- 가족묘에 고인의 사진을 새긴 비석을 세우고자 하는 바람(*Jones v. the United Kingdom* (dec.))

- 테러 단체로 여겨지는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여러 판례 중, *Gündüz v. Turkey* (dec.); *Kenar v. Turkey* (dec.) 참조)
- 자신이 사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아 견책 처분을 받은 판사(*Cserjés v. Hungary* (dec.)) 및 공공의료보험 부서에 근무 중인 의사가 향후 해당 직원과 근무해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편견 가능성"의 우려를 이유로 수습직원에게 대한 건강검진을 거부해 해고된 사건(*Blumberg v. Germany* (dec.))
- 기도 중에 큰 소리로 말하여 종교의식을 방해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녀 (*Bulgaru v. Romania* (dec.))
- 실업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한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재림절 화관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사건(*Jenik v. Austria* (dec.)), 이 청구는 협약 제35조제3항제a)호의 의미에 따른 제소권 남용으로 각하됨)
-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어머니는 딸(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랐을 뿐인데도 이혼소송의 결과 부인과 별거하는 아버지가 미성년 딸이 가톨릭교도로 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Rupprecht v. Spain* (dec.))
-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에 7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유대인 묘지의 옛 경계를 복원하고 묘지에서의 건축공사를 금지할 것을 우크라이나 법원에 요청했던 두 유대인 단체(*Representation of the Union of Councils for Jew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Union of Jewish Religious organisations of Ukraine v. Ukraine* (dec.) 참조)
- 나체로 활보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활보하고자 하는 청구인(*Gough v. the United Kingdom*, §§ 185-188)
- 해당 상표가 종교적 상징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순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한 상표 등록신청(*Dor v. Romania* (dec.), § 39)
- 국가가 한 종교단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종교단체에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Das Universelle Leben Aller Kulturen Weltweit e.V. v. Germany* (dec.), § 34)
- 1930년대에 공산정권에 의해 몰수된 예배당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청원(*Rymsko-Katolytska Gromada Svyatogo Klimentiya v Misti Sevastopoli v. Ukraine* (dec.), §§ 59-63)
-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되긴 했으나, 전쟁이나 무기 휴대에 대한 원칙적 반대가 아닌 현행 헌법질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청구인(*Enver Aydemir v. Turkey*, §§ 79-84)

- 이슬람 과격단체 소속임을 근거로 거주국에 대한 충성이 의심된다며 귀화 신청을 거부당한 외국인(*Boudelal v. France* (dec.))

33. 재판소는 백신 접종에 비판적인 입장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자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 제9조의 보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과거 위원회에서 간략히 다룬 바 있다. 과거 위원회는 제9조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공개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항상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적 백신 접종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신념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제9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Boffa and Others v. San Marino*, 위원회 결정). 그러나 재판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여러 결과(특히, 유치원, 유아원 등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고 부모에 대해 벌금이 부과됨)가 발생했던 *Vavříč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충분한 근거를 통해 청구이유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부모의 의견은 충분한 설득력, 진지성, 밀착성, 중요성을 가진 신념이나 믿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청구는 협약 제9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ibid.*, §§ 334-337). 다만, 재판부는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에 반대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채 협약 제9조에 근거하여 청구를 제기했다면, 문제될 수 있는 권리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지적했다(*ibid.*, § 330).

## D. 국가의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 1. 권리행사의 제한과 정당한 목적

34. 협약 제9조제2항의 문구에서는 개인의 종교나 신념의 표명에 대한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을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열거된 사항은 모든 정당한 목적을 망라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정의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협약과 양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조항에 열거된 목적 중 하나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Svyato-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 132 및 137; *S.A.S. v. France* [GC], § 113).
35. 협약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4의정서 제2조제3항과 달리 "국가안보"는 제9조제2항에 열거된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9조제2항에서 국가안보가 제외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대로, 협약의 초안자들이 이 특정 근거를 제한의 정당한 근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민주사회의 토대 중 하나"인 종교적 다원성의 근본적인 중요성과 개인이 무엇을 믿도록 지시하거나 신념을 변경하도록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Nolan and K. v. Russia*, § 73). 이는 회원국이 국가안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개인 또는 단체가 종교를 표명할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유일한 근거로 내세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협약 제10조제2항에는 정당한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제2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 유지"의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이다(*Hamid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 35, 및 *Lachiri v. Belgium*, § 38).

36. 또한 협약 제15조는 각국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요구되는 엄격한 한도 내에서"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국제법상의 다른 의무들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 나아가 제15조제3항에 명시된 절차적 형식을 준수할 것을 추가적인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37. 협약 제9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행사의 제한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 해당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제재 또는 해고나 계약 종료 (*Kokkinakis v. Greece*; *Ivanova v. Bulgaria*; *Masaev v. Moldova*; *Ebrahimian v. France*)
  - 해당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징계 처분(*Korostelev v. Russia*, § 50)
  - 정부 대표자가 신념을 포기하도록 할 목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에 가하는 심리적 압박(*Mockutė v. Lithuania*, §§ 123-125)
  - 경찰에 의한 집회의 중단 등 제9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대한 물리적 방해 (*Boychev and Others v. Bulgaria*)
  - 종교단체 해산(*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99-103; *Biblical Centre of the Chuvash Republic v. Russia*, § 52; 종교단체의 해산 및 종교행사 금지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원회 기존 판례인 *X. v. Austria* (1981년 10월 일 위원회 결정) 사건과 대조)
  - 제9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대한 허가, 인정 또는 승인의 거부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Vergos v. Greece*)
  - 국가가 한 종교집단에 대해 종교 관련 지위를 부인하여 여러 종교행사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95)
  - 국가가 교단 내의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표면상 중립적인 법령의 제정(*Holy Synod of the Bulgarian Orthodox Church (Metropolitan Inokentiy) and Others v. Bulgaria*), § 157)
  -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식 문서에서 종교집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Leela Förderkreis e.V. and Others v. Germany*, § 84)
38. 제9조에 따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경찰관과 같은 국가의 대리인이 그 권한을 벗어나 행위할 경우(*Ultra Vires*), 그 행위는 피청구국의 행위로 간주하며 협약 제1조의 목적과 관련해 피청구국에 책임이 발생한다(*Tsartsidze and Others v. Georgia*, § 80).

39. 반면, 해당 법령의 운영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서 보장하는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영역에서 일반적이고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그 법령은 원칙적으로 제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C.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Skugar and Others v. Russia* (dec.)).
40. 문제된 제한이 종교적 믿음이나 신념을 이유로 일정한 집단에 대해 인정한 특별면제를 거부하는 형태로 가해진 경우, 신념의 진실성을 일정 수준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억압적이거나 제9조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Kost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39; *Dyagilev. v Russia*, § 62; *Neagu v. Romania*\*, § 34).
41. 자신이 하려는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 대상임을 이유로 제소하면서 제9조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청구인은 그 법령에 자신의 행위를 맞추지 않으면 기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범주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협약 제34조가 의미하는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종교적인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고자 하는 이슬람교도 여성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벌금의 부과나 강제적인 시민교육수강의 방식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청구인은 베일착용금지를 준수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 교리에 맞는 베일 착용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그 금지를 거부하고 기소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S.A.S. v. France* [GC], § 57).
42.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운동이나 결사가 전체 주민들이나 공공질서에 해로운 활동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다(*Manoussakis and Others v. Greece*, § 40;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05). 일정한 경우 국가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예방조치를 통해 제한을 가할 권한은 회원국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협약 제1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와 완전히 부합한다(*Leela Förderkreis e.V. and Others v. Germany*, § 99).
43. 여러 종교가 하나의 같은 인구집단 안에 공존하는 민주사회의 경우,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모두의 신념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유에 제약을 가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영역에서 다양한 종교, 종파 및 신념과의 관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다원성과 민주주의의 적절한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15-116).
44. 재판소의 임무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비례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Leyla Şahin v. Turkey* [GC], § 110). 다시 말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기본권을 더 적게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국가기관은 이러한 수단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Biblical Centre of the Chuvash Republic v. Russia*, § 58). 협약 제9조제2항에 내포된 사항은 모든 제한이

"긴박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요한"이라는 표현의 개념은 "유용한" 또는 "바람직한"이라는 표현과 같은 유연성을 지니지 않는다(*Svyato-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 116). 재판소가 감독권을 행사할 때, 재판소의 임무는 관할 국가기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량권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지 협약에 비추어 심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소의 감독권이 피청구국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선의로 행사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국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재판소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된 제한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와 국가기관이 해당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소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이 협약에 명시된 원칙과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Association de solidarité avec les témoins de Jéhovah and Others v. Turkey*, § 98). 특히 법원은 단지 전문가 보고서를 추인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원은 모든 법적 사안을 단독으로 해결해야 한다(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0조의 논의와 관련하여, *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 106-107 참조).

45. 재판소는 어떤 제한이 비례적인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제한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한 정도를 평가에 대해 국가기관에 일정한 판단재량을 부여한다. 우리는 협약 체제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보충적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재판소보다 지역적 필요와 여건을 평가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민주사회 안에서 여러 합리적인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정책 사안에서 국내 정책입안자의 역할이 특히 중시되어야 하며,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협약 제9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국가는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권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인지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결정하는 문제에서 폭넓은 판단재량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판단재량을 누리는지 판단할 때,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과 제9조가 다루는 일반적인 사안, 즉 민주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인 진정한 종교적 다원성을 보존할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한이 "우선적인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제한의 필요성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 분명, 이러한 판단재량은 법령과 이를 적용한 결정 모두를 아우르는 유럽 차원의 감독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독립적인 국내 법원에서 내린 결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여러 협약 당사국의 실제 관행에서 도출된 합의와 공통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Bayatyan v. Armenia* [GC], §§ 121-122; *S.A.S. v. France* [GC], § 129).
46.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제한의 비례성을 평가하고 피청구국이 어느 정도의 판단재량을 누리는지 판단할 때, 협약과 부합하는 한 연방주의의 특수성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Osmanoğlu and Kocabaş v. Switzerland*, § 99).
47.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국내 조치가 협약 제9조제2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때, 교리, 의식, 조직 등을 비롯한 해당 종교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이 접근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에 관해서는 *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 13-19;

*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 8-16 참조). 이는 제9조를 뒷받침하는 일반 원칙, 즉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종교 공동체의 내부 자율성, 종교의 다원성 존중의 논리적 귀결이다. 협약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체계가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다양한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때에도 동일한 의무를 질 수 있다(*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 81).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협약 제14조(차별 금지)에 따른 판례를 언급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국가가 상황이 매우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판례에 따라 제14조 위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Thlimmenos v. Greece* [GC], § 44).

48. 국내법에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여러 권리들에 대한 행사에 대해 사전허가를 요하는 경우, 그 허가절차에서 특히 서로 다른 종파들 사이에서 서열이나 신념의 우위에 관하여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제9조제2항의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17; *Vergos v. Greece*, § 34; 또한, 이를 준용한 사례에 관해서는, *Pentidis and Others v. Greece* 참조).
49. 마지막으로,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판소는 사건의 전체 사정을 바탕으로 문제된 제한을 심사하여야 한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19). 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별개의 분리된 요소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사건의 모든 사실적 요소를 평가하고 그 사건의 결과를 심사하여야 한다(*Ivanova v. Bulgaria*, 83조).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종교의 자유 분야에서 내린 결정이 사실관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이를 긍정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Svyato-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 138).

## 2.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

50. 회원국은 협약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제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자제해야 한다는 다소 소극적인 의무가 이러한 권리에 내재한 **적극적 의무**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된 행위가 사인에 의한 행위이고 따라서 피청구국의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때로는 본질적으로 **사인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Siebenhaar v. Germany*, § 38). 협약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를 정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두 의무에는 비슷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96). 두 의무와 관련된 상황 모두 개인의 이익과 전체 공동체의 이익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두 경우 모두 일정한 **판단재량**을 누린다. 또한, 제9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의무와 제2항에 언급된 목적은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닌다(*Jakóbski v. Poland*, § 47;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84). 때로는 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국가의 "소극적 의무" 관점에서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의무"의 관점에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자제할 수 있다(*Religious Community of Jehovah's Witnesses of Kryvyi Rih's*



*Ternivsky District v. Ukraine*, § 58).

51. 제9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에는 사법기구와 집행기구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집행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이용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Osmanoğlu and Kocabaş v. Switzerland*, § 86).
52. 제9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Hernandez Sanchez v. Spain*, 위원회 결정).

## E. 제9조와 다른 조항들에 의한 보호의 경합

53. 성질상, 협약 제9조의 실제적 내용은 때때로 협약의 다른 조항들의 내용과 중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동일한 청구가 둘 이상의 조항을 근거로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조항을 중심으로 청구를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의 조항에 따라 심사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재판소는 다른 조항들 또한 염두에 두고 심사를 수행하며, 그 다른 조항들에 비추어 그 조항을 해석한다. 동일한 사실 및 청구사항에 대해 제9조와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a) 협약 **제6조제1항**(재판청구권과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스 파기원이 가톨릭 크레타교구 성당의 법인격 인정을 거부하고 따라서 해당 성당의 재산 보호를 위한 원고적격을 거부한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9조가 아닌 협약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종교단체의 청구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Canea Catholic Church v. Greece*, §§ 33 및 50). 마찬가지로, 교구와 교구 구성원들이 독특한 의례에 따라 지역 묘지에 시신을 안장할 권리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6조제1항만을 기준으로 해당 청구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Greek Catholic Parish of Pesceana v. Romania* (dec.), § 43)
  - (b) 협약 **제8조**(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된 청구를 다음과 같이 심사했다.
    - 제8조만으로 심사하거나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8조에 따른 심사: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이유로 미성년자 자녀가 다른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결정한 국내 법원의 판결(*Hoffmann v. Austria*; *Palau-Martinez v. France*; *Ismailova v. Russia*). 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문제에 대해 정한 법원의 합의안은 청구인의 종교를 표명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Deschomets v. France* (dec.)).

-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8조에 따른 심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적인 문제인 당사자의 종교적 신념과 그 부인의 종교적 행위를 이유로 공무원을 전출한 경우(*Sodan v. Turkey*, § 30)

(c) **제10조(표현의 자유)**. 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된 청구를 다음과 같이 심사했다.

- 제10조만으로 심사: 예를 들어, 종교적 성격의 유료광고를 금지한 경우(*Murphy v. Ireland*), 또는 기독교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방송허가발급을 거부한 경우(*Glas Nadezhda EOOD and Anatoliy Elenkov v. Bulgaria*). 이처럼, 청구인이 방송정보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의견 표명이 제한되었다고 제소하는 경우, 제10조는 제9조와의 관계에서 특별조항에 해당하므로 제9조에 따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Balsytė-Lideikienė v. Lithuania* (dec.)).
-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0조에 따른 심사: 예를 들어, 종교서적의 출판 및 배포 금지(*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 78).

(d) **제11조(집회와 결사의 자유)**: 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된 청구를 다음과 같이 심사했다.

제9조만으로 심사: 예를 들어, 제11조에 의한 병역면제요청의 거부에 대해, 종교단체나 평화주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단체 또는 다른 유형의 단체에 속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Papavasiliakis v. Greece*, §§ 34-35)

- 제1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에 따른 심사: 예를 들어, 같은 종교 공동체의 두 경쟁 집단 간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Hassan and Tchaouch v. Bulgaria* [GC], § 65), 종교단체 해산(*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102-103), 종교단체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지속적 거부(*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 60) 또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예배당 건설을 금지하는 조치(*The Religious Denomination of Jehovah's Witnesses in Bulgaria v. Bulgaria*, § 80)
- 제11조 및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에 따른 심사: 예를 들어, 종교단체의 교단변경 승인을 위한, 종교단체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등록의 거부(*Svyato- 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 152)
-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1조(결사의 자유)에 따른 심사: 예를 들어, 종교단체 등록 거부(*Orthodox Ohrid Archdiocese (Greek-Orthodox Ohrid Archdiocese of the Peć Patriarchy)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61), 종교단체 등록 갱신 거부(*Moscow Branch of the Salvation Army v. Russia*, §§ 74-75; *Bektashi Community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46). 반대로, 재판소가 제1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에 따라 종교단체 등록 거부 사건을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관해서는 *Genov v. Bulgaria*, § 38 및 *Metodiev and Others v. Bulgaria*, § 26 판결을 참조한다.

-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1조(집회의 자유)에 따른 심사: 예를 들어, 종교단체 등록 갱신 거부(*Moscow Branch of the Salvation Army v. Russia*, §§ 74-75)
  -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1조(집회의 자유)에 따른 심사: 예를 들어, 신루이드교를 믿는 단체가 하지를 기념하기 위해 스톤헨지 유적지에 접근하려는 것을 거부한 결정(*Pendrago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반대의 경우, *Chappell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참조)
- (e) **제1의정서 제1조(재산권 보호)**: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라서만 사건을 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사냥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의 사냥 행위를 용인할 의무에 관한 사건(*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Herrmann v. Germany* [GC])
- (f) **제1의정서 제2조(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종교적, 철학적 신념을 존중받을 부모의 권리)**: 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된 청구를 다음과 같이 심사했다.
- 제1의정서 제2조만으로 심사: 예를 들어, 국립학교에서 종교적 문화와 도덕 과목의 의무수업 시행 및 제한과 관련된 사건(*Mansur Yalçın and Others v. Turkey*), 또는 교육 당국이 자녀에 대해 기독교 의무수업의 전면 면제를 거부한 사건(*Folgerø and Others v. Norway* [GC])
  - 제1의정서 제2조와 협약 제9조에 따른 심사: 예를 들어, 자세한 논증을 바탕으로 제1의정서 제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이 논증을 간단히 언급한 후 제9조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Kjeldsen, Busk Madsen and Pedersen v. Denmark*)
  -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른 심사: 예를 들어, 국립학교 교실에서의 의무적인 십자가 비치와 관련된 사건(*Lautsi and Others v. Italy* [GC])
  - 부모에 대해서는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라, 자녀에 대해서는 협약 제9조에 따른 심사: 교장이 학교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학생에게 벌을 준 경우(*Valsamis v. Greece*), 또는 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Perovy v. Russie\**)
  - 제9조만으로 심사: 예를 들어, 남녀가 같이 받는 의무적 수영수업을 청구인의 자녀에게 면제하는 것을 거부한 조치와 관련된 사건(*Osmanoğlu and Kocabaş v. Switzerland*, §§ 35 및 90) – 특히, 피청구국인 스위스가 제1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9조에 따라서만 심사함

54. 교육과 가르침에 관한 영역에서, 제1의정서 제2조는 기본적으로 협약 제9조에 대한 특별조항에 해당한다. 이는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쟁점이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다루는 사건에 적용되는데, 제1의정서 제2조 두 번째 문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과 가르침에 관련된 모든 기능 행사에 있어, 회원국은 부모의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신념에 따라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Lautsi and Others v. Italy* [GC], § 59; *Osmanoğlu and Kocabaş v. Switzerland*). 아동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보호 조치의 혜택을 받으며, 개인 자격으로 제9조를 원용할 수 있다(*Perovy v. Russia*, § 49). 이와 관련하여, 제1의정서 제2조 두 번째 문장 및 협약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의정서 제2조의 첫 번째 문장은 믿을 권리 또는 믿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형태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Ibid.*, § 50).

## II. 제9조에 의해 보호받는 행위

### A. 소극적 측면

#### 1. 종교생활을 영위하지 않거나 신념을 밝히지 않을 권리

55. 종교의 자유는 또한 소극적 권리, 즉 종교에 속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Alexandridis v. Greece*, § 32). 이는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가 특정 종교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구인들에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의 요구가 협약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Buscarini and Others v. San Marino* [GC], §§ 34 및 39).
56. 반면, 어떤 종교단체나 개인도 다른 종교적, 비종교적 믿음과 신념을 개인이 또는 집단이 표명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Perovy v. Russia*, § 73).
57.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자유의 소극적 측면은 개인이 종교적 소속이나 신념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신념을 지니고 있거나 지니고 있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는 행동을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묻거나 그러한 신념을 표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자유롭게 제한할 수 없다(*Alexandridis v. Greece*, § 38; *Dimitras and Others v. Greece*, § 78; *Stavropoulos and Others v. Greece*, § 44).
58. 또한, 그 제한은 간접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발급한 공문서(신분증, 학생부 등)에 종교를 기재하는 칸이 있을 경우 여기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특정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신분증 관련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무적이든 선택적이든 신분증에 종교를 표시하도록 한 조치가 협약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Sinan Işık v. Turkey*, §§ 51-52 및 60). 또한 제9조는 자진해서라도 자신의 신분증에 종교를 기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Sofianopoulos and Others v. Greece* (dec.)). 재판소는 또한 인구통계학적 목적을 위해 시민등록부나 신분증에 종교를 언급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종교적인 신념을 선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Sinan Işık v. Turkey*, § 44). 반면, 직원이 특권(예: 모스크에 참석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에 결근할 수 있는 권리)을 요청하려면 자신이 믿고자 하는 종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사전에 고용주에게 알리도록 한 요건은 "종교적 신념을 밝힐 의무"와 동일시할 수 없다(*X. v. the United Kingdom*, 1981년 3월 12일 위원회 결정).
59.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협약 제9조(단독으로 또는 차별을 금지하는 제14조에 비추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 법률업무 수행의 전제조건으로 법정에서의 선서절차를 수립하면서 그가 정교회 신자이고 종교적 선서를 희망할 것이라는 추정하에 선서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종교적 선서 대신 엄숙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자신이 정교회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했던 경우(*Alexandridis v. Greece*, §§ 36-41)
- 증인, 고소인 또는 피의자로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개인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Alexandridis*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다룬 경우(*Dimitras and Others v. Greece*; *Dimitras and Others v. Greece (no. 2)*; *Dimitras and Others v. Greece (no. 3)*)
- 청구인은 수강할 수 있는 대안적인 윤리과목이 없어 종교과목 이수 요건을 면제받고 모든 학교 성적표와 초등학교 졸업장의 "종교/윤리" 칸이 대시("-")로 표시되었다. "종교/윤리" 칸의 표시가 해당 학생이 종교나 윤리 과목을 수강했는지 여부를 직접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칸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것은 해당 학생이 어떤 유형의 종교/윤리 수업도 수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나타냈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었다(*Grzelak v. Poland*; 재판소와 위원회가 비슷한 제소에 대해 심리부적격 결정을 내린 두 사건: *C.J., J.J. and E.J. v. Poland*, 위원회 결정 및 *Saniewski v. Poland* (dec.)와 비교).
- 출생증명서에 (이름 이외에 세례명을) 추가로 수기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이름 선택" 칸을 추가한 것은 청구인이 세례를 받지 않았고 대신 민법에 따라 이름을 선택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칸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의 일부 등기소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Stavropoulos and Others v. Greece*, § 44).

60. 이와 반대로,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협약 제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또는 근거없는 청구임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 청구인의 소득세 문서에 "- "(2개의 대시)로 표시할 경우 국가가 교회세를 부과한 교회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재판소는 그 문서가 고용주와 세무당국을 위한 것으로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제한의 범위가 한정적이라고 판결했다(*Wasmuth v. Germany*, §§ 58-59).
- 교정당국은 행정상 오류로 소속 종교가 잘못 기재된 재소자의 파일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특히 해당 파일이 공적인 참고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정당국만이 열람할 수 있는 파일이었으므로, 재소자가 주장한 행정상 오류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표명하는 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Mariş v. Romania* (dec.), § 28).

## 2. 양심적 거부: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

61. 제9조는 군대나 민간 영역에서의 양심적 거부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개인의 양심이나 깊이 간직한 진실한 종교적 또는 기타 신념과 병역의무 사이의 심각하고 극복할 수 없는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9조의 보호가 **병역거부**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병역거부가 제9조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보호의 수준에 대한 문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Bayatyan v. Armenia* [GC], §§ 92-111; *Enver Aydemir v. Turkey*, § 75). 의무병역제도는 국민에게 무거운 부담을 부과한다. 병역의무가 공정한 방식으로 분담되고 의무의 면제가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Bayatyan v. Armenia* [GC], § 125). 따라서,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할 조건과 군사 영역에서 양심적 거부자 지위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데 있어 회원국은 일정한 판단재량을 가지므로, 양심적 거부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가가 사전적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하다(*Enver Aydemir v. Turkey*, § 81). 일반적으로, 개인이 종교적 믿음이나 신념을 이유로 특별한 면제를 요구할 경우, 일정 수준의 진실한 신념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억압적이거나 양심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Dyagilev v. Russia*, § 62).

6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판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무력 사용을 강제하는 것과 충돌하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파생된다는 취지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협약 제9조를 적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또는 기타 신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에 참여하거나 무기를 드는 것에 대한 확고하고 영구적이며 진실한 반대로 이루어진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한했다(*Enver Aydemir v. Turkey*, § 81).
63. 개인의 양심과 병역의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민간 대체복무제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판단재량이 제한되며, 제한을 정당화하는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는 특히 그 제한이 "긴박한 사회적 필요"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Bayatyan v. Armenia* [GC], § 123). 특히 성직을 수행하는 성직자와 종교학교 학생에 국한된 대체복무제는 협약 제9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Mushfig Mammadov and Others v. Azerbaijan*, §§ 96-97). 마찬가지로, 단순히 "국가의 영토 보전 필요성"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적절한 대체복무제를 수립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Mushfig Mammadov and Others v. Azerbaijan*, § 97).
64. 예를 들어, 재판소는 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비전투병이라 하더라도 병역에 반대해야 한다는 신념이 포함된 신앙을 가진 종교단체) 교리에 따른 신념을 이유로 의무복무를 거부한 사건에서 민간 대체복무제를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제9조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Bayatyan v. Armenia* [GC], § 110). 재판소는 이후 *Bayatyan* 사건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청구인들이 아르메니아(*Bukharatyan v. Armenia*; *Tsaturyan v. Armenia*), 터키(*Erçep v. Turkey*; *Feti Demirtaş v. Turkey*; *Buldu and Others v. Turkey*) 및 아제르바이잔(*Mushfig Mammadov and Others v. Azerbaijan*)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들에서 제9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소는 *Feti Demirtaş v. Turkey* 사건에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적응장애를 앓고 있다는 의료진단서를 근거로

결국 전역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피해자"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시작된 시기가 군복무 당시였다는 사실은 피청구국의 책임을 악화시켰다(§§ 73-77 및 113-114).

65. 앞서 언급한 모든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언급하지 않은 평화주의자와 관련된 두 사건에서도 제9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 두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청구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의 주장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실효적이고 이용가능한 절차가 터키의 법체계에 결여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9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Savda v. Turkey*; *Tarhan v. Turkey*). 그 이전에 루마니아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 청구인은 루마니아 법에서는 종교적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과 같이 단순히 평화주의자임을 주장한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않아 차별조치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청구인은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되지 않았고 그 사이 루마니아에서는 평시의 의무병역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재판소는 청구인이 더 이상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T.N.B. v. Romania* (dec.)). 재판소는 청구인이 평화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의무병역 대신 민간 대체복무를 요청한 다른 사건에서도 그 요청이 협약 제9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암묵적으로 추정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Dyagilev v. Russia*).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실제 종교를 믿거나 평화주의 단체에 소속될 필요는 없다(*Papavasilikis v. Greece*).
66. 재판소는 세속적인 터키공화국을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코란과 샤리아 율법에 따른 제도였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터키 국민의 사건에서 제9조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청구인의 병역거부는 원칙적으로 병역을 반대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평화적이고 반군사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그 청구는 제9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예배, 선교, 행사 또는 의식에 의하여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Enver Aydemir v. Turkey*, §§ 79-84).
67. 국가가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협약 제9조에 따라 보장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는 해당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실효적이고 이용가능한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포함되며, 특히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집행가능한 사법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특정한 조치를 시행하는 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관련 당사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 자격을 확정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이용가능한 절차를 제공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Papavasilikis v. Greece*, §§ 51-52) 이 절차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개인을 인터뷰한 후 신념의 진실성을 평가하고 병역면제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Papavasilikis v. Greece*, § 54). 그러나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는 실효성 및 이용가능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사책임자는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ibid.*, § 60).



68. 이에 따라 재판소는 자신이 특정 종교의 신자나 평화주의 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한 그리스 남성의 사건에서 제9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병역면제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육군 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육군 특별위원회는 보통 5명으로 구성되어 군 소속 위원 2명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날은 민간위원(대학교수) 2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민간위원이 대신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었고, 군 소속 위원이 과반수였던 특별위원회는 청구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에 제기한 상소 또한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병역기피에 대해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소는 그리스가 절차적 실효성과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된 특별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터뷰하도록 한 그리스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의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Papavasiliakis v. Greece*, § 60).
69. 이와 반대로, 재판소는 평화주의자임을 주장하면서 의무병역 대신 민간복무를 희망한 러시아 남성의 요청을 기각한 사건에서 제9조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요청을 결정하는 군 위원회가 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은 국방부 소속이 아닌 다른 독립적인 기관 소속이었으며, 이들 위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급여나 보상을 받았거나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을 시사하는 주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수 요건인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그 밖에도, 위원회 차원의 절차적 흠결은 법원의 광범위한 심사 권한을 고려할 때 사법절차 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Dyagilev. v. Russia*, §§ 65-84).
70. 둘째로, 청구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 자격을 확정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이용가능한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구체적인 각 사례에서 부당하고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도 있다. 종교적 믿음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민간 대체복무 요청을 국가기관이 기각할 때마다 제한이 발생할 것이다(*Dyagilev. v. Russia*, §§ 60, 64 및 85). 재판소가 감독 기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요청을 심사한 후 실효적인 국내 절차에 따라 내린 결론을 존중할 것이다(*ibid.*, § 87).
71. 예를 들어, 재판소는 한 남성이 병역의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직후 "병역을 피할 합법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던 중 갑자기 자신이 평화주의 철학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소극적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병역의무와 자신의 신념 사이의 심각하고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러시아의 결론을 받아들였다(*Dyagilev. v. Russia*, §§ 88-94).
72. 셋째, 대체복무 수행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마련한 대체복무제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회원국은 대체복무제 구성 및 이행 방식에 대해 일정한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령상 또는 실무상 억제적이거나 징벌적인 성격이 아닌, 진정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체복무제가 진정한 민간 성격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소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권한, 통제, 적용 규칙 및 복장을 비롯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Adyan and Others v. Armenia*, §§ 67-68).

73. 이에 따라, 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과 민간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한 아르메니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의 사건에서 제9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민간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었고 보육원, 노인복지주택, 병원과 같은 민간기관에 배정되었지만, 당시 청구인들에 제공된 대체복무제는 두 가지 주요한 결함 때문에 진정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에 해당하지 않았다. 첫째, 대체복무제는 군 제도와 충분히 분리되지 않았다. 군 당국이 민간기관에 대한 감독, 정기적인 현장 점검, 무단결근 시 조치, 전근 명령 및 배정 결정, 군 규정 적용 등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복장 규정 측면에서도 대체복무 요원은 제복을 착용해야 했다. 둘째, 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때 적용되는 기간은 병역 기간보다 상당히 길었으며(24개월 대 42개월), 이는 필연적으로 억제적 또는 징벌적 효력이 있었다(*Adyan and Others v. Armenia*, §§ 69-72).
74. 오스트리아에서 "공인된(recognized) 종교단체"의 성직자에 대해서만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모든 종교의 성직자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등록된(registered)"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의 완전면제와 민간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3개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4조(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Löffelmann v. Austria*; *Gütl v. Austria*; *Lang v. Austria*). 반면 재판소는 병역의 완전면제와 민간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당한 복음주의 목사의 사건에서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4조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공인된 종교단체"의 지위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상황은 공인된 종교단체에서 예배를 이끄는 성직자와 비교될 수 없다고 보았다(*Koppi v. Austria*).
75.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공산정권 당시 징집되어 토요일에 수행된 선서식과 무기수여식 참석을 거부한 "불복종"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Seventh-Day Adventist*) 교인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된 후, 구체제에서 정치적 박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더 많은 연금 혜택과 기타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군 관련 불복종에 대한 유죄판결은 어떤 근거로도 "정치적 박해"로 간주하지 않는 루마니아 판례에 따라 청구인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청구인은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4조를 근거로 자신의 유죄판결이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하였다. 재판소는 제14조에서 도출되는 적극적 의무가 국가로 하여금 병역기피로 처벌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이익한 결과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적극적 의무는 다른 범주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재정적 지원을 청구인에게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유죄판결을 보상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했던 판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국가의 정상적인 판단재량과 부합하는 것이었다(*Baciu v. Romania* (dec.))

76. **학교**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그리스의 국립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그리스와 파시스트 정권하의 이탈리아 간 전쟁이 시작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학교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하루 또는 이들의 정학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제9조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공식 미사에 이어 같은 날 군사 퍼레이드 방식으로 개최될 학교 퍼레이드에서 민간, 교회, 군 관계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각자의 학교 교장에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전쟁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재판소는 부모에 대해서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에 따라 딸의 교육과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권리(제1의정서 제2조)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그들의 딸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청대로 종교교육과 정교회미사 참석을 면제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소는 학교 퍼레이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퍼레이드의 목적과 그 준비과정이 학생들의 평화적 신념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는 것이 평화적 목적과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Valsamis v. Greece; Efstratiou v. Greece*).
77. **민간인** 영역에서, 청구인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공익에 의해 크게 제한될 수 있고, 특히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05). 위원회는 또한 직업과 관련한 양심 조항(예컨대, 변호사의 양심 조항)에 따른 행동에서 표명되는 신념이 원칙적으로 제9조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그 특수성과 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양심 조항은 변호사가 법원에서 수행하는 공적 역할이 아니라 사인의 자격으로 지니고 있는 개인적 신념과 혼동될 수 있다(*Mignot v. France*, 위원회 결정).
78.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9조(단독으로 또는 차별금지에 대한 협약 제14조에 비추어)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 동성커플의 시민결합 등록 업무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독교 신자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및 해임(*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02-106)
  - 동성커플의 성 관련 심리치료를 거부한 민간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그에 따른 해고(*ibid.*, §§ 107-110).
79. 재판소와 위원회는 또한 다음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협약 제9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평화주의자인 퀘이커 교도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국방관련 재원에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건(*C.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이러한 접근법은 *H. and B.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낙태에 반대했던 프랑스 납세자가 낙태를 위한 재원에 사용된 일정 비율의 세금에 대해 납부를 거부한 사건(*Bouessel du Bourg v. France*, 위원회 결정) 사건에서 유효한 것으로 거듭 확인되었다). 납세 거부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는 세금이 징수된 후에는 개별 납세자가 세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금 배분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납세 의무의 종립성이 명확히 증명되므로 일반적인 납세의무는 그 자체로 개인의 양심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법령에 따라 경찰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구금자를 대리하도록 정식으로 배정된 변호사가 해당 법령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 징계 처분. 위원회는 변호사 직업적 양심조항이 제9조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청구인의 경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실제 사건에서의 변호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법 체계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실제 사건에서의 변호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양심 조항에 따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Mignot v. France*, 위원회 결정).
- 약국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약국에서 피임약 판매를 거부한 사건(*Pichon and Sajous v. France* (dec.))

80. 재판소는 또한 다음 청구들을 각하했다.

-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는 실업자가 지역 개신교에 소속된 컨퍼런스 및 세미나 센터의 안내원 일자리를 거부한 후 실업급여가 일시 정지되자 제기한 청구. 재판소는 해당 일자리가 단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일 뿐이고, 안내원 업무는 분명히 어떤 종류의 종교적 신념과도 관련이 없으며, 해당 일자리가 종교를 믿지 않을 청구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Dautaj v. Switzerland* (dec.)).
- 공공의료보험 부서에 근무 중인 의사가 향후 해당 직원과 근무해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편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수습직원에게 건강 검진을 거부해 해고되자 제기한 청구.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도덕적 딜레마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9조가 의미하는 "개인적 신념을 표명"이 없다고 보았다(*Blumberg v. Germany* (dec.)).
- 러시아 국민 몇 명이 개인별 "납세자 번호"를 모든 납세자에게 할당할 법령이 적그리스도의 전조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 재판소는 이 조치가 종립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공영역에 적용되었으며, 대부분의 납세자가 공식문서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공문서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그 안에 기재된 개인이 원하는 대로 정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9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Skugar and Others v. Russia* (dec.))

## B. 적극적 측면

### 1. 일반 원칙

81. 종교의 자유가 일차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또는 신앙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는 자유 또한 내포하고 있다. 제9조는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여러 형태, 즉 예배, 선교, 행사, 의식 등을 열거하고 있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14)
82.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협약에 따라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종교적 신념의 정당성이나 종교적 신념의 표현 방식에 대해 평가하는 권한을 갖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Hassan and Tchaouch v. Bulgaria* [GC], § 76; *Leyla Şahin v. Turkey* [GC], § 107). 실제로 종교와 철학적 신념은 종교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여기서 종교는 매우 광범위한 교의와 도덕적인 실체를 형성하며 이러한 실체가 철학, 우주 또는 도덕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인식조차도 중요할 수 있는 영역이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07). 따라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의 폭이 좁으며,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영역 안에서 종교적 행동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이 선택한 사항을 제한하려면 중대하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개인의 선택이 일부다처제 또는 미성년자 결혼이나 성 평등에 대한 노골적 위반과 같이 협약의 기본원칙들과 일치하지 않거나, 강제나 강압에 의해 신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비추어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83. 제9조는 종교나 신념에서 동기를 얻거나 영감을 받은 모든 행동을 보호하지 않으며, 공공 영역에서 종교나 신념에서 나오거나 영감을 받은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를 항상 장하지는 않는다(*Kalaç v. Turkey*).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제9조는 협약에서 허용하는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준수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Fränklin-Beentjes and CEFLU-Luz da Floresta v. the Netherlands* (dec.)). 종교나 일련의 신념에서 영감을 받고 동기를 얻거나 영향을 받는 행동이 제9조에서 의미하는 종교나 신념의 "표명"으로 간주되려면, 해당 행동이 종교나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 예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의 종교나 신념 행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예배나 기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종교나 신념의 "표명"이 이러한 행동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해당 행동과 근본적인 신념 사이에 충분히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어떤 행동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S.A.S. v. France* [GC], § 55). 예를 들어, 재판소는 이슬람 종교 공동체의 공식 입장을 근거로, 엄격한 종교적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종교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오래된 전통인 스킨캡을 착용하고자 하는 이슬람교도 남성의 희망이 제9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했다(*Hamid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 30).

84. 때때로, 개인이 종교를 표명할 자유를 행사할 때 자신의 특정한 직업적 또는 계약상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X. v. the United Kingdom*, 1981년 3월 12일 위원회 결정; *Kalaç v. Turkey*, § 27). 예를 들어, 만다롬 오움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민간 경비업체 운영 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결과 스위스 법에 따라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명예"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판소는 명백히 근거없는 청구로 보아 각하하였다. 스위스 법원은 오움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위협한 인물이고, 그의 가르침이 곧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며, 이 지도자가 추종자에게 자살이나 폭력을 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능성으로 인해 경비업체 운영을 오움교 공동체의 추종자에게 맡기는 것은 공공질서와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스위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사실상 동의했으며, 이 사건의 제한이 협약 제9조제2항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C.R. v. Switzerland* (dec.)).
85. 재판소 판례에 대한 아래의 개관은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형태(건강 문제)부터 가장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표현(집단체배의 자유와 공개장소에서 예배할 권리)까지 다양한 종교의 자유 표명을 포괄한다.

## 2. 종교의 자유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86.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한 **수혈**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협약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우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치료를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자살과 똑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수혈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한 유일한 의료절차였다. 깊이 고려한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수혈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환자의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이러한 수혈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소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할 자유에는 신체적으로 해롭거나 위협한 것으로 인식되는 활동을 수행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의료 영역에서는 특정 치료를 거부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하는 것은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제8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합리적이고 무분별하거나 경솔하게 보일지라도, 환자가 자신의 견해와 가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소는 관련된 국내 법령들을 심사한 후 성인 환자의 선택의 자유와 미성년자의 객관적 이익 모두를 충분히 보호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자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에 반대하는 부모의 의사를 무시할 권한이 있음).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에 따르는 수혈 금지는 이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활동을 금지할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131-144).
87.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신병원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열등하고 무력한 위치에 놓인 상태이므로 협약, 특히 제9조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Mockuté v. Lithuania*, § 122). 정신과 치료는 정신과 의사가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환자와 논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자의 신념이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행동으로 표명될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신념을 "교정"하기 위해 이를 깊숙이 캐묻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Mockutė v. Lithuania*, § 129). 따라서 재판소는 오쇼 종교운동을 따라 목상하던 여성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뒤 급성정신병 진단을 받고 52일 동안 수용되었으며, 이 기간에 병원 의료진은 이 여성이 목상과 오쇼 운동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도록 설득하고 이를 폄하함으로써 여성의 신념을 "교정"하려 했던 사건에서 제9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국내법에 따라 청구인이 2일 이상 정신병원에 수용된 것이 불법이었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정신과 의사와의 관계에서 특히 의존적이고 취약하며 무력한 입장이었다고 본 재판소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그 제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고 판결했다(*Mockutė v. Lithuania*, §§ 107-131).

### 3. 음식에 관한 율법의 준수

88. 종교 또는 철학 체계에 따라 규정된 음식에 관한 율법의 준수는 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종교 또는 신념의 "행사"이다(*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 73-74; *Jakóbski v. Poland*). 두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즉 불교 신앙을 가진 재소자에게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식사 제공을 거부한 교정당국이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ibid.*; *Vartic v. Romania (no. 2)*). 특히 바르티크 대 루마니아 사건의 청구인은 육류가 포함된 환자용 식사만 받을 수 있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종교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이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법무부장관이 소포로 음식을 받는 것을 금지한 이후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욱 제한되었다고 언급했다(*ibid.*, §§ 47-50).
89. 반대로, 위원회는 징역형을 살고 있는 정통파 유대교도인 청구인이 정기적으로 코셔(kosher) 식품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제소한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채식주의자 코셔 식단이 제공되었고, 식사 문제에 관해 랍비장(Chief Rabbi)과 논의했으며, 청구인의 종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당국이 취한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랍비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X. v. the United Kingdom*, 1976년 3월 5일 위원회 결정).
90. 재판소는 또한 프랑스 극단적 정통파 유대교도 협회가 청구인으로서 제기한 사건에서 제9조를 위반하거나 제14조(차별 금지)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이 종단의 신도들은 표준 카쉬루트(kashrut, 유대인들의 음식계율)보다 엄격한 규정에 따라 도살된 동물의 육류인 "글라트(glatt)"를 먹을 권리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프랑스 유대인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파리 유대인 종교지도자 협회(Jewish Consistorial Association of Paris)'에 대해 이미 글라트 육류를 위한 도축 허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단의 신도들은 자체적인 도축업자가 그러한 도축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거부되자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 협회가 벨기에에서 "글라트" 육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파리 유대인 종교지도자 협회'가 운영하는 많은 정육점에서 "글라트" 육류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제된 허가 거부가 청구인 협회의 종교를 표명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 협회와 소속 교도들이 "글라트" 육류를 구할 수 있었으므로, 협약 제9조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도살 의식 수행과 그것에 대한 인증 절차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까지 확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 82).

#### 4. 종교적 의복 및 상징 착용

91. 건전한 민주사회는 종교 영역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용인하고 지속시켜야 한다. 또한, 종교를 삶의 중심 교리로 삼은 개인은 원칙적으로 종교적 상징과 의복 착용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94). 자신의 신앙에서 동기를 얻어 이에 대한 증인이 되고자 종교적 상징이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예배, 행사, 의식의 모습으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교적 상징과 의복 착용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행동이다(*ibid.*, § 89). 예를 들어, 재판소는 엄격한 종교적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종교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오래된 전통인 스컬캡을 착용하고자 하는 이슬람교도 남성의 소망이 제9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Hamid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 30).
92. 그러나 종교적 의복과 상징을 착용할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단체의 정당한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확립된 재판소의 판례법은 4가지 영역, 즉 a) 공공장소, b) 학교와 대학, c) 공무원 및 공공업무시설, d) 직장을 포괄한다.
93. 먼저, 첫번째 논점인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의복과 상징을 착용하는 것에 관하여, 종교의식이 거행되는 곳 이외에는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유형의 종교적 복장 착용을 금지한 터키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아지멘디 타리카트(*Aczimendi tarikati*)"라는 종교단체의 신도들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9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상은 검은색 터번, 검은색 시르왈(*sirwal*, 전통의상) 바지, 검은색 상의와 지휘봉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터키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터키 민주주의 체제에서 세속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고려한 후, 해당 제한이 세속주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9조제2항에 열거된 몇 가지 정당한 목적, 즉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추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한 것이었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소는 금지가 적용된 대상이 직무수행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특정 공공시설이 아닌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의복 착용을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기록에 따르면, 종교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의상을 입고 모스크 밖에 모였던 청구인들은 특정한 형태의 의복 착용을 통해 자신들의 신념을 표명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터키 정부는 청구인들이 전도 활동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전도하기 위해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행인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기록에서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Ahmet Arslan and Others v. Turkey*).



94. 이와 반대로, 재판소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따라서 부르카 및 니캅 포함)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과 관련해 프랑스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 제9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할 경우 벌금이나 강제적인 시민교육수강 조치로 처벌할 수 있었다. 재판소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베일의 경우 눈을 제외하고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Ahmet Arslan and Others v. Turkey* 사건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았다. 게다가, 프랑스 사건에서의 특정 복장 금지는 해당 복장의 종교적 의미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얼굴이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두에게 공개되는 장소에 있는 사람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동체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는 개방적인 대인관계의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관행이나 태도가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베일로 얼굴을 가릴 때 생성되는 대인관계의 장벽이 함께 사는 삶을 촉진하는 사회화의 공간에서 살아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시 말해, 국가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일부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릴 경우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관련 여성의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해당 문제를 전면 금지조치를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들이 고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성들의 사회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특히 부과되는 처벌이 무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국이 판단재량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S.A.S. v. France* [GC]). 재판소는 프랑스 법률과 매우 유사한 벨기에의 법률과 지방자치법령에 대해 제기된 두 사건에서 벨기에 법령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부과했음에도 프랑스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Dakir v. Belgium; Belcacemi and Oussar v. Belgium*).

95. 재판소와 위원회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교와 관련된 의복을 의무적으로 잠시 벗도록 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상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재판소와 위원회는 다음의 사건들에서 제기된 청구를 각하했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착용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시크교도의 사건. 청구인은 종교적 의무에 따라 항상 터번을 착용해야 했기 때문에 헬멧착용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제출(*X.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7월 12일 위원회 결정)
- 시크교도에게 공항 출국라운지에 들어가기 전 보안검색대 통과시 터번을 의무적으로 벗도록 한 조치(*Phull v. France* (Dec.))
- 모로코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러 온 청구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베일을 벗도록 한 조치. 청구인은 베일을 벗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후 프랑스 총영사관에 입장이 거부되어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재판소는 베일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여성 앞에서만 벗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프랑스 영사관이 청구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여성 담당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이 사안에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El Morsli v. France* (dec.)).

- 공식문서의 사진에 머리를 가리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 구체적으로는 대학졸업장을 발급받으려는 이슬람교도 학생에게 머리를 가리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Karaduman v. Turkey*, 위원회 결정; *Araç v. Turkey* (dec.))
  - 공식문서의 사진에 머리를 가리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 규정, 구체적으로는 시크교도인 청구인이 터번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거부한 조치(*Mann Singh v. France* (dec.))
96. 두번째 논점인 **국립교육기관에서의 종교적 상징과 의복 착용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가가 이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한 판단재량을 누린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유럽 차원에서 종교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획일적인 개념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의미나 영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역의 규칙은 국가의 전통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규정의 범위와 형식은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문제는 일정 부분 국가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다(*Leyla Şahin v. Turkey* [GC], § 109). 재판소가 이러한 관점에서 심사한 사건은 종교적 복장을 착용할 권리를 요구하는 청구인이 교사인지 학생인지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97. 교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종교를 표명할 교사의 권리와 여러 종교 간 조화를 통해 국립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했다. 국가가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표현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공무원은 개인이기도 하므로 협약 제9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업무가 제9조제2항에 열거된 목적을 적절히 추구하도록 보장할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Kurtulmuş v. Turkey* (dec.)). 이 점에서 교육권한을 행사하는 담당자이자 학생의 관점에서는 국가의 대리인인 국립학교 교사의 특성과 해당 의복이나 상징의 착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종교전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어린 학생은 나이가 많은 학생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나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Dahlab v. Switzerland* (dec.)).
98. 이러한 논리에 따라, 재판소는 국가가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의 사건들에서 청구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어린 학생(4~8세)의 수업을 담당하는 국립 초등학교 교사는 교직 수행 시 이슬람식 머리스카프(headscarf) 착용을 금지한 것. 재판소는 "강력한 외형적 상징"인 이슬람식 머리스카프를 두르는 것이 관용과 타인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도 민주사회의 모든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평등과 차별금지 덕목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그 밖에도 재판소는 문제의 조치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협약 제14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조치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종교의 구성원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의복을 착용한 남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Dahlab v. Switzerland* (dec.)).

- 강의에서 이슬람식 머리스카프를 착용하여 공무원 복장규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터키 국립대학의 부교수. 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는 공무원들이 국가의 토대가 되는 헌법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속주의 원칙은 터키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학의 권한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공직을 맡은 청구인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재판소는 문제의 조치가 성별과 종교적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협약 제14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성 직원 또한 종교적 신념을 겉으로 드러내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Kurtulmuş v. Turkey* (dec.)); 또한 "*이맘 하티프(İmam-Hatip)*" 중등학교의 여교사의 정직에 관련된 비슷한 사건인 *Karaduman v. Turkey* (dec.) 참조).

99. 학생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다음의 사건들에서 제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청구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터키 국립대학 의대생에 대해 수업 중 이슬람 머리스카프 착용을 금지한 것. 재판소는 터키의 특수한 역사와 특정 헌법체제를 고려할 때, 터키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이 터키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세속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쏟은 노력이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세속주의 개념이 협약의 기초가 되는 가치와 일치하며 법치주의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재판소는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였는데, 터키 헌법체제가 협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 중 하나이며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인 성 평등을 강조했다라는 점, 터키의 경우 종교적 의무로서 제시되거나 인식되는 이러한 상징이 이슬람 머리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슬람 머리스카프에 관한 문제를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 터키 법원이 머리스카프 착용은 터키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한 점, 터키에서는 종교적 상징과 종교 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사회라는 개념을 사회 전체에 강요하려는 극단주의 운동이 발생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문제된 규정은 앞서 언급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대학의 다원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Leyla Şahin v. Turkey* [GC]).
- "*이맘 하티프*" 중등학교(터키의 국영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코란 수업을 제외하고는 이슬람 머리스카프 착용을 금지한 것과 머리스카프를 착용한 학생의 수업 참석을 금지한 것. 재판소는 터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중등학교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했으며 학교수업을 들을 때 머리에 다른 의복을 착용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맘 하티프*" 학교는 한 가지 예외가 허용되어 여학생이 코란 수업 중 머리를 덮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문제된 규정들이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항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그 규정들은 압력을 받기 쉬운 10대 청소년들을 위해 중등교육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Köse and Others v. Turkey* (dec.))

- 프랑스 국립 중등학교가 머리스카프를 쓴 학생에 대해 체육 및 스포츠 수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후 출석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결정을 내린 것. 재판소는 프랑스의 세속주의 원칙이 협약의 기초가 되는 가치와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종교적 상징의 착용이 학교에서의 세속주의 원칙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상징을 착용하는 상황이나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따라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 프랑스 법원의 판례를 고려했다. 재판소는 이슬람 머리스카프와 같은 베일 착용이 스포츠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관련 이익들 모두를 형량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청구국은 판단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Dogru v. France; Kervanci v. France*)
- 프랑스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종교적 소속을 드러내는 상징이나 의복"의 착용을 체육 및 스포츠 수업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에서 이슬람 머리스카프나 시크교도 터번 또는 "케스키(*keski*, 작은 터번)"를 착용한 학생들에 대해 내린 퇴학 결정. 재판소는 협약의 기초가 되는 가치와 부합하는 헌법상의 세속주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문제된 조치를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재판소는 교장이 이슬람교도 학생에게 머리스카프 착용을 금지하고 수업에 들어올 때 벗도록 한 것, 또는 종교적 의미가 없는 모자나 다른 손수건(*bandana*)을 대신 착용하도록 하고 시크교도 학생들에게는 터번 대신 작은 터번(*keskis*)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협약 제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Gamaleddyn v. France* (dec.), *Aktas v. France* (dec.), *Ranjit Singh v. France* (dec.), *Jasvir Singh v. France* (dec.)).

100. 세번째 논점은 학교 이외의 공공업무시설(정부 기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립 병원 등)에서 종교적 상징과 의복을 착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경우에도 재판소가 심사했던 사건은 공무원에 관한 사건과 공공업무 이용자에 관한 사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01. 첫째, 공공업무의 **이용자**에 관한 사건의 경우, "이용자"라는 용어는 최대한 폭넓은 의미, 즉 개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또는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의무적으로) 공공업무와 관계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무원과 달리, 이용자는 공공업무에 관여하는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의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Ebrahimian v. France*, § 64; *Lachiri v. Belgium*, § 44). 따라서 이용자는 공공건물 안에서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업무를 처리할 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102. 그러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직장과 달리 "공공장소"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거리나 도로, 공공 광장과 똑같은 공공장소로

볼 수는 없다. 법원은 종교를 표명할 권리에 대한 자유로운 행사보다 신념에 대한 중립성의 존중이 우선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이다(*Lachiri v. Belgium*, § 45). 이에 따라, 재판소는 비록 일반론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은 증인에게 법정에서는 종교적 상징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Hamid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 41). 그러나 재판소는 와하비/살라피(Wahhabi/Salafi) 이슬람 운동을 옹호하는 단체의 일원이자 테러사건에 대해 증언하면서 스컬캡을 벗지 않아 벌금형을 부과받은 보스니아 남성에 대한 사건에서 협약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폭넓게 부여된 판단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었다는 점, 청구인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청구인의 태도는 항상 스컬캡을 착용해야 한다는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서 나온 것임이 명백했다는 점, 청구인은 재판을 방해하거나 조롱할 숨은 의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살라피주의자였던 그 재판의 피고인들과는 달리, 청구인은 법정에 출석하였고, 기립하라는 요청에 따라 일어남으로써 법률과 법원을 존중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던 점 등을 제시했다(*Hamid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소송의 민간인 당사자인 이슬람교도 여성이 머리스카프를 벗는 것을 거부하여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사건에서도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앞선 사건에서와 같이 재판소는 청구인이 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적절한 심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Lachiri v. Belgium*).

103. 공공업무 이용자가 자신의 종교를 표명할 자유는 공공병원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환자와 다른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환자와 다른 이용자는 모든 형태의 전도 활동을 삼가고 병원의 업무기구, 특히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존중함으로써 세속주의 원칙이 실제로 실현되는 데 협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국가의 규정은 종교적 신념의 발현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 환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 및 적절한 병원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Ebrahimian v. France*, § 71).
104.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직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국가는 국가 세속주의 및 중립의 원칙을 이유로 공무원이 직장에서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 재판소는 특히 공공업무 이용자가 취약한 상황에 놓은 경우를 비롯하여 공공업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종교적 중립을 엄격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공공업무를 이용하고 공무원에 부과된 중립성 요건에서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적 신념과 영적 지향이 존중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업무 이용자가 종교에 근거한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협약 제9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Ebrahimian v. France*, § 53). 특히 국가의 헌법체제에서 국가와 다양한 종교들과의 관계에 대해 세속주의적 중립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이 종교적 신념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 이익보다 세속주의적 중립 원칙과 국가의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둔 법원의 결정은 협약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ibid.*, § 67).

105. 앞서 설명한 내용은 직원이 환자와 접촉하는 공공병원의 상황과 특히 관련이 있다. 환자에게 평등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할 때 병원 직원이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병원 업무의 중립성은 직원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중립성에 대해 어떤 의심도 품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Ebrahimian v. France*, § 64).
106. 이에 따라, 재판소는 프랑스 공립병원 정신과에서 보조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이슬람교도 여성이 직장에서 이슬람 머리스카프를 벗는 것을 거부한 후 경고 조치에 이어 결국 해고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제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병원에서 접촉하는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이들 환자가 공공업무 이용자로서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의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해당 조치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공공업무의 세속주의 원칙과 관련해 프랑스의 세속주의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며, 문제된 중립성 의무를 청구인이 수행하는 실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제한이 비례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는데, 먼저, 머리스카프를 벗으라는 명령을 청구인이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병원 당국은 면밀히 심사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그 명령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병원측은 중립성원칙의 준수 필요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청구인이 그 징계에 대해 프랑스 법원에서 다룰 수 있었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실과적으로 주장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Ebrahimian v. France*).
107. 이제 네번째이자 마지막 논점인 **직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판소는 병원이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복 착용 규정을 정할 때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고 판결했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99; *Ebrahimian v. France*). *Eweida* 사건의 두 번째 청구인은 공립병원에 채용된 경우였으나, 재판소의 논증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판소는 노인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완전히 벗지 않고 브로치로 착용하거나 목이 높은 상의 안으로 집어넣은 것을 이유로 전근 조치를 당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제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의 관리자들은 정신 장애가 있는 환자가 목걸이를 잡아당겨 본인이나 청구인이 다칠 위험이 있고 십자가를 앞으로 휘두를 경우에는 노출된 상처와 접촉할 위험이 있다고 영국 법원에 설명했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98-100).
108. 병원 이외의 다른 장소의 경우, 영리회사는 특정 상업적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복장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상징 착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94). 그렇지만, 이러한 이익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종교를 표명할 개인의 권리와 항상 비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다른 종교의 특정 상징(터번 또는 히잡)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직원에게 착용 중인 기독교 십자가가 안 보이게 할 것을 지시한 후 해당 직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제9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94-95).

## 5. 종교적 자유, 가족 및 자녀 교육

109. 제9조는 어떤 종교적 의미에 관해서도 결혼을 규정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며, 종교적 결혼의 양식은 각 종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특히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와 허용 정도에 대한 문제는 각 종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Parry v. the United Kingdom* (dec.)). 예를 들어, 위원회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16세 미만의 소녀와 혼인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동의 연령인) 16세 미만의 소녀와 성관계를 맺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대해 제9조의 보호를 확장하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 제12조(혼인의 권리) 위반의 상황도 없었다고 결론내렸다(*Kha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또한 첫 번째 성관계를 맺기 전 구약성경의 한 구절을 낭독하여 정식으로 혼인을 맺었으므로 국가가 자신들의 결합을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배우자와 결혼하기를 거부한 남성의 청구를 각하했다(*X. v. Germany*, 1974년 12월 18일 위원회 결정).
110. 제9조는 이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 63).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민사상의 이혼 절차가 완료된 후, 전 부인이 종교적 의식에 따라 재혼하는 데 필요한 이혼증서(*get*) 전달을 거부함으로써 민사법원에 의해 전처에게 손해배상을 선고받은 유대인이 제9조를 근거로 제기한 청구를 각하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코헨(Cohen)* 집단에 속해 있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한 여성과는 결혼이 금지되고 심지어 자신의 전처와도 다시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전처와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청구인이 이혼증서 전달을 거부하여 랍비 법정(*Rabbinical Tribunal*)에 의해 고발당했을 때 이 사건의 청구 근거로 제시한 계율에 분명히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혼증서 전달을 거부한 행위가 제9조에서 의미하는 "종교의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D. v. France*, 위원회 결정).
111. 종교적인 삶의 방식은 신자의 시간을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고 때로는 많은 기독교 종파에서 취하는 수도원적 금욕주의(*monasticism*) 같은 극단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이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불교와 힌두교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종교생활과 종교적 규칙에 대한 자기 헌신이 요구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인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종교적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경우, 이와 같이 종교적인 삶을 살기로 한 결정으로 이 선택을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개인의 결정은 협약 제9조의 보호범위에 충분히 포함된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111).
112. 제1의정서 제2조를 근거로, 위원회는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부모의 권리가 친권의 속성 중 하나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자녀 양육권이 취소된 부모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X. v. Sweden*, 1977년 12월 12일 위원회 결정).
113. 위원회는 이 원칙에 따라 다음 사건들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 미성년 아들과 전 부인이 스웨덴에 거주하고 자신은 독일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의 남성이 제기한 청구. 청구인은 스웨덴 법원에서 자녀를 방문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세례를 받았던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루터교를 믿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청구인의 전 부인은 결혼 당시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에 따라 자녀를 가톨릭 신자로 양육하겠다고 엄숙히 서약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위반이라고 주장한 행위가 피청구국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자녀 양육권 및 자녀의 교육을 보장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 부인의 행위에서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협약상의 당사자적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X. v. Sweden*, 1957년 12월 20일 위원회 결정; 또한,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첫 번째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청구(*X. v. Sweden*, 1959년 6월 30일 위원회 결정 및 *X. v. Sweden*, 1961년 4월 10일 위원회 결정) 참조).
- 소련 중앙아시아 출신의 한 정치적 난민은 자신의 조카들이 가톨릭 교육기관에서 자라면서 이슬람 신앙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청구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조카들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청구인이 위반 혐의를 제기한 행위의 간접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은 다루지 않았지만, 특히 법원의 판결 당시 조카가 각각 스무 살과 스물한 살이었던 점을 들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X. v. Germany*, 1968년 7월 19일 위원회 결정).
- 유대인 부모는 스웨덴 사회복지기관이 미성년자 딸들을 유대인 위탁가정이 아닌 개신교 위탁가정에 맡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 청구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1의정서 제2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실제로 스웨덴 사회복지기관이 현지 랍비의 도움을 받아 유대인 위탁가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모에게 진전 상황을 계속 전달하고 의견을 구했지만, 결국 해당 기관은 이 지역에서 유대인 위탁가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Tennenbaum v. Sweden*, 위원회 결정).
- 한 이슬람교도 남성은 이혼 후 전 부인이 자신의 미성년자 딸에게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도록 해서 딸이 개종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딸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이슬람교를 버린 자녀를 "존재하지 않는" 자녀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서 이슬람교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다른 부모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고 이 의무가 그 자체로는 종교나 양심의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Karakuzey v. Germany*, 위원회 결정).

114.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재판소는 마케도니아 정교회의 수도회에 입회한 성인 자녀들의 부모로 구성된 단체가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 및 그 밖의 여러 협약 조항에 따라 제기한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마케도니아 정교회가 수도회를 설립하고 자녀들에 대해 입회를 허용함으로써 자녀들과 만나고, 노년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고, 손자 손녀를 가질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국가가 교회를 상대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들의 자녀가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고,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만남, 존중, 상호 애정은 전적으로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 국가에 어떠한 적극적 의무도 부과할 수 없으며, 끝으로 협약은 조부모가 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Šijakova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 재판소는 라엘리안운동(Raëlian Movement) 단체의 구성원이며 남편과 별거 중이지만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한 어머니가 (자신과 새 동반자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 자녀와 라엘리안운동 단체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라엘리안운동의 회의에 자녀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원의 명령에 대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청구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재판소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목적(자녀의 권리와 아버지의 권리 보호)을 추구하는 이러한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자녀들이 라엘리안운동의 다른 구성원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자녀들 앞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재판소는 또한 교육에 대한 각 부모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이견을 조정하고, 가치판단은 배제하면서 부모의 개인적인 신념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균형을 이루고,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임을 강조했다. 재판소는 거의 같은 이유로 제14조에 의해 금지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F.L. v. France* (dec.)).
- 러시아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지부를 해산하고 그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종교 공동체가 신도를 가족과 분리하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심리적 압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소는 제9조 위반을 인정하면서 러시아 법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첫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생활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한 것이 전 세계 주요한 "전통적" 종교에서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강요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며, 둘째, 적절한 접근법은 종교를 믿지 않는 가정, 러시아의 주요 종교를 믿는 신도의 가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가정에서 발생한 가정 파탄 빈도를 비교하는 방법이었을 것임에도 러시아 법원이 제시한 통계자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가정의 분쟁 단 6건에 대한 자료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109-104).
- 이혼한 남성인 청구인은 미성년자 딸(어머니가 양육권 보유)이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리서 수업을 받는 것에 반대하면서,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딸의 종교교육에 대한 결정을 미뤄야 하며, 그 사이에 자신이 종교와 관련된 딸의 교육을 단독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스페인 법원에 요청했다. 스페인 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청구인은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협약상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양육권을 보유한 어머니가 단지 딸의 의사에 따랐을 뿐이므로 딸의 최선의 이익을 적절히 보장했다고 판단했다(*Rupprecht v. Spain* (dec.); 또한, 제1의정서 제2조에 따라 심사한 상당히 유사한 사건에 관해서는 *X. v. the Netherlands*, 1968년 2월 6일 위원회 결정, 참조).

115.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제9조는 국가의 종교적 교화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Angeleni v. Sweden*, 위원회 결정; *C.J., J.J. and E.J. v. Poland*, 위원회 결정). 실제로, 국가와 종교 사이의 관계와 종교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한 문제, 특히 교육행위와 국가교육의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는 상당히 폭넓은 판단재량을 가진다. 국가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정보나 지식이 객관적이고 비판적이며 다원주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어떠한 종교적 교화 목적도 추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국가의 필요와 전통에 따라 자유롭게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Osmanoğlu and Kocabaş v. Switzerland*, § 95). 재판소는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므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었는지를 심사한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해 심층적이고 엄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는 특정한 종교나 철학을 믿는 부모가 자신들의 생각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녀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단지 국가가 교육을 통해 그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A.R. and L.R. v. Switzerland* (dec.), §§ 40 및 49). 하지만, 자녀의 교육에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협약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Osmanoğlu and Kocabaş v. Switzerland*, § 95).
116. 국립학교에서 개최된 종교의식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른 종파에 속한 부모가 학교에서 종교의식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가운데 7세 학생이 짧은 종교의식(학년 초에 러시아 정교회가 축복을 내리는 의식)에 참석한 상황에 대해 제9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 종교의식이 전도 목적과 관계없는 행사였고, 아동은 종교의식을 단지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데 그쳤으며, 어떤 의식(십자가 표시를 하거나 십자가상에 키스하는 것과 같은)도 강요받지 않았고, 국가기관이 교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부모의 항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고 언급했다(*Perovy v. Russia*, §§ 70-77).
117. 일부 사건에서는 **학교출석 의무**가 가족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재판소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청구를 각하했다.
- 국립학교 학생으로 무신론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은 스웨덴 국립학교위원회가 종교수업에서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국립학교의 종교적 가르침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한 당시 시행중이던 스웨덴 법령에 따르면 "종단"에 속하여 종단에서

종교교육을 받는 학생은 종교수업을 면제받는 반면 무신론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14조에 반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문제의 종교수업에 예배(찬송가 등)의 요소가 포함될 때마다 대체로 이러한 종교수업을 면제받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재판소는 나머지 종교수업의 경우 기독교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아닌 **종교**에 관한 수업이었다는 스웨덴 정부의 주장에 동의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종교 교화를 당하거나 어떤 특정한 유형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다(*Angeleni v. Sweden*, 위원회 결정; 반대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해서는 *Folgerø and Others v. Norway* [GC] 참조).

-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라 학생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종교·도덕 수업이나 도덕·사회 수업을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데, 자신들은 철학적 신념을 근거로 자녀가 이러한 수업을 면제받기를 원한다며 그 법령이 차별적이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종교적 교화나 다른 방식으로 교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없는 경우, 아동에게 도덕 및 사회 교과 수업을 받도록 한 의무는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상이한 대우가 정당한 목적(모든 청소년에게 도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의 잦은 결석을 줄이는 것)을 추구했으며, 관련 법령에는 해당 수업이 인권 연구를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목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다(*Bernard and Others v. Luxembourg*, 위원회 결정).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부부는 그 종교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준수하는 휴일인 토요일에 아들이 학교에 출석할 의무를 전면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룩셈부르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했다며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부모의 종교적 신념보다 자녀의 교육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이 사건에서 비례성원칙이 적절히 지켜졌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된 제한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Martins Casimiro and Cerveira Ferreira v. Luxembourg* (dec.)).

118. 재판소는 또한 다음 사건에서 부모가 제9조를 근거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계 스위스인 부모는 (아직 사춘기가 되지 않은) 딸들이 학교에서 남녀가 같이 받는 의무적인 수영 수업을 받는 것에 반대하면서 관할 기관에 자신의 딸들이 수영 수업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할 기관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 사건을 부모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건으로 보았다. 그 제한은 정당한 목적, 즉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제로부터 외국인 학생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추구했다. 재판소는 비례성에 대해 심사하면서 특히 외국인 아동을 위한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학교가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첫째, 재판소는 외국인 아동이 학교 교육을 완료하여 지역 관습과 풍습을 받아들이며 더 쉽게 사회에 통합되는 것에 대해 가진 이익이, 남녀가 같이 받는 수영 교육을 딸들이 면제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둘째, 재판소는 외국인 아동이 수영 수업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가진 이익은 단순히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학생들과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관할 기관은 이슬람 여성용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burkini)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에서 제기된 제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매우 유연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관련 기관들은 자신들의 판단재량의 범위 안에서 행동한 것이었다(*Osmanoğlu and Kocabaş v. Switzerland*).

- 스위스의 한 초등학교는 당시 7살이었던 딸의 성교육을 면제해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으로,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성교육 수업을 받을 경우 근본적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의 성교육은 체계적인 수업이라기보다는 보충적인 성격의 수업이었으며, 선생님의 역할 또한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행동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A.R. and L.R. v. Switzerland* (dec.)).

## 6. 설교와 전도

119. 원칙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표명할 자유는 예컨대 "선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개종하도록 할 권리**를 포함하며, 만약 이러한 권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협약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나 신념을 변경할 자유"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Kokkinakis v. Greece*, § 31; *Nasirov and Others v. Azerbaijan*, § 60). 반면, 제9조는 새로운 교회 신자를 모집하기 위해 물질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압력을 가하는 등의 부적절한 전도를 보호하지 않는다(*Larissis and Others v. Greece*, § 45).
120. 예를 들어,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청구인이 지방 정교회 성가대 칸토(cantor, 선창자)의 부인 집에 가서 이 부인과 종교의 본질에 관해 토론을 벌인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제9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Kokkinakis v. Greece*). 반면, 재판소는 사건 당시 공군 장교로 복무했던 청구인들이 더 낮은 계급의 공군과 민간인에 대해 전도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군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그리스 사건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군인**에 대한 개종 시도에 대해 재판소는 문제된 유죄판결이 제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군대생활의 특징인 계층적 구조가 군인들 사이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상급자가 꺼낸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민간인 세계에서는 듣는 사람이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악의 없는 의견교환으로 볼 수 있는 대화도 군대생활의 범위 안에서는 괴롭힘의 한 형태나 권력을 남용한 과도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종교 사안이나 다른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계급이 다른 군인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가 이 범주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국가는 낮은 계급을 가진 군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강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전도**에 대한 유죄판결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며 제9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Larissis and Others v. Greece*).

121. 설교와 전도와 관련하여, 목사나 작가가 자신의 종교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좋다는 취지의 진술은 비난받을 만한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0조에 따라 심사한 사건에 관해서는 *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 117 참조). 종교단체에서 군사적 은유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ibid.*, § 120).

## 7. 예배의 자유

122.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혼자서 사적으로 표명할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표명할 자유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혼자서이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든,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표명할 수 있다. 협약 제9조는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여러 형태, 즉 예배, 선교, 행사, 의식 등을 열거하고 있다(*Güler and Uğur v. Turkey*, § 35). 이는 제9조가 종교가 정한 율법에 따라 예배를 위해 신도들이 평화적으로 모일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the United Kingdom*; *Cumhuriyetçi Eğitim ve Kültür Merkezi Vakfı v. Turkey*, § 41). 그러나 제9조는 단독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협약 제11조(집회의 자유)에 비추어 해석하거나 간에 청구인이 원하는 모든 장소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Pavlidis and Georgakis v. Turkey (dec.)*, § 29).

123.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했다.

-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의 영토 안에 고립된 그리스 정교회 신앙을 가진 키프로스인들에 대해, 마을을 떠나 다른 예배장소에서 열리는 종교의식에 참석하거나 수도원 방문을 금지하는 등 종교생활을 규제한 조치(*Cyprus v. Turkey* [GC], §§ 243-246)
- 전국적인 여호와의 증인 단체가 합법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립 중등직업학교 강당에서 주일예배를 보던 중 러시아 경찰이 이들을 해산했다. 경찰의 조치는 국내법상으로도 명백히 불법적이고 자의적이었다(*Kuznetsov and Others v. Russia*).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에 따라 임차한 농업학교 강당에서 진행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연례 기념행사를 해산한 조치가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치는 경찰특공대 무장병력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이 수행했으며, 청구인들은 체포된 후 몇 시간 동안 구금되었다. 재판소는 제한의 합법성 문제는 심사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치가 명백히 "민주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Krupko and Others v. Russia*).
- 몰도바 경찰이 한 이슬람교도 집단이 개인 주택에서 연 기도회를 해산하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행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Masaev v. Moldova*)

- 문선명 목사의 통일교를 믿는 신도들이 한 신도의 집에서 집회를 열던 중 불가리아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집을 수색하여, 서적, 녹음물 기타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이 종교 공동체가 국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된 조치는 국내법상 명백히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가 종교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내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었고, 당시에는 일부 국내 판례를 근거로 그러한 집회를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행정 관행이 있었다(*Boychev and Others v. Bulgaria*).
- 청구인은 소환을 받아 지역 경찰서에 가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심문을 받았다. 뒤이어 경찰은 청구인의 집을 수색한 후 도서와 녹음을 압수했고, 결국에는 복음주의 신도 집단이 청구인의 집에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 경찰의 경고장을 발견했다. 재판소는 문제된 조치가 범죄 수사나 관련이 없었으며 국내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의 제한이 법적 근거없이 가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Dimitrova v. Bulgaria*).
- 청구인은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불법조직의 조직원 3명을 추모하기 위해 한 정당의 건물에서 열린, 메블뤿(*mevlüt*)으로 불리는 이슬람 종교의식에 참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소는 이 종교의식이 테러조직의 상징이 전시된 정당의 건물에서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참석자에 대해 제9조가 보장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테러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처벌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Güler and Uğur v. Turkey*).

124. 반대로, 재판소와 위원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9조 위반이 없었다고 판결했거나 청구가 근거없음이 명백하다고 선언했다.

- 영국 정부는 하지를 전후한 기간에 스톤헨지 유적지를 폐쇄하고 드루이드교(Druids)를 믿는 단체가 스톤헨지 유적지에서 하지 기념 의식을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특히 해당 국가기관이 이전에 스톤헨지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조치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제9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Chappell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또한, *Pendrago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참조).
- 낙태 시술 병원의 구내에 진입한 후 한쪽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몇몇 낙태 반대론자에 대해 "공공의 평화에 대한 침해" 죄목으로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위원회는 문제의 활동이 제9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제한이 제9조제2항의 의미에 따른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결했다(*Van Schijndel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 항상 키프로스 섬 남부 지역에서 살았던 키프로스 국적의 청구인은 북부 지역, 즉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영토에 위치한 교회와 수도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

재판소는 청구인과 키프로스섬 북부 지역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작지이며 남부 키프로스에서 청구인이 제9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Josephides v. Turkey* (dec.)).

- 북키프로스 경찰은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의 영토에 있으면서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수도원에서 사전허가 없이 열린 정교회 미사를 중단시켰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정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한 반면, 해당 문화유산의 관할 기관에게는 이 사건 집회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과도한 무력사용이 없었고, 북키프로스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충돌 예방의 필요성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문제된 제한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Pavlidis and Georgakis v. Turkey* (dec.)).

125. 재판소는 청구인이 종교에서 정한 특정 의식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이익보다 제9조제2항에 언급된 정당한 이익이 명백히 우선한다는 이유로 다음 청구를 각하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가톨릭 교구에 대해 오전 7시 30분 이전에 특정 음량 이상으로 교회 종을 타종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 재판소는 이 제한이 타인의 권리 보호(이 사건에서는 지역 주민의 야간 휴식)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으며 해당 목적에 비례하는 조치라고 결정했다. 실제로 교회 종은 음량을 줄여 타종할 수 있었으며, 타종이 제한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타종 음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Schilder v. the Netherlands* (dec.)).
- "산토 다이메 교회(Santo Daime Church)"로 알려진 종교에서 의식에 사용하는 환각 물질인 아야우아스카(ayahuasca)를 다량 압수하고 몰수한 것. 재판소는 마약류 관리 법령에 따라 취해진 압수 및 몰수 조치가 보건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예식에 술(성찬식 와인)을 사용하는 기독교 교회와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두 상황이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첫째, 와인은 마약류 관리 법령의 대상이 아니었고, 둘째, 기독교 교회의 의식에서는 취한 상태가 되기 위해 정신활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Fränklin-Beentjes and CEFLU-Luz da Floresta v. the Netherlands* (dec.)).

126. 재판소는 또한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 수도원 주변의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안테나 설치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기한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수도원이 예전부터 주변에 안테나가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운영되었고, 수도원 스스로 그 수도원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의 임대계약을 갱신했던 사실을 들어 제9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가 제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Jera Moni Profitou Iliou Thiras v. Greece* (dec.)).

127. 예배의 자유는 종교 행사의 본질적인 측면인 만큼 고인을 매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Johannische Kirche and Peters v. Germany* (dec.)). 하지만, 재판소는 병원에서 사망한 딸의 시신을 뒤늦게 돌려준 탓에, 청구인들이 몇 달 동안 딸의 무덤에서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나 기도를 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소는 문제된 행동의 경우 당국이 제9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직접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연된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은 제8조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Pannulo and Forte v. France* (dec.)).

## 8. 예배의 장소와 건물

128. 협약 제9조는 원칙적으로 종교적 예배의 장소나 건물을 제공하고 공개하며 유지할 권리를 보호한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에서는 종교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the United Kingdom*, § 30; *Cumhuriyetçi Eğitim ve Kültür Merkezi Vakfı v. Turkey*, § 41).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종교 공동체가 예배장소를 찾지 못할 경우, 종교를 표명할 권리는 어떠한 실체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Association de solidarité avec les témoins de Jéhovah and Others v. Turkey*, § 90). 일부 사건들에서, 국가기관이 특정한 장소에서의 종교적 모임에 대해 허가하거나 사실상 용인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위험을 모두 제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ibid.*, § 107).
129. 묘지의 조성 역시 종교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인 만큼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된다(*Johannische Kirche and Peters v. Germany* (dec.)).
130. 제9조는 국가로부터 예배장소를 제공받을 권리를 종교 공동체에 부여하지 않는다(*Griechische Kirchengemeinde München und Bayern e.V. v. Germany* (dec.); *Association de solidarité avec les témoins de Jéhovah and Others v. Turkey*, §97). 국가 소유의 건물을 수년간 종교적인 목적으로 계속 사용한 것을 국가기관이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국가기관에 어떠한 유형의 적극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Juma Mosque Congregation and Others v. Azerbaijan* (dec.), § 60). 반면 종교 공동체가 예배공간이 필요하여 예배장소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지인 토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장기임차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제9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Religious Community of Jehovah's Witnesses of Kryvyi Rih's Ternivsky District v. Ukraine*, § 53).
131. 제9조는 오래전에 몰수당한 예배당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권리를 종교 공동체에 부여하지 않는다(이 사건의 예배당은 1930년대에 몰수됨)(*Rymsko-Katolytska Gromada Svyatogo Klimentiya v Misti Sevastopoli v. Ukraine* (dec.), §§ 59-63). 또한, 제9조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서로 다른 두 종교단체에 대해 한 예배장소를 번갈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Gromada Ukrayinskoyi Greko-Katolitskoyi Tserkvy Sela Korshiv v. Ukraine* (dec.), §§ 33-38).
132. 또한 협약 조항들은 국가가 예배장소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을 함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스스로가 협약에 따른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예배장소에 특별한 특권적 지위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는 제14조에 반하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특정 종교 집단에 이 특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Cumhuriyetçi Eğitim ve Kültür Merkezi Vakfı v. Turkey*, §§ 48-49).

133. 현대사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법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공간개발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에서 도시계획정책을 시행할 때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한다(*ISKC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Association de solidarité avec les témoins de Jéhovah and Others v. Turkey*, § 103; *Religious Community of Jehovah's Witnesses of Kryvyi Rih's Ternivsky District v. Ukraine*, § 51). 그러므로 도시계획규제 적용은 원칙적으로 협약 제9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ibid.*, § 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심사 권한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청구인의 종교를 표명할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균형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재판소이다(*ibid.*, § 103). 실제로는 중립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도시계획규제를 시행하는 것도 특정 상황에서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The Religious Denomination of Jehovah's Witnesses in Bulgaria v. Bulgaria*, §§ 100-101).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종교의 자유에 적절한 비중을 두어 도시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안을 균형있게 조정했다면, 종교단체는 제9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를 내세워 기존 수립된 도시계획 법제를 회피할 수 없다(*ISKC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경우에 따라, 국가기관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규모 종교 공동체의 구체적인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Association de solidarité avec les témoins de Jéhovah and Others v. Turkey*, § 105).

134.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했다.

- 청구인들은 "공인된 교회 기관"(즉, 지역 그리스 정교회 주교) 및 그리스 교육종교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Religious Affairs)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인 주택의 방을 빌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예배장소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소는 국내법 관련 조항이 종교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했고, 이들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여 대다수가 믿는 그리스 정교회 이외의 교파 활동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Manoussakis and Others v. Greece*; 또한 위원회가 심리종료결정하면서 제시한 의견에 관해서는 *Pentidis and Others v. Greece* 참조).
- 터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두 단체가 예배장소로 사용하던 사유지들이 예배의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예배를 금지하는 터키 법령에 따라 폐쇄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그 부지들을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신도들은 지방 도시개발계획에 예배장소로 사용가능한 장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단체의 경우 신도가 적기 때문에 특정한 건축적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예배를 하고 모이고 선교할 수 있는 간단한 회의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가가 소규모 종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ssociation de solidarité avec les témoins de Jéhovah and Others v. Turkey*).

- 한 종교단체가 새로운 "왕국 회관(예배장소)"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존 예배장소로 사용 해온, 자신들 소유의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그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임차받고자 하였으나, 토지를 배정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임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침해는 제9조제2항의 의미에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하였다(*Religious Community of Jehovah's Witnesses of Kryvyi Rih's Ternivsky District v. Ukraine*, §§ 52-59).
- 지방자치단체는 여호와의 증인 협회가 소유한 토지에 예배장소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였는데, 특히 그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법령을 폐지하고, 시행 중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공사를 장기간 중단시켰고, 이후 시장은 위 토지에서의 건축공사 재개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가 공식적으로는 청구인 협회의 종교적 지위 때문에 취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소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특히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반대하는 시위를 지지한 시장의 공개적인 발언을 근거로 종교의 자유 행사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이 있었다고 판결했다(*The Religious Denomination of Jehovah's Witnesses in Bulgaria v. Bulgaria*).

135. 반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9조 위반이 없었다고 판결했다(또는 청구가 근거없음이 명백하다고 선언했다).

-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정교회 신도에게 도로확장 공사를 위해 그 아버지의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정교회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가족들의 묘지를 이장했으며, 청구인이 문의했던 그리스 정교회 당국은 청구인의 부탁에 관여하기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청구인은 무덤을 이장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자신의 신념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것인지 또는 해당 의무의 이행이 어떻게 무덤을 원래대로 두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Daratsakis v. Greece*, 위원회 결정).
- 지방도시계획 당국이 크리슈나의식국제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 Ltd.*)에 대하여 협회가 구입한 저택을 구입 당시 허가받은 용도(기숙사형 신학대학 및 하루에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장소)로만 사용할 것을 통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한 것. 실제로, 이 저택을 사실상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훨씬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이 드나들게 되어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 협회의 종교의 자유 행사가 제한되었음을 인정했지만, 이 제한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구인 협회가 가진 특수한 종교적 이익이 국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했다(*ISKC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 비엔나의 세르비아정교회가 베오그라드의 총대주교청과 종파 분열 상황에 이르자, 관련 법률에 따라 비엔나 세르비아정교회는 세속법상 권한이 정지되었고, 오스트리아 법원은 비엔나 세르비아정교회의 재산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인을 임명하였는데, 그

재산관리인은 베오그라드의 총대주교가 임명한 사제 2명 및 관할 주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청구인(비엔나 세르비아정교회)이 제9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제한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해당 목적에 비례하는 제한이었다. 문제된 조치는 범위가 한정적이었고, 종파 분리와 관련된 대립이 이어지는 한 임차 계약이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Serbisch-griechisch-orientalische Kirchengemeinde zum Heiligen Sava in Wien v. Austria*, 위원회 결정.)

- 독일 정부는 종교단체가 미개발 보호구역을 묘지로 사용하고자 제출한 신청을 거부하였다. 재판소는 문제된 제한이 도시계획, 환경보전 및 공공업무시설 설치를 규율하는 법적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의 미개발 보호구역에는 다른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으므로 그 제한은 제9조제2항에 부합한다고 하였다(*Johannische Kirche and Peters v. Germany* (dec.)).
- 그리스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진정한 정교회 교인" (Greek Old Calendarists, 또는 "*Paleoimerologites*")을 위한 기도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방개발계획을 수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하였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신도들이 적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정할 "사회적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Manoussakis and Others v. Greece*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재판소는 이 사건은 표면상 중립적인 일반적인 공간계획 법령의 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다. 지방개발계획에 대한 수정은 "공익을 위하여" 건물을 건축할 때만 허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대법원이 적용한 양적 기준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합리적인 공간계획에 대한 공익보다 한 사람의 종교적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반면에, 이웃 마을에는 그 지역의 "진정한 정교회 교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의 객관적인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주어진 판단재량 안에서 행동하였다(*Vergos v. Greece*).
- 터키 개신교 신도였던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개인 아파트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면서, 터키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 특히 건물의 모든 공동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다. 재판소는 *Manoussakis and Others v. Greece*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절차적 요건은 어떤 종교에 대한 승인이나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허가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및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또한 국가기관이 무엇보다도 청구인들에게 절차적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문제된 절차적 요건과 종교의 자유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한은 정당하고 비례적인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관련 법령이 청구인들에 대해 협약 제14조에 위반되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하였다(*Tanyar and Others v. Turkey* (dec.)).

- 이슬람교 신도인 청구인들은 사적(史蹟)으로 등재된 옛 모스크 건물에서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강제퇴거되었는데, 청구인들은 그 건물을 10년 넘게 사용했음에도 그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는 않았었다(*Manoussakis and Others v. Greece* 사건과 대조). 특히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다른 곳에서 마땅한 예배장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Juma Mosque Congregation and Others v. Azerbaijan* (dec.)).

136. 또한 재판소는 헌법개정을 통해 스위스연방헌법에 추가된 모스크침탑 건축금지에 대한 개인이 협약 제14조 및 제9조에 따라 제기한 청구를 심사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그 금지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고, 침탑이 있는 모스크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므로 협약위반으로 주장하는 조치의 "피해자"로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Ouardiri v. Switzerland* (dec.)).

137. 교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1923년 로잔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터키 소재 가톨릭시설인 "인스티튜트 드 프레터 프랑세(*Institut de prêtres français*)"의 부동산소유권증서가 무효가 되고, 해당 부동산이 재무부 명의로 등록됨에 따라 이 시설이 중요한 재원을 잃게 되었고 종교 관련 활동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교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청구에 대해, 위원회는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였다(*Institut de prêtres français and Others v. Turkey* (dec.)). 이후 이 사건은 재판소의 심리 중 화해를 통해 종결되었다(*Institut de prêtres français and Others v. Turkey* (우호적 합의)).

## C. 종교와 이민의 자유

### 1. 외국인의 체류 및 고용과 종교의 자유

138. 협약은 국민이 아닌 자가 해당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회원국은 국민이 아닌 자의 입국, 체류 및 추방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Perry v. Latvia*, § 51). 이에 따라, 협약 제9조는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방명령이 제9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억압하고 청구인과 그 신도들이 종교나 철학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제9조가 보장하는 권리들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Omkananda and Divine Light Zentrum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39.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9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

-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청구인은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국가기관은 이 신청에 대해서는 연장불가 결정을 내렸고, 뒤이어 청구인이 공개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비공식적인 설명이 첨부된 다른 유형의 허가를 발급했는데, 그러한 제한은 국내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Perry v. Latvia*).
- 문선명 목사의 통일교에서 활동 중인 미국 국적의 청구인은 러시아에 수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했고 미성년자 아들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국이 거부되었고,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금지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청구인이 러시아에서 수행한 종교활동 때문임이 명백했다 피청구국 정부는 청구인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을 제시했으나, 이는 협약 제9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이며 피청구국은 이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Nolan and K. v. Russia*).

140. 재판소는 또한 다음 사건에 대해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으나, 제9조 위반으로 판결하지는 않았다.

- 불가리아의 이슬람율법 최고지도자(Grand Mufti)가 공인한 이슬람교의 설교자이면서 교사인 팔레스타인 출신의 청구인은 그의 종교활동이 이슬람 원리주의 경향을 띠고 있고 극단주의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s)"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당한 후 불가리아 영토에서 추방되었다(*Al-Nashif v. Bulgaria* (dec.)). 재판소는 협약 제8조(가족생활 존중권)다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Al-Nashif v. Bulgaria*, §§ 139-142).
- 오스트리아 국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부는 불가리아에서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류허가가 취소되었다(*Lotter v. Bulgaria* (dec.)). 이 사건은 재판소의 심리 중 화해를 통해 종결되었다(*Lotter and Lotter v. Bulgaria* (우호적 합의)).

141. 반면, 인근 지역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인도의 승려이자 철학자의 추방명령에 관한 청구에 대해 위원회는 청구가 근거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결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그 사이 여러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로 징역 14년 및 15년 간 입국금지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추방명령은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Omkananda and Divine Light Zentrum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42. 또한, 협약 제9조는 외국인이 회원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는 고용주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Öz v. Germany*, 위원회 결정; *Perry v. Latvia*; *El Majjaoui and Stichting Touba Moskee v. the Netherlands* (심리종료결정) [GC], § 32). 이 원칙에 따라 위원회는 터키 국적의 이슬람 성직자이자 종교지도자(이맘, imam)가 현지 이슬람 단체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 자신을 초청했던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이슬람 종교단체에서 (이맘 자격으로) 계속 일하기 위해 신청한 임시체류허가 갱신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청구를 각하했다(*Öz v. Germany*, 위원회 결정).

143. 최근 재판소는, 모로코 국적의 청구인이 네덜란드의 한 종교재단에서 이맘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종교재단이 국내 및 유럽 노동시장에서 청구인을 대신할 사람을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네덜란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맘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국가기관이 발급을 거부했다며 제기한 청구에서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El Majjaoui and Stichting Touba Moskee v. the Netherlands* (dec.)). 그러나 이 종교재단의 새로운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결국 네덜란드에서 임시취업허가 및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심판대상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보고 협약 제37조제1항b)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사건목록에서 제외하는 심리종료결정을 하였다(*El Majaoui and Stichting Touba Moskee v. the Netherlands* (심리종료결정, striking out) [GC], § 32).

144. 오스트리아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의 면제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만약 면제혜택을 받았더라면 청구인인 여호와의 증인이 오스트리아에서 고용하고자 초청한 필리핀 국적 부부 전도사는 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재판소는 이 결정이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4조(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실, 국내법상 이러한 면제는 "공인된 종교협회"에만 적용되었고 청구인 여호와의 증인처럼 "등록된" 종교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Jehovas Zeugen in Österreich v. Austria*).

## 2.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가로의 추방

145. 회원국은 종교의 자유 행사를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제3국으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가? 그것이 회원국의 관할 밖에 있는 국가에서 권리가 침해될 진정한 위험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면, 회원국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재판소는 제2조(생명권)와 제3조(고문의 금지)를 위반할 위험이 있을 경우 국가의 간접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소의 판례는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두 조항이 가진 근본적인 중요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고문금지의 절대적 성격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 성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요약한 것이라는 사실에도 기초하고 있다. 재판소는 위험에 처해 겪는 고통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이후 재판소는 일정한 조건에서 이 원칙을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5조(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의 보장 사항에까지 확대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순전히 실용적인 근거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회원국에 대해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대해 완전하고 실효적인 조건을 갖춘 국가로 외국인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제9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민주사회의 토대 중 하나"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적 이상과 법치주의, 인권을 위해 전념하는 회원국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판례에 따르면, 주로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박해를 받게 되거나, 사형 또는 심히 부당한 처우를 받을 실제적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그리고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소속을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노골적으로 거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제공된다. 개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협약에 규정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9조 자체로부터는 매우 제한적인 도움만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서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의무를 실질적으로 회원국들에게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어떤 종교를 금지하되 어떠한 내용의 박해, 기소, 자유 박탈 또는 학대 조치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그와 같이 금지된 종교의 신도들이

회원국의 영토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그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회원국에게 있다고 협약을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Z. and T. v. the United Kingdom* (dec.)).

1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청구인이 수용국에서 협약 제9조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의 위험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을 추방하는 국가에게 협약 제9조에 의한 책임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소에 따르면, 제9조를 명백히 위반하면서도 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처우와는 무관한 사건이란 생각하기 어렵다(*Z. and T. v. the United Kingdom* (dec.)).
147.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재판소는 파키스탄 국적의 두 기독교인이 파키스탄으로 추방될 경우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기한 청구에 대해 청구가 근거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충분한 근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했거나 제2조나 제3조가 위반될 위험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두 청구인 중 누구도 물리적인 공격을 받거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방해받지 않았다. 재판소는 파키스탄의 전반적인 상황을 심사한 후, 최근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지만, 파키스탄의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기독교도인 의회 의원들도 있으며, 행정부와 사법부는 교회와 학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도들을 공격한 자들을 체포, 기소,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9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볼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라거나,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위협에 처해 있다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위협에 처해 있는 취약한 집단 또는 위협을 받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Z. and T. v. the United Kingdom* (dec.); 또한 *Razaghi v. Sweden* (dec.) 참조).

### III. 종교의 자유 수호자로서 국가의 의무

#### A. 소극적 의무: 종교단체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 1. 회원국에서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

148. 국가와 종교 공동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유럽 차원의 단일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유럽에는 국가와 종교 공동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다양한 헌법적 모델이 존재한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 138). 현행 제도들로는 a) 국교회 제도, b) 국가와 모든 종교단체의 완전한 분리, c) 협정 유형의 관계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협정 유형의 관계를 채택한 국가가 대부분이다. 재판소는 세 가지 유형의 제도가 모두 협약 제9조에 부합하며, 피청구국에 대하여 다양한 종교단체들과 특정한 형태로 협력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83).
149. 일부 유럽 국가는 헌법상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국교회**(또는 공식 교회)를 두고 있다. 국교회 제도 자체가 협약 제9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협약이 작성되고 앞서 언급한 국가들이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했을 때 이미 이들 국가에서는 국교회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로 인해,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과 결부된 신앙이나 교회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Members of the Gi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 132).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 온 국교회의 독립과 통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Orthodox Ohrid Archdiocese (Greek-Orthodox Ohrid Archdiocese of the Peć Patriarchy)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118). 이러한 국교회의 법인격은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Holy Synod of the Bulgarian Orthodox Church (Metropolitan Inokentiy) and Others v. Bulgaria*, § 157). 어떤 경우이든 전통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재량에 달린 문제이다. 그 밖에도, 재판소는 유럽국가의 다양성, 특히 유럽이 문화 및 역사적 발전의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전통을 이유로 협약과 그 의정서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Lautsi and Others v. Italy* [GC], § 68). 제9조 요건을 충족하려면 국교회 제도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그 누구에게도 국교회에 입회할 것을 강제하거나 탈퇴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Ásatrúarfélagið v. Iceland* (dec.), § 27; 또한 *Darby v. Sweden*, 위원회 보고서, § 45 참조).
150. 나아가, 국교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라 하더라도 국교회 자신이 책임을 지는 영역에 대해 내린 결정은 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핀란드 루터교-복음주의교회(Finnish Lutheran-Evangelical Church)의 예배식을 금지하고 핀란드어로 번역된 스웨덴 예배식을 사용하도록 한 스웨덴 국교회(the Church of Sweden, 당시의 스웨덴 국교)의 총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스웨덴 국교회 소속의



핀란드어 사용 교구가 제기한 청구를 심사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교회와 그 교구가 "비정부 조직"이며, 교회 총회의 결정이 협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청구인 교구가 스웨덴 국교회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가 교구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Finska Församlingen i Stockholm and Hautaniemi v. Sweden*, 위원회 결정).

151.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와 모든 종교 공동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구조 또한 협약의 근본적인 가치와 양립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Leyla Şahin v. Turkey* [GC], § 108; *Dogru v. France*, § 72). 세속주의 원칙과 중립성 원칙은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 중 하나, 즉 다원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종교적 신념에 대해 공평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의미한다(*Ebrahimian v. France*, § 67).
152. 마지막으로, 헌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차등적인 대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고 그것을 원하는 다른 교회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국가는 특정 교회(또는 여러 교회)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교회에 특별한 (세금 또는 기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Alujer Fernández and Caballero García v. Spain* (dec.); *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 85). 국가는 법률을 통해 종교단체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등록의무나 신고요건을 면제함으로써 종교단체가 다른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제도를 적용받도록 할 수 있다(*Holy Synod of the Bulgarian Orthodox Church (Metropolitan Inokentiy) and Others v. Bulgaria*). 실제로 국가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특정한 제도를 적용받는 자격을 일부 종파에만 한정할 수도 있다. 국가는 또한 일정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서로 다른 범주의 종교 공동체를 구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협력할 수도 있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75). 하지만, 국가가 종교단체에 대해 특수한 지위를 가진 법인격을 부여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는 이러한 지위를 원하는 모든 종교단체가 해당 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확립된 기준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75). 종교의 자유는 종교단체나 신도에게 기존의 다른 단체와는 다른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종교단체에 특수한 지위를 주고자 할 경우, 이러한 지위는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여되어야 한다(*Cumhuriyetçi Eğitim ve Kültür Merkezi Vakfı v. Turkey*, § 45).
153. 국가는 또한 **특정한 공적 업무와 기능을 하나 이상의 종교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기능을 위임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국가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Bruno v. Sweden* (dec.); *Lundberg v. Sweden* (dec.)).
154. 끝으로, 종교와 국가 간의 관계를 수립하는 이 어려운 영역에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재량의 이익을 누린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 84). 하지만, 국가의 판단재량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재판소는 때때로 피청구국이 다양한 종교와의 협력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판단재량을 일탈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32).

## 2. 종교단체의 공인, 등록 및 해산

155. 국가의 법령에 결사의 자유가 어떠한 형태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기관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상황을 보여준다. 시민사회가 건전하게 기능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서로를 통합하고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단체에 소속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대한 참여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국가의 제도들과 시민을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는 단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권한은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Orthodox Ohrid Archdiocese (Greek-Orthodox Ohrid Archdiocese of the Peć Patriarchy)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94-96).
156. 종교의 자유의 집합적 측면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제한은 기존 종교단체의 **해산**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한 이유를 제시하여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Biblical Centre of the Chuvash Republic v. Russia*, § 54).
157.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협약 제1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 검사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지부에 대해 해산 및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 법원이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들(해당 지부가 신도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신도 가족을 압박했다는 의혹, 신도의 사생활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 의혹,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부모의 친권을 침해한 의혹, "세뇌"와 "심리적 통제" 의혹, 자살 또는 수혈금지를 비롯해 치료거부를 선동한 의혹, 미성년자를 교단에 끌어들이려고 한 의혹, 군 복무 거부, 국가 상징에 대한 존중 표현 거부, 국민 의례 거부 등을 선동한 의혹 등)을 검토한 후, 재판소는 이러한 모든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법원이 언급한 행위가 제9조에 따라 보호받는 개인적 자율성의 틀에서 신도가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한 종교의 자유를 매우 정상적인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종교적 표명은 전 세계의 주요한 "전통적인" 종교들의 행사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단식, 금욕, 사생활을 구속하는 성격의 계율 등). 그러므로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은, 특히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령이 극도로 엄격하여 종교단체의 비행에 대해 보다 덜 극단적인 제재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명백히 비례하지 않는 것이었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러시아 법원은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서대학(과정을 마쳤을 때 학업수료증 또는 "학위" 수여)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개신교(펜테코스트파) 성서센터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해산 사유는 첫째, 성서대학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교한 점, 둘째, 해산 명령을 받은 두 기관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점이었다. 재판소는 정부가 청구인 단체에 대해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사전경고도 통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법원은 과거 다른 몇몇 사건에서 이 사건의 주일학교와 같은 교육센터가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 단체는 이러한 러시아 법원의 모순된 판례로 인해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Biblical Centre of the Chuvash Republic v. Russia*).

158. 해산과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제한도 있다. 종교 사회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조직적인 단체의 형태를 취해 왔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협약 제11조에 비추어 제9조를 해석할 때, 종교 영역에서의 집단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설립할 능력이 종교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이며, 법인을 설립할 수 없을 경우 종교의 자유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종교 공동체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종교 공동체 뿐 아니라 그 구성원에 대해서 제9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외부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05; *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 62). 실제로 재판소는 제11조에 따라 상호 공통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능력이 결사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이며, 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국가가 여러 개인으로 구성된 종교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해 법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국가가 어떤 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경우, 그 거부결정은 해당 단체 자체뿐 아니라 그 단체의 대표, 설립자, 개별 구성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imlya and Others v. Russia*, § 84). 제9조에 따라서도 똑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Genov v. Bulgaria*, § 35).
159. 또한, 여러 명의 신도들이 국가의 종교단체 등록거부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그 단체의 모든 개별 구성원은 협약 제34조에서 의미하는 위반 행위의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신청을 제출한 신청자에게만 피해자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Metodiev and Others v. Bulgaria*, § 24).
160. 종교단체로 공인받는 것 자체로 관련 당사자에게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 경우, 공인받지 않은 종교단체의 활동을 용인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용인이 국가기관의 공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29;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27). 법률이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일련의 권리들을 법인격을 보유한 등록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면,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의 운영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Svyato-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 122).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권리들에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은행과 거래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종교 공동체와 그 구성원 및 자산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예배장소를 정하고, 공개 장소에서 종교 행사를 열고, 종교 문헌을 제작, 획득, 배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 교류 및 회의를 위해 연락할 수 있는 권리들이 포함된다(*Kimlya and Others v. Russia*, §§ 85-86; *Genov v.*

*Bulgaria*, § 37). 더욱이, 자신의 종교를 표명할 권리, 특히 교단을 위해 집단적으로 종교를 표명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교단과 그 구성원 및 재산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9조는 제11조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소에 접근할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제1항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Svyato-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 152; *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 63).

161. 국내법의 규정상 단체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령에 따라 종교단체가 비종교단체로 등록되거나 인정됨으로써 종교단체가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위 단락에서 제시된 고려사항들은 모두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Genov v. Bulgaria*, § 37; *Metodiev and Others v. Bulgaria*, § 36).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가 법인격이 없더라도 보조적인 단체를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흠결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를 결정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 67;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30).
162. 종교단체에 대한 공인 및 등록과 관련하여, 국가는 종교적인 운동이나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목적을 내세우면서 전체 주민에게 유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다. 종교단체의 활동강령이 공언한 것과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종교단체의 활동강령이 해당 단체의 행동 및 그 단체가 옹호하는 입장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05 및 125). 국가는 또한 일반 국민이 다양한 종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 간의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단체가 내부 규칙에 추구하는 신앙과 종교의식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Metodiev and Others v. Bulgaria*, §§ 40 및 45). 이에 따라, 해당 종교의 근본적인 계율에 대한 설명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종교단체 등록을 거부한 것은 그 종교단체가 민주사회에 위협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제9조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근본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Cârmuirea Spirituală a Musulmanilor din Republica Moldova v. Moldova* (dec.); *Church of Scientology of Moscow v. Russia*, § 93; *Lajd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dec.)). 그러나 종교단체의 목적과 활동이 법령의 규정들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심사할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국가는 이 권한을 협약에 따른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재판소와 위원회의 권한 하에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100; *Orthodox Ohrid Archdiocese (Greek-Orthodox Ohrid Archdiocese of the Peć Patriarchy)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94).
163. 관련 기관은 등록 또는 승인 신청을 심사하거나 앞서 언급한 대로 법령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는 데 걸리는 대기기간을 합리적인 기간 내로 짧게 유지해야 한다(*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 79).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 체계에서 다른 단체들에 비해 특권을 가지는 종교단체를 인정하는 경우(예컨대, 법인 지위의 보유), 국가는 예외적으로 더 긴 대기기간과 검증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신생 종교집단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집단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졌고 해당 국가에서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관할 기관에 잘 알려져 있는 종교집단에 대해 장기간 심사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 97-98).

164. 또한 국가가 종교단체의 명칭에 관하여, 기존의 단체와 명백히 구별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명칭이 동일하거나 지나치게 비슷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히 침해할 위험이 있다(*Orthodox Ohrid Archdiocese (Greek-Orthodox Ohrid Archdiocese of the Peć Patriarchy)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111; *Bektashi Community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71). 따라서, 신설된 법인에 대하여 일반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다른 유사한 단체와 구별할 수 있는 명칭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가 자유롭게 명칭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Genov v. Bulgaria*, § 43).
165.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협약 제9조 위반으로(단독으로 또는 제14조에 비추어) 판결했다.
- 부쿠레슈티 총대주교구(루마니아 정교회) 관할하에 운영되는 자치 정교회인 베사라비아 메트로폴리탄 교회(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가 법적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몰도바 정부는 이미 공인한 모스크바 총대주교구(러시아 정교회) 관할하에 운영되는 몰도바 메트로폴리탄 교회(Metropolitan Church of Moldova)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 청구인 교회는 법적 승인을 얻지 못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소속 성직자들은 종교의식을 이끌 수 없었으며, 신도들은 종교활동을 위해 모일 수 없었다. 그 밖에도, 청구인 교회는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여 재산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위협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다. 청구인 교회가 정교회에서 "분리된 교파"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승인을 거부한 몰도바 정부는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 밖에, 청구인 교회가 국가의 영토 보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몰도바 정부의 주장은 명백히 근거없는 것이었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위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이미 몰도바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베사라비아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한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한이라고 판결했다(*Fusu Arcadie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 법원에서 청구인 교회를 등록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이 청구인 교회의 등록을 거부한 것.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한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한이라고 판결했다(*Biserica Adevărat Ortodoxă din Moldova and Others v. Moldova*).

- 불가리아 정부가 신앙과 종교의식을 설명하는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미 공인된 이슬람교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라는 명칭의 새로운 종교단체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 이 사건에서 불가리아 법률은 신앙과 종교의식을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불가리아 정부는 기존 교단과 동일한 교리를 가진 새로운 종교단체의 등록을 모두 거부할 수 있었다(*Metodiev and Others v. Bulgaria*).
-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승인을 위한 신청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정부가 최종적으로 "등록된" 종교단체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기까지 20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 재판소는 또한 오스트리아 정부가 청구인 단체에 대해 오스트리아에서 10년 이상 "등록된(registered)" 단체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국내법상 여러 특권을 제공하는 "공인된 종교단체(recognized religious society)"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가 제14조에 반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청구국 정부는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여호와의 증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10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었다(*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 사이언톨로지 교회(*Church of Scientology*)의 지부 두 곳에서 제출한 "종교단체" 등록신청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법인격 없는) "종교 집단(religious group)"으로 15년 이상 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제1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피청구국 정부가 그 제한의 근거가 된 우월적인 사회적 필요나 긴 대기기간을 정당화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단체 또는 개인 자격의) 청구인들이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 이외의 다른 목적을 수행했거나 수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아예 없었다. 등록거부의 이유는 해당 종교단체의 운영과는 무관한 전적으로 형식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청구인에게 인정된 유일한 "위법행위"는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활동하지 않았으면서도 "종교적 성격"의 단체로 등록을 신청하려 했다는 것뿐이었다(*Kimlya and Others v. Russia*).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는,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Kimlya and Others v. Russia* 사건과는 달리 재판소는 그 제한이 "법에 규정"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고, 따라서 비례성 문제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Church of Scientology of St Petersburg and Others v. Russia*).
- 청구인인 일부 개혁주의 교회(*Reformist Church*)가 국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가르칠 수 있고 교단 소속 목사의 주례로 치러지는 결혼이 민사적 효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공익 부문에서의 (종교와 국가 간) 협력 협정을 크로아티아 정부와 체결하고자 했으나 크로아티아 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협약체결을 거부한 것. 이 사건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협정 체결에 관한 정부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협약체결의 거부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몇 다른 종교 공동체는 수적 기준을 면제받은 바 있으며, 역사적

기준("유럽 문화권의 역사적 종교 공동체")의 경우, 크로아티아 정부는 개신교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청구인 교회들이 역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협약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166. 재판소는 또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1조 위반: 독립을 선언한 마케도니아 정교회와 달리, 마케도니아 정교회의 한 신도 단체는 세르비아 정교회와 교회법에 따라 연합을 맺었다. 청구인 단체는 세르비아 교회의 관할 교구에 속한다는 설명과 함께 약간 다른 명칭으로 두 건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등록신청서 모두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관할 기관은 또한 청구인 단체가 외국 교회나 외국에 의해 설립되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신청한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신청서에 기재된 "오흐리드 대교구(Ohrid Archdiocese)"라는 명칭은 "역사적, 종교적, 도덕적, 실질적 권리"를 가진 "마케도니아 정교회-오흐리드 대교구(Macedonian Orthodox-Ohrid Archdiocese)"와 너무 유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소는 청구인 단체의 등록 거부 사유에 수많은 결함이 있으며 그 사유가 적절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 단체가 외국 교회나 외국에 의해 설립되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또한 거부 사유로 적절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설립자는 피청구국의 국민이었고, 관련 법령이 해외에 소재한 종교단체 본부에 소속된 종교단체의 등록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청구인 단체가 신청한 명칭이 다른 교회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제한은 지나친 것이었다(정교 오흐리드 대교구(*Orthodox Ohrid Archdiocese (Greek- Orthodox Ohrid Archdiocese of the Peć Patriarchy)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제11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 위반: 불가리아 정부는 *하레 크리슈나(Hare Krishna)* 종교운동의 추종자로 구성된 새로운 협회가 제출한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협회의 신앙과 의식이 이미 등록된 다른 협회의 신앙 및 의식과 다르지 않으며, 내부 규칙과 선언된 목적이 이미 등록된 다른 협회와 동일하고, 명칭이 너무 유사하며, 법령에 따라 같은 마을이나 도시에 두 종교단체가 등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 밖에도, 새로운 협회가 "상위 단체"(이미 등록된 협회)의 지부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상위 단체가 정식으로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소는 명칭의 유사성이 최종적으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다른 근거들의 경우 문제된 제한을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Genov v. Bulgaria*).

167. 반면, 재판소는 체코와 불가리아의 문선명 통일교회 신도 단체 2곳이 각각 제기한 청구에 대해 근거없음이 명백하다며 부적법하다고 선언했다.

- 재판소가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1조에 대해 심사한 첫 번째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체코 정부가 두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단체를 법인격을 가진 교회로 등록하기를 거부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는 해당 등록을 거부한 이유가 첫째, 청구인들이 해당 단체의 교리를 설명하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했으며, 둘째, "교회의 교리를 수용한 사람들"의 서명을 받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제출된 서명들을 검증한 결과, 그 서명들 중 상당수가 그 교회와 신학적 유대감을 가진 신자들이 아니라 단지 그 종교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체코 정부의 법 해석이 합리적이며 자의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인정되지 않은 서명자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서명자가 교회 등록에 필요한 법률 요건인 1만 명에 미달하게 되어 청구인들은 등록신청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소는 이 수치상 기준이 외견상 지나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그 사이에 새 법령이 제정되어 서명자 요건이 300명으로 축소되었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새로운 교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제한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Lajd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dec.)).
- 제9조에 따라 재판소가 심사한 두 번째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불가리아 정부가 자신들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암묵적으로 거부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등록신청이 공식적으로 거부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청구인들은 불가리아 정부로부터 기존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고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았으나,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소는 사건 정황상 불가리아 정부가 지연 전술이나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Boychev and Others v. Bulgaria*).

168. 국가가 과거 인정한 종교단체의 재등록을 거부한 경우(법인격을 박탈하거나 낮은 법적 지위로 격하), 재판소는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1조(결사의 자유)에 따라 사건을 심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의 사건들에서 제11조가 위반되었다고 판결했다.

- 러시아 정부가 구세군(Salvation Army) 지부의 재등록을 거부했고, 그 결과 구세군 지부의 법인격이 박탈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재등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들("외국 기관 소속"이라는 점, 종교적 소속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청구인이 "준군사적" 성격의 단체라는 점, 청구인이 러시아 법령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 재판소는 이러한 사유들이 국내법상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았다(*Moscow Branch of the Salvation Army v. Russia*, §§ 74-75).
- 러시아 정부는 사이언톨로지 교회 지부가 제출한 재등록신청을 거부하면서 서로 모순되고 자의적인 이유로(누락된 문서가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거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본이 아닌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 최소 11건의 재등록신청을 거부했다(*Church of Scientology of Moscow v. Russia*).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 지부의



재등록신청을 거부한 결정이 제1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마케도니아 정부는 15년 동안 종교단체 지위를 인정받았던 베크타시 공동체(수피교단)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따라 종교단체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순전히 형식적인 이유로 거부했으며, 이후 신규등록신청에 대해서도 단체의 명칭과 교리의 근원이 이미 등록된 다른 종교단체와 동일하므로 신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Bektashi Community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헝가리에서 과거 "교회"로 인정되었던 일부 종교단체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권리와 특권의 측면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는 "단체" 지위로 격하되었다(*Magyar Keresztény Mennonita Egyház and Others v. Hungary*).

169. 협약 제9조제1항이 회원국들로 하여금 **종교혼**(*religious marriage*)에 대해 민법상 혼인과 동등한 지위와 법적 결과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X. v. Germany*, 1974년 12월 18일 위원회 결정; *Kha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Spetz and Others v. Sweden*, 위원회 결정; *Serif v. Greece*, § 50; *Şerife Yiğit v. Turkey* [GC], § 102). 또한, 종교혼의 양식은 전적으로 각 종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제9조는 종교혼 양식을 다루지 않는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 여부와 그 범위는 각 종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다(*Parry v. the United Kingdom* (dec.)). 국가는 종교혼에서 사용되는 결혼예고(*banns*)의 공고를 민법에서도 인정할 의무는 없으며, 고용과 관련한 문제에서 종교혼에서의 결혼예고 공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제9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Von Pelser v. Italy*, 위원회 결정).

170. 한 벨기에 국민이 세금계산 목적상 배우자의 소득을 결합하는 벨기에 제도가 기혼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제기한 청구에 대해 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부부가 성스러운 예식에 따라 종교혼을 올리고 함께 살 경우 결혼과 관련된 불리한 세금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직업적인 면에서든 도덕적인 면에서든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우자에 대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간과한 채 청구인처럼 소득세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어 부부의 상황을 동거커플과 비교하는 것은 작위적이라면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위보대 벨기에(*Hubaux v. Belgium*, 위원회 결정).

171. 국가는 국내법 체계에 따라 **종교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Serif v. Greece*, § 50).

172. 뿐만 아니라, "선교"를 통해 종교를 표명할 권리가 국가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허용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다만, 국가가 특정한 종교에 대해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기로 할 경우, 그 특별한 권리와 혜택은 제9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므로, 협약 제14조에 포함된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ibid.*, § 58).

173. 그 밖에도, 국내법에 따라 특정 종파의 성직자가 민법상 법적 효력을 갖는 결혼을 주례하거나 일정한 민법상 분쟁(예컨대, 가족 및 상속 문제)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성직자의 행위로 법적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사기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Serif v. Greece*, § 50).

### 3. 종교 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경멸적 용어 사용

174. 공식 문서에서 종교 공동체에 대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9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의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Leela Förderkreis e.V. and Others v. Germany*, § 84).

17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청구들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 독일 관할 법원은 청구인 협회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이른바 신생 종파(youth sect) 및 정신병자집단(psycho-groups)"이라는 제목의 정부 간행물에서 자신의 협회를 언급한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제출한 신청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문제의 간행물이 청구인 협회가 종교를 표명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청구인 협회의 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간행물은 단순히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법원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 의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청구인 협회의 일부 활동들로 인해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청구인 협회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정당화되었다(*Universelles Leben e.V. v. Germany*, 위원회 결정).
- 바이에른 교육부(Bavarian Ministry of Education)는 학생들에게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교육 잡지에 기사를 게재했다. 독일 법원은 해당 기사의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문제의 기사가 청구인들과 같은 사이언톨로지 운동의 개별 추종자가 아닌 전 세계 차원에서 운영되는 종교 운동인 사이언톨로지 종교의 전반적인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았다. 청구인들이 이웃들과 지역 언론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과 문제의 기사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어떻게 보더라도 이 기사가 제9조에 따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간접적이고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청구가 협약상의 당사자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Keller v. Germany*, 위원회 결정).

176. 바그완 슈리 라즈니쉬(오쇼)의 가르침에 따르는 청구인 단체들은 독일연방정부와 공무원들이 오쇼 종교운동의 가르침을 가리켜 "종파(sect)" "신생 종파(youth sect)", "정신병자 종파(psycho-sect)", "사이비종교(pseudo-religion)" "파괴적 종교운동(destructive religious movement)", "추종자를 조종하는 종교(movement manipulating its members)" 등의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에 청구하였는데, 재판소는 제9조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가 문제가 된 용어들 대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사이비종교"와 "파괴적 종교 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추종자를 조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제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가정한 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및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목적에 비례했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익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행사할 때 단지 연방정부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현상, 즉 여러 신생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이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밖에 없었다. 연방정부의 유일한 목표는 필요한 경우 국민들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채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오로지 무지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행위는 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청구인 단체들의 권리행사를 전혀 막지 않았다. 게다가, 독일 정부는 전문가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결국 문제가 된 용어의 사용을 중단했다(*Leela Förderkreis e.V. and Others v. Germany*).

177. 반면, 재판소는 오쇼 종교운동을 따라 목상하던 여성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뒤 급성정신병 진단을 받고 52일 동안 수용되었으며, 이 기간에 병원 의료진이 목상과 오쇼 운동을 폄하하면서 그 여성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신념을 "교정"하려고 했던 사건에서 제9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을 위에서 언급한 *Leela Förderkreis e.V. and Others* 사건과 명시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진단 및 병원수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료진에 대한 청구인의 높은 의존성과 취약성, 무력함을 강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이는 "법이 정하는" 제한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Mockutė v. Lithuania*, §§ 107-131).

178. 프랑스 정부가 "가족과 개인의 수호를 위한 전국연합"(UNADFI)으로 알려진 단체에 공익단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 단체(UNADFI)는 "파괴적 종파"가 저지른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맞서 싸운다"는 목표를 추구했으며, 청구인들은 이 단체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공공연하게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국가가 법에 따라 공익단체 지위를 부여한 단체의 모든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가 공익단체 지위를 부여한 것은 공권력의 이양과는 무관하고, 국가가 공권력을 이양한 경우에도 협약은 국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 청구인들은 위 단체(UNADFI)의 행동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내 관할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신청할 사안에 해당했다. 결국 재판소는, 청구인들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이들의 청구가 당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Gluchowski and Others v. France* (dec.)).

#### 4. 재정지원과 조세

179. 교회나 종교 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 분야에는 유럽 차원의 공통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 문제는 개별 국가의 역사와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 영역에서 특히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Alujer Fernández and Caballero Garcia v. Spain* (dec.))

180.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구실로 조세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요구하기 위해 협약 제9조를 원용할 수 없다(*Association Sivananda de Yoga Vedanta v. France*, 위원회 결정).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는 교회나 그 구성원이 조세에 있어서 다른 납세자들과 다른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Alujer Fernández and Caballero García v. Spain* (dec.)). 또한, 제9조는 예배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Iglesia Bautista "El Salvador" and Ortega Moratilla v. Spain*, 위원회 결정).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경제, 재무 또는 재정상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입증될 경우, 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일정한 상황에서 종교용 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그 건물에 대한 조세 상황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the United Kingdom*, § 30; *Cumhuriyetçi Eğitim ve Kültür Merkezi Vakfı v. Turkey*, § 41).
181.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9조가 위반되었다고 판결했다.

- 청구인인 프랑스 여호와의 증인 협회(*Association des Témoins de Jéhovah de France*)가 수령한 개인 기부금에 대해 세금과 체납금 이자 및 과징금이 부과되어 청구인 협회는 단체에 대한 표준세제를 적용받게 되었으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다른 단체들이 받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문제된 조치는 청구인 협회의 재정수입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모든 개인 기부금에 적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협회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고, 따라서 청구인 협회가 신도의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게 했다. 재판소는 일반 조세법 조항의 매우 모호한 문구를 적용했으므로 이 사건의 제한이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Association Les Témoins de Jéhovah v. France*; 또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 매우 유사한 사건에 관해서는 *Église Évangélique Missionnaire and Salaûn v. France* 참조).
- 만다롬(Mandarom) 수도원의 사원 건립과 오움교 공동체를 위해 두 협회가 받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였다. 두 협회는 세무조정예 앞서 해당 종파가 대중적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협회들을 해산하고 매우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회에 자신들의 모든 자산을 이전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이후 관할 법원에 제소하여 자산 이전에 대해 취소판결을 받았다. 재판소는 문제된 조세부과가 해당 종교의 예배의식과 예배장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협약 제9조가 보호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소는 *Association Les Témoins de Jéhovah v. France* 사건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제9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Association Culturelle du Temple Pyramide v. France*; *Association des Chevaliers du Lotus d'Or v. France*).

182. 반면, 재판소는 위에서 본 사건들과 유사하지만, 청구인 협회가 운영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 기부금에 의존하기는 했지만, 개인 기부금에 대한 과세가 청구인 협회의 재정수입의 핵심적인 부분을 삭감하거나 그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효과는 없었던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Sukyo Mahikari France v. France* (dec.), § 20).

183.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14조(차별 금지) 위반으로 판결했다.

- 터키 법령에 따라 "공인된(recognized) 종교단체"만이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면제받으며 "등록된(registered) 종교단체"는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면제를 거부한 것(*Jehovas Zeugen in Österreich v. Austria;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터키 정부(Turkish Directorate of Religious Affairs)가 이슬람교 사원, 기독교 교회, 유대교 회당의 전기요금을 대납하는 것처럼 알레비(Alevy)교 예배당인 세메비(cemevi)가 있는 알레비 종교센터의 전기요금에 대한 대납요청을 거부한 것. 이러한 거부의 근거는 세메비를 "예배장소"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결국 알레비교를 이슬람교의 한 분파로서가 아니라 별개의 종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Cumhuriyetçi Eğitim ve Kültür Merkezi Vakfı v. Turkey*).

184. 한편, 재판소는 영국 정부가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모르몬교 예배당과 "스테이크 센터(stake centre)"의 특정 세금에 대해서는 전면 면세 조치를 허가했으나 모르몬교 사원(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현재 유효한 "추천서"를 소지한 모르몬교 신자만 입장 가능)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세 조치를 허가하지 않은 결정이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 분쟁이 제9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제9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의 차등적 대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졌다. 영국 정부의 결정은 일반 대중이 종교의식에 접근하는 것이 여러 신앙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의심을 불식하고 편견을 타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내려졌다. 그 밖에도, 영국 성공회 사원에도 모르몬교 사원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는 등 모르몬교는 다른 종교단체와 조금도 다른 대우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모르몬교 사원은 80%의 세율 감면 혜택을 받았다(*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the United Kingdom*).

185. 같은 맥락에서 재판소와 위원회는 다음 상황들과 관련된 청구들을 각하했다.

- 가톨릭교회는 면세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청구인)의 예배장소에 부과된 토지세에 대한 스페인 세무당국의 면세 거부. 위원회는 가톨릭교회가 피청구국과 교황청이 상호 의무를 부과하며 체결한 (국가와 교회 간) 협력 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차별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반면, 청구인 단체는 피청구국에 이러한 협정 체결을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는 청구인 단체에 대해서는 가톨릭교회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무를 지지 않았다(*Iglesia Bautista “El Salvador” and Ortega Moratilla v. Spain*, 위원회 결정).

- 요가 강습 활동을 한 청구인 협회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가 수업을 제공했음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 위원회는 청구인 협회가 다른 종교 공동체, 특히 국가로부터 비영리 지위를 인정받은 가톨릭교회의 종교활동과 비교해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교단체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청구인 협회는 종교단체의 지위를 인정받은 다른 단체들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비슷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Association Sivananda de Yoga Vedanta v. France*, 위원회 결정).
- 구동독(GDR) 체제의 민주사회당(Party of Democratic Socialism)이 이슬람교 단체인 청구인에게 제공한 기부금을 독일 정부와 법원이 신탁청(Trust Agency)의 관리 하에 두도록 결정하고 해당 자산을 압류한 결정. 재판소는 문제된 조치가 독일 통일과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에서 내려졌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치는 통일 전 기간 동안 구동독에서 정당 및 관련 단체에 속한 자산의 출처를 확인할 목적으로 도입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재판소는 문제의 제한이 제1의정서 제1조(재산의 보호)에 부합하는 제한으로 판단했으며, 제9조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는 문제된 조치가 청구인 단체 내부 조직이나 국가의 공식 인정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종교의 자유 행사의 제한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어쨌든 해당 조치는 법이 정하는 조치였고, 공공도덕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으며, 그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Islamische Religionsgemeinschaft in Berlin e.V. v. Germany* (dec.)).

186. 일부 유럽 국가는 국가가 징수한 후 이를 특정 종교단체에 이전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종교세**(교회세, 교파세 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종교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납부를 강제할 수 있다.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특정 종교단체에 배정할 수 있다. 국가가 종교세를 부과할 권리는 제9조제2항에 언급된 "정당한 목적"에 속하므로, 종교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협약 제9조에 따른 어떤 쟁점도 제기하지 않는다(*Wasmuth v. Germany*, § 55; *Klein and Others v. Germany*, § 89). 뿐만 아니라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제1의정서 제1조는 국가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C.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다만, 국가가 교회세 문제에 폭넓은 판단재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분야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쟁점이 제기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재판소는 교회세 제도와 관련해 국가의 권한이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서로 상충하는 이익들을 비교형량한 결과 협약 위반이 확인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Wasmuth v. Germany*, § 61).

187. 교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도에게 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제9조제1항에 열거된 활동(예배, 선교, 행사, 의식)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 신도에게 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민간 단체가 소속 회원에게 분담금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리고 제9조는 개인에게 교회의 신도 자격을 유지할 권리는 부여하면서 교회의 자율적인 규정에 따라 신도 자격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 특히 재정지원 의무는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E. and G.R. v. Austria*, 위원회 결정).

188. 일반적으로, 국가는 개인에게 교회세나 이와 유사한 교회에 대한 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해당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종교단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헌금을 내도록 할 경우 종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에 해당할 것이다(*Klein and Others v. Germany*, § 81).

189. 예를 들어, 한 남성은 아내가 속한 교회의 신도가 아님에도 세무당국이 아내의 특별 교회세를 자신의 세금 환급액에서 직접 공제한 결과 세금 환급액이 감소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세무당국의 조치가 이 남성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이 남성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교회를 위해, 아내가 납부해야 할 재정적 의무를 부담한 것이다(*Klein and Others v. Germany*, §§ 81-83). 하지만, 이 사건의 제한은 협약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부부가 자발적으로 공동세금부담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된 공제가 발생했으며, 둘째, 청구인은 공동세금부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합의통지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남편의 세금 환급액에서 부인의 교회세를 공제한 것은 국가가 부부의 미납 세금을 징수하는 비례적인 수단이었다.

190. 납세자에게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교회를 위해 교회세를 납부하도록 한 조치는 해당 교회가 비종교적인 성격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나 이러한 비종교적 역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교회세를 징수하는 상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 스웨덴에서 일하였지만 법적으로는 스웨덴 "체류자" 지위를 갖고 있던 청구인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스웨덴 국교회(당시 국교회였던 루터교)를 위해 어떤 면제사유도 허용하지 않은 채 교회세 납부의무를 부과받았다며 제기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협약 제9조 위반으로 결정했다(*Darby v. Sweden*, 위원회 보고서, §§ 57-60).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소에 회부되었고, 이후 재판소는 협약 제9조 대신 제1의정서 제1조(재산권 행사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별)에 비추어 해석한 제14조에 따라 심사하기로 한 후, 제14조 위반으로 판결했다(*Darby v. Sweden*, §§ 34-35).
- 한 스웨덴 국민은 스웨덴 국교회 신도가 아님에도 표준 교회세의 25%에 이르는 "비국교도세(dissenting tax)"를 납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판소는 청구가 근거없음이 명백하다고 선언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납부를 요구한 금원은 장례식, 노인 돌봄, 국가적 건축문화재 관리와 같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스웨덴 국교회가 수행하는 비종교적 업무에 필요한 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25%라는 비율은 자의적인 비율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 지출 가운데 비종교적 활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었다(*Bruno v. Sweden* (dec.); *Lundberg v. Sweden* (dec.)).

191.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자연인**과 관련된 사건이다. 그러나 오로지 영리활동만 추구하는 **영리회사**는 그것이 철학 관련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영리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교회세를 면제받기 위해 제9조를 원용할 수는 없다(*Company X.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Kustannus OY Vapaa Ajatteliija AB and Others v. Finland*, 위원회 결정).
192. 그러므로 국내법에서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해당 교회의 신도 자격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교회세 자체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Klein and Others v. Germany*, § 113). 다만, 국가는 개인이 교단의 신도 자격을 버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한다. 따라서 국가는 교단을 떠나는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의사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Gottesmann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93. 재판소와 위원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9조(단독으로 또는 차별금지에 대한 협약 제14조에 비추어) 위반 상황은 없다고 하였다
- 가톨릭 부부인 청구인들은 오스트리아 교회 헌금 제도에 따라 가톨릭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야 했다. 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오스트리아 교회는 해당 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었다. 위원회는 청구인들이 교회 신도 자격을 버리면 헌금 납부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는 법령을 통해 헌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방안을 명시했으므로 청구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충분한 보호책을 수립했다. 반면, 청구인들은 가톨릭교회의 신도 자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교회가 부과하는 의무는 면제받을 "권리"를 협약 제9조를 통해 주장할 수 없었다. 또한,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헌금 납부 의무를 확실히 집행하기 위해 가톨릭교회가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국가의 조치는 제1의정서 제1조에 따라 보장된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E. and G.R. v. Austria*, 위원회 결정).
  - 스위스는 가톨릭교회 소속 신자에게 부과하는 교회세를 청구인들에 대해 소급해서 과세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과거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톨릭교회를 탈퇴했으므로 가톨릭 소속 교인이 아닌 기간에 교회세가 소급 부과되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사실, 스위스는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표시했을 때만 탈퇴 사실을 인정해 왔는데, 세금신고서의 종교란에 줄을 그어 지운 행위만으로는 교회 탈퇴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Gottesmann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 독일의 과세기관이 교회세나 교회부담금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에 대해 청구인 4명이 제기한 청구에서, 청구인들은 특별교회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신도들이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과 부부소득합산 기준에 따라 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는 점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다. (독일 법령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문제된 세금과 부담금을 직접 산정하고 부과한 것은 개별 교회였으므로, 이는 독일 정부의 책임이 아닌 각 교회의 자율적인 활동에 해당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국내법에 따라 자유롭게 각자의 교회에서 탈퇴할 수 있었다(*Klein and Others v. Germany*, § 113-118 및 129-134).

- 스페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도들인 청구인들은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가톨릭교회에 대해 재정지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익활동 용도로 배정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 대한 재정지원 용도로는 배정할 수 없었다. 재판소는 국내법에서 청구인들이 소속된 교단과 스페인 정부 간 협력 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협약을 체결할 경우 청구인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청구인들이 소속된 교단이 이러한 협력 협정을 스페인 정부와 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가톨릭교회에 부여된 특별한 재정 혜택은 가톨릭교회가 역사적, 예술적, 문헌적 유산들을 스페인 사회 전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청구국과 교황청이 상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체결한 협력 협정에 근거한 것이었다(*Alujer Fernández and Caballero García v. Spain* (dec.)).
- 이탈리아 납세자들은 국가, 가톨릭교회 또는 정부와 특별협정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합의한 다른 5개 종교의 대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득세의 8,000분의 1을 배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청구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관련 법령에서는 납세자가 위 세 방식 가운데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며, 따라서 문제된 법령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pampinato v. Italy* (dec.)).
- 합법적으로 공인된 모든 종교 공동체의 신도들에게 납세 금액의 일부를 자신들의 종교 공동체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소속 성직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는 국교회(아이슬란드 루터교)에 대해서만 정부 예산 가운데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아이슬란드 법률(*Ásatrúarfélagið v. Iceland* (dec.)).

194. 위에 언급한 사건들은 특정한 교회세 또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납부한 일반적인 세금 가운데 특정 비율을 자발적으로 배정하는 선택과 관련된 사건들임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협약 제9조는 특정 세액의 납부와 그 세금의 사용 사이에 직접적이고 추적가능한 연관성이 없는 **국가의 일반 재정·예산 정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납세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국방 관련 재원에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평화주의자인 퀘이커교도의 청구를 각하했다. 위원회는 납세의 의무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적 성격의 의무이며, 이러한 납세의무의 중립성은 일단 세금이 징수된 후에는 개별 납세자가 징수된 세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고 보았다(*C.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H. and B.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에서 확인됨). 위원회는 낙태에 반대하면서 낙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 프랑스 변호사의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Bouessel du Bourg v. France*, 위원회 결정).

195. 이후 위원회는 국가가 일반과세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특정 종교 공동체나 그들의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 침해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Darby v. Sweden*, 위원회 보고서, § 56).

196. **의무보험 및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1960년대에 위원회는 제9조를 들어 여러 유형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와 국가가 설립한 특정 기관이나 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네덜란드 개혁 개신교(Dutch reformed Protestant) 교인들이 제출한 청구들을 심사했다. 청구인들은 첫째, 신은 인간에게 번영과 고난을 함께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의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며, 둘째,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노약자와 병약자의 생계를 지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자 국가 노령연금제도를 수립한 국가기관이 하나님의 명시적 계명을 어겼다면 자신들이 이러한 죄악과 연관되기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범주의 여러 사건들을 각하하였다.

- 한 우유증개상이 가축사육업의 법적 요건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벌금에 대해 제기한 청구. 제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된 제한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포함해 합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었다(*X. v. the Netherlands*, 1962년 12월 14일 위원회 결정).
- 모든 형태의 보험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노령연금제도에는 반대하며 노령연금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자 개혁교회(Reformed Church) 및 그 대표 2명이 제기한 청구. 위원회는 네덜란드 법률이 양심적 거부자에 대해 노령연금의 기여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을 면제하면서, 세금 형식으로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대체 방안을 두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의회는 개혁교회의 개별적인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이 사건에서는 제9조 위반 상황이 없었다(*Reformed Church of X.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 네덜란드 법률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모든** 형태의 보험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노령연금의 기여금만을 면제한 것은(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차별이라며 제기한 한 남성의 청구(*X. v. the Netherlands*, 1965년 12월 14일 위원회 결정).
- **모든** 형태의 보험에 반대하는 한 가게 주인이 의무적인 민사책임보험의 미가입으로 사업용 차량을 몰수당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청구. 청구인은 자신이 법률에 규정된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어쨌든 세금 형태로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대안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한 제한이 "다른 사람의 권리", 즉 잠재적 사고의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X. v. the Netherlands*, 1967년 5월 31일 위원회 결정).

197. 조금 더 최근의 사건으로, 위원회는 인지학적(*anthroposophical*) 원칙을 따르는 한 네덜란드 일반의 의사가 법령이 요구되는 직업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했던 유사한 청구 또한 각하하였다. 위원회는 연금제도 가입의무가 모든 일반의에 대해 완전히 중립적으로 적용되었고 청구인의 종교나 신념과 어떤 식으로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V.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198. 프랑스의 건강보험기금이 "예술과 미(美)를 통한 인간의 완전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계 단체의 대표들에 대해, 대표들의 활동에 관한 모든 비용을 그 단체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대표자의 활동은 법적으로 "자원봉사(*voluntary*)"가 아니라 "보수를 받는(*paid*)" 활동이라며,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4조(차별금지)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단체는 다른 종단에 소속된 성직자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요구되지 않는 점과 청구인 단체가 소속된 연맹의 다른 자원봉사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프랑스법에 따르면 수도사와 수녀는 특별한 제도에 가입할 가능성도 갖고 있지만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종교적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참여할 때는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Office culturel de Cluny v. France* (dec.)).

## 5. 종교적 색채를 띤 정당에 대한 조치

199. 제9조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지 않으며, 정당을 통해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X., Y. and Z. v. Germany*, 위원회 결정).
200. 재판소가 **종교의 근본원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당**을 설립하는 것이 협약 제9조가 보호하는 "종교의 표명"의 한 형태라고 판결한 적은 한번도 없다. 다른 한편으로, 재판소는 그러한 정당이 국가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청구들을 심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정당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서 법의 변화 또는 국가의 헌법적, 법적 구조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둘째, 추구하는 변화의 내용은 근본적인 민주주의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당의 지도자들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내세우는 정책이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당은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부과된 처벌에 대해 협약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종교에 따른 도덕적 가치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정당이 협약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본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GC]; *Staatkundig Gereformeerde Partij v. the Netherlands* (dec.), § 71). 다른 한편,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적인 규칙이 공공질서와 협약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유해한 경우 모든 회원국은 자신의 관할 안에서 그 규칙의 적용을 정당하게 금지할 수 있다(*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GC], § 128).

201.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터키가 한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고 그 정당의 지도부가 다른 정당에서 유사한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한 사건에서 협약 제11조(결사의 자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문제의 정당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일부다처제와 이혼 및 상속 문제에서 남성의 특권(협약에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인 성 평등 위반)을 인정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는 다수의 법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GC], § 128).
- "글로벌 이슬람 정당"에 대해 독일 안에서의 활동을 금지한 조치에 대한 청구에서 재판소는 협약상의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문제의 정당이 폭력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주민을 추방·살해할 것을 촉구했으므로 협약 제17조(권리남용 금지)에 따라 그 정당은 협약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Hizb Ut-Tahrir and Others v. Germany* (dec.)).
- 네덜란드 개혁개신교당(Dutch Reformed Protestant Party)은 성경의 특정 구절에 근거한 진실한 믿음에서 여성을 정당의 관리기구에서 배제하고 여성에게 선거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네덜란드 대법원은 국가가 정당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특정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정당은 그 판결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그 청구에 대해 근거가 없음을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재판소는 협약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청구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심사했다. 재판소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청구인에 대해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을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해당 정당이 표명한 입장은 협약의 근본적인 가치와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청구인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려는 의사를 밝힌 여성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Staatkundig Gereformeerde Partij v. the Netherlands* (dec.)).

## B. 소극적 의무: 종교단체 자율성에 대한 존중

### 1. 종교단체 자율성 원칙

202. 종교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조직화된 구조의 형태로 존재해왔다. 종교 공동체의 구성방식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부당한 국가의 제한으로부터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협약 제11조에 비추어 제9조를 해석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신자의 권리에겐 자신의 공동체가 자의적인 국가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한다. **자율적 존재로서의 종교 공동체**는 민주사회에서 다원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며 따라서 제9조가 제공하는 보호의 중심을 차지하는 문제이다. 이는 해당 공동체의 조직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 단체로서의

공동체 생활이 협약 제9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다른 모든 측면이 취약해질 것이다(*Hassan and Tchaouch v. Bulgaria* [GC], § 62 및 91;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27). 종교단체의 내부 조직과 신도의 자격을 규율하는 규정은 해당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고 종교적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Svyato-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 150).

203. 앞서 위에서 자율성 원칙은 국가가 종교 공동체에 새로운 신도를 받아들이거나 기존 신도를 배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종교단체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도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기존 신도를 배제하는 방식을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Svyato-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 146 및 150).
204. 종교 공동체는 흔히 신도들이 신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기는 규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 규칙에 따른 목적을 추구하도록 선출된 성직자가 종교의식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종교의식은 신도에게 특별한 의미와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 종교 성직자의 인격이 해당 공동체의 모든 신도에게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종교 공동체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따라서 협약 제9조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특정한 표명에 해당한다(*Hassan and Tchaouch v. Bulgaria* [GC], § 62; *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 80).
205. 예를 들어, 재판소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의 소수집단 거주지에서 그리스 정교회 신앙을 가진 키프로스인의 종교생활을 규제한 조치가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는데,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단 한 명의 성직자가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새로운 성직자 임명을 승인하지 않았다(*Cyprus v. Turkey* [GC], §§ 243-246).
206. 자유의사로 모인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로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집단이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않은 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사회에서 종교적 다원주의를 요구하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Serif v. Greece*, § 51). 재판소는 그리스 이슬람교 신학자인 청구인이 "'알려진 종교(known religion)'의 성직자로 자처하며 종교의식을 진행한 것"과 "'성직자의 복장을 착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공공연히 그러한 복장을 착용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결정이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사실 청구인은 같은 이슬람교도들의 추대를 받아 그 지역의 성직자인 무프티(Mufti of Rodopi)로 선출되었으나 그 직위에 대해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국가는 이미 무프티 직위에 다른 성직자를 임명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무프티 자격으로 여러 종교의식에 참여했지만, 그리스 법률이 무프티와 "공인된 종교"의 다른 성직자들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사법 및 행정 기능을 행사하고자 했던 적은 없었다(*ibid.*).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크산티(Xanthi) 지역의 무프티로 선출된 성직자와 관련한 유사한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는 엄밀히 말해 국가기관은 서로 대립하는 단체들 사이의 상호 관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2명의 무프티가 동시에 활동할 경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은 이 사건의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Agga v. Greece (no. 2)*; 또한 *Agga v. Greece (no. 3)* 및 *Agga v. Greece (no. 4)* 참조).

207. 구세군이 군대와 유사한 계급 체계와 제복 착용에 기초한 내부 조직을 가진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러한 내부 조직이 구세군의 종교적 신념을 적법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구세군이 군대와 유사한 계급 체계와 제복 착용을 하고 있어서 국가의 온전성이나 안보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Moscow Branch of the Salvation Army v. Russia*, § 92). 일반적으로 말해, 종교단체가 군사적인 상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그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치 않다(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0조에 대해 심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 120 참조).

## 2. 교단 내 또는 교단 간 갈등에 대한 국가의 개입

208. 다원주의, 관용, 포용력은 "민주사회"의 특징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견해를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수집단 출신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고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Leyla Şahin v. Turkey* [GC], § 108). 다원주의는 또한 문화적 전통,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종교적 신념과 예술, 문학, 사회경제적 관념과 개념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 확립된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은 사회적 결속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다.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분명 오늘날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종교적 다양성을 위협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으로 인식해야 한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09).

209.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는 또한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다양한 양보를 수반하는 타협의 정신과 대화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민주사회의 이상과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당화된(*S.A.S. v. France* [GC], § 128). 여러 종교가 하나의 같은 인구집단 안에 공존하는 민주사회의 경우,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모두의 신념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제약을 가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종교, 종파 및 신념과의 관계에서 규제 권한을 행사할 때, 국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적절한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15-116).

210.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소는 국가가 다양한 종교, 신앙, 신념을 행사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으며, 이 역할이 민주사회에서 공공질서, 종교적 조화와 관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Bayatyan v. Armenia* [GC], § 120; *S.A.S. v. France* [GC], § 127). 이러한 원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사이의 관계 및 다양한 종교, 신앙,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모두에 적용된다(*Lautsi and Others v. Italy* [GC], § 60).

211. 국가가 중립성 의무를 내세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과 결부된 신앙이나 교회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 132). 사실, 전통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재량에 달린 문제이다. 재판소는 유럽국가의 다양성, 특히 유럽이 문화 발전과 역사 변천의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전통을 이유로 협약 및 그 의정서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Lautsi and Others v. Italy* [GC], § 68).

212.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이나 그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 정당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국가가 재량을 행사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Manoussakis and Others v. Greece*, § 47; *Bayatyan v. Armenia* [GC], § 120).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종교의 자유 또는 그에 속하는 권리의 행사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게 하는 것, 특히 다른 종파, 성직자단체 또는 종교에 속하는 단체를 공인된 종교단체로 승인하는 절차에서 사전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협약 제9조제2항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17; *Vergos v. Greece*, § 34).

213. 법원을 포함하여 국가는 독립성 의무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종교적 소속**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종교적 소속은 해당 종교 공동체에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기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 89-90;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21). 다시 말해,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종교적 소속을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지정"하거나 "재분류"할 수 없다. 가장 중대하고 강력한 이유만이 국가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 110).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 라트비아 종교국(Latvian Directorate of Religious Affairs)이 지방 구 정교회(Old-Orthodox) 공동체(러시아 구 정교회 신도) 내에서 불거진 극렬한 대립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 그 결정은 구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두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한 것인데, 청구인들이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주관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교파를 변경했다는 의견이었다. 이 의견에 따른 결정이 집행되어 청구인들은 예배장소에서 강제로 쫓겨났다(*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 33-36 및 88-89).
-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사안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알레비교를 단지 이슬람교의 한 지파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분증의 "이슬람" 항목을 "알레비"라는 단어로 변경할 수 없었다(*Sinan Işık v. Turkey*, §§ 45-46).

214. 또한, 재판소는 이슬람교 수니파 신도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는 알레비파 신도들의 요구를 거부한 터키 정부의 결정이 협약 제9조만으로도 또는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하더라도 협약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알레비파 신도들은 특히 알레비 공동체의 예배를 공공업무의 형태로 규정하고, 세메비(알레비교 종교의식인 *cem*)을 행하는 장소)에 예배장소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알레비 종교 지도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알레비 종교 공동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터키 정부는 주로 알레비 교파를 별도의 종교나 종교집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알레비파 신도들 요청을 거부했다(그리고 터키 정부는 공식적으로 알레비파를 1920년대에 금지 결정이 내려진 교파인 수피(Sufi) 교파의 일종으로 계속 분류했다). 재판소는 알레비파의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기를 거부한 터키 정부의 태도가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알레비파 내에서 신앙과 종교적 의무의 기본 계율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고 해서 알레비파가 터키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고, 협약 제9조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종교 공동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세메비를 예배장소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 외에도, 국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소수종교(예: 알레비파)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 체계가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알레비파 신도들은 예배장소를 건축하거나 헌금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법원에 당사자로 제소할 자격 등과 관련된 수많은 법적, 조직적, 재정적 문제를 겪게 되었다. 터키 정부의 결정은 따라서 광범위한 판단재량을 벗어난 것이었다. 재판소는 또한 위에서 언급한 권리들과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이슬람교 다수파인 수니파 신도들과 비교했을 때 청구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판결했다(*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215.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이미 15년 동안 법인으로 인정받았던 베크타시 수피파가 제출한 법인 재등록신청을 그 교리의 근원과 근본적인 계율이 일반적인 이슬람교 공동체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마케도니아의 결정이 협약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1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Bektashi Community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16. 분열된 종교 공동체에서 단일한 지도부가 선출되는 것을 선호하는 국가의 조치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종교 공동체가 **단일한 지도부 아래 결합**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수행된 국가의 조치 역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온 국교회의 독립과 통합이 사회 전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Orthodox Ohrid Archdiocese (Greek-Orthodox Ohrid Archdiocese of the Peć Patriarchy)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국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종교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내세우거나, 분열된 종교 공동체나 그 일부를 단일 지도부 아래 통합하도록 강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Hassan and Tchaouch v. Bulgaria* [GC], § 78;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17). 종교 신도나 성직자 집단이 이전에 속해 있던 종교 공동체에서 분리되거나 심지어 종파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협약 제9조제1항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종교나 신념을 변경할 자유"의 집단적 행사에 해당한다(*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 93). 따라서 국가가 볼 때는 분리를 주장하거나 종파를 변경하기로 한 신도들의 신념이 기존의 공인된 종교단체나 등록된 종교단체의 신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기존 단체의 틀 안에서 그들의 계율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다(*Genov v. Bulgaria*, § 46). 국가의 역할은 다원주의를 없애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집단들이, 심지어는 같은 집단에서 분리되어 나온 경우에도 서로에 대해 관용의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123).



217. 국가는 종교적 다원주의의 궁극적인 보증자 역할을 하므로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을 중재해야 할 수도 있다. 국가는 이러한 중재와 같이 특히 민감한 분야의 문제를 다룰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종교단체들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행하는 중재는 원칙적으로 협약 제9조에 따른 신자들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Supreme Holy Council of the Muslim Community v. Bulgaria*, § 80). 어떤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이 분야의 문제에 대해 내린 모든 결정은 관련 사실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심사를 근거로 내려져야 한다(*Svyato- 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 138).

218. 예를 들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협약 제9조가 위반되었다고 판결했다.

- 부쿠레슈티 총대주교구(루마니아 정교회) 관할하에 운영되는 자치 정교회인 베사라비아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법적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몰도바의 관할 기관은 이미 몰도바 정부가 인정한 모스크바 총대주교구(러시아 정교회) 관할하에 운영되는 몰도바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승인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몰도바 정부는 청구인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파"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승인하기를 거부하고, 청구인 교회의 신도들은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다른 정교회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표명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 한 정교회 교구는 정교회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교구규칙에 따라 러시아 정교회(모스크바 총대주교구) 관할에서 우크라이나 정교회(키이브 총대주교구)로 교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할 기관에 새로 변경된 교구규칙을 승인하고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관할 기관은 그 요청을 거부했다. 이러한 거부결정은 자의적인 것이었는데, 관할 기관과 법원은 교구규칙에 규정된 교구의 내부 조직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그 교구규칙에 따르면 교구민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구민"으로 간주하여, 그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를 위법하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우크라이나 법원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조치를 바로잡지 못했으므로, 제6조제1항 및 제11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9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Svyato- 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219. *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사건은 한 종교 공동체를 분열로 이끈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관한 사건이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교파 내 분쟁이 일어난 뒤에 국가가 이러한 교파 내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가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개의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소가 판결한 3개의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들은 모두 1989년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빠르게 전환되었던 불가리아의 독특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1989년 이후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아 2대 종교 공동체인 정교회와 이슬람교의 내부 작용에 개입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먼저 두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옛 공산주의 정권의 부역자였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두 종교단체의 지도부를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불가리아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한 즉시 두 종교 공동체에서 각각 분열이 발생했다. 이후 이어진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분열된 두 공동체를 하나의 지도부 아래 통합시키려는 조치들을 채택하면서, 여당에 대해 정치적 충성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고위 성직자들을 그 지도부에 참여시키고 여당에 반대하는 고위 성직자들은 배제하였다. 게다가 불가리아의 통상적인 행정관행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종파에 관한 법령은 같은 종파에 속하는 두 개의 종교단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 종파에는 단일한 지도부를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러한 단일 지도부만이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이 상황의 전반적인 요약에 관해서는 *Holy Synod of the Bulgarian Orthodox Church (Metropolitan Inokentiy) and Others v. Bulgaria*, §§ 68 및 127 참조).

220.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3개 사건 모두 다음과 같이 협약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 불가리아 정부는 어떠한 이유나 설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들과 대립하고 있던 정당 지도자들을 이슬람교 전체 공동체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승인함으로써 이슬람교 공동체의 지도부 선택에 개입했다. 이에 대해, 불가리아 대법원은 내각(Council of Ministers)이 첫 번째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불가리아 정부는 이 가처분명령의 이행을 거부했다. 재판소는 문제가 된 개입이 자의적이었으며 행정부에 무제한의 재량을 허용하는 법조항에 근거한 점을 들어 해당 개입이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Hassan and Tchaouch v. Bulgaria* [GC]);
- 불가리아는 앞서 언급한 분열을 해소할 목적으로 '불가리아 이슬람교 통일회의'를 주최하고 특히 참가자 선정을 비롯해 회의준비와 운영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이었던 '이슬람 공동체 최고 신성위원회'는 하산(Hasan)과 차우쉬(Chaus) 세력과 대립하는 반대파를 대표했으며, '불가리아 이슬람교 통일회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불가리아는 통합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대화의 정신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이어가는 대신, 단일 지도부를 받아들일도록 할 목적으로 분열된 이슬람 공동체에 압력을 가했다. 재판소는 문제가 된 개입이 "법에 규정"되었으며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지만, 그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판결했다(*Supreme Holy Council of the Muslim Community v. Bulgaria*).
-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아 정교회를 분열시켰으며 정부가 1992년 막심 총대주교 선출을 무효로 선언하고 대신 "대체 종교회의(alternative Synod)"라는 명칭의 임시 지도부를 임명함으로써 직접 유발한 분쟁에 개입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심사한 후, "대체 종교회의" 소속 위원과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막심 총대주교가 이끄는 정교회와 나란히 독립된 교회를 자유롭게 창설하고 등록할 수 있었다는 불가리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분쟁은 사실 종교단체 인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두 단체로 갈라진 종교 공동체의 내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각 종교단체는 표면상 허위 주장이나 불합리하지 않은 주장에 근거하여 상대방 종교단체를 정통파가 아닌 단체로 간주했다. 분쟁 당사자 중 한 단체가 전체 정교회를 대표하고 종교 사안을 통제할 독점 권한을 갖도록 돕고, 다른 단체를 배척하며, 법 집행 기관을 통해 청구인 종교회의의 지지자들을 이들이 접거 중인 예배장소에서 추방함으로써,

불가리아 정부는 중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Holy Synod of the Bulgarian Orthodox Church (Metropolitan Inokentiy) and Others v. Bulgaria*; 또한 *Sotirov and Others v. Bulgaria* (dec.) 참조).

221. 반면, 재판소는 그리스 가톨릭교회로 개종한 전 정교회 신부와 일부 교구민들이 교파를 변경한 것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그리스 가톨릭 교구로 하여금 정교회 교구와 공유하는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최종 판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9조(단독으로 또는 협약 제14조에 비추어)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재판소는 관할 국가기관이 새로운 그리스 가톨릭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을 배정하고 새로운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문제가 된 판결의 경우, 청구인 교구는 이 판결을 적절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Greek Catholic Parish of Pesceana and Others v. Romania*, § 43).
222. 교파 간 분쟁이나 교파 내부의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국가기관이 해당 분쟁을 직접 초래하지 않았으며 어느 교파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존 분쟁에 대해 불가피하게 세속적 결론을 내리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Griechische Kirchengemeinde München und Bayern e.V. v. Germany* (dec.); *Serbisch-griechisch-orientalische Kirchengemeinde zum Heiligen Sava in Wien v. Austria*, 위원회 결정). 예를 들어, 재판소는 그리스 정교회 공동체가 150년 이상 자치권을 행사하던 교회를 국가로 강제반환하도록 한 조치에 대한 사건에서, 청구가 명백히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1828년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히 1세는 이 교회를 "그리스 종교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 종교 공동체는 종전에 소속되어 있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관할 대교구(Metropolis)와의 관계를 끊고 "진정한 정교회(True Orthodox Church)"의 관할로 소속을 변경했다. 바이에른주는 교구 변경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독일 법원은 1828년 시작된 건물 임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회 건물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관할 대교구로 반환될 수 있도록 주 정부에 환수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법원은 청구인 공동체가 문제의 건물을 사용할 경우 그 건물의 제공자(루트비히 1세)의 의도와 양립할 수 없게 되는데, 그의 의도는 그리스 정교회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단체이자 그리스 정교회 및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와 같은 교파인 교회에 양도하기를 원했던 것이며, 청구인 공동체가 더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독일 법원에서 제기된 주장을 심사한 후, 국가기관이 교단 내 분쟁에 개입하였다거나 국가의 중립성 원칙을 침해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다(*Griechische Kirchengemeinde München und Bayern e.V. v. Germany* (dec.))
223. 종교 건물을 사용할 권리는 *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라트비아 구 정교회의 신도였던 청구인들은 종전에 사용하던 교회를 대립 중인 종교단체가 차지한 탓에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라트비아 정부는 청구인이 사실상 교단을 변경하였으므로 문제된 종교 공동체를 더 이상 합법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소는 협약 제9조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이 사건과 *Griechische Kirchengemeinde München und Bayern e.V. v. Germany* (dec.) 사건을 주의깊게 구별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라트비아 정부가 종교 분쟁과 관련해 세속적 차원에서 법적 결론을 내리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분쟁에 실제로 개입했다고 강조했다(*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 94).

### 3. 종교단체와 구성원(신도와 성직자) 간 분쟁

224. 국가는 종교 공동체가 그 관할 하에 있는 신도들과 성직자들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없다(*X. v. Denmark*, 위원회 결정). 신도들이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리적 행동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많은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118). 따라서 협약 제9조는 종교단체 내부에서 해당 종교단체의 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국가가 승인한 종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특히 해당 공동체가 내부 결속과 공동체의 이미지 또는 통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내부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자신들만의 규칙과 이익에 따라 대응할 권리를 국가가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종교단체와 그 안에 존재하거나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반대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 165;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28). 마찬가지로, 제9조는 신도들에게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성직자 선출 또는 임명 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Kohn v. Germany* (dec.); *Sotirov and Others v. Bulgaria* (dec.)). 종교 공동체와 그 구성원 중 하나가 교리나 조직의 사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경우, 이러한 구성원은 해당 공동체를 떠날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행사한다(*X. v. Denmark*, 위원회 결정; *Mirojubovs and Others v. Latvia*, § 80).

225. 그렇지만, 제9조제1항은 어린 시절에 받은 세레나 견진성사를 교회가 "취소"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X. v. Iceland*, 위원회 결정).

226. 재판소와 위원회는 다음 사건들에 관한 청구들을 각하였다.

- 덴마크 국교회(루터교) 성직자가 국교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추가 조건을 적용해 어린이 세례식을 행한 것에 대한 덴마크 정부(Danish Church Ministry)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X. v. Denmark*, 위원회 결정).
- 청구인이 여성에 대한 성직 서품을 반대하고 여성 성직자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당시 스웨덴 국교회(루터교) 교구 지부가 청구인에 대해 교구 목사직에 부적합하다고 한 결정(그 결정은 스웨덴 정부에 의해 추진)(*Karlsson v. Sweden*, 위원회 결정).
- 영국 국교회 종교회의가 여성을 성직에 임명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국교회 성직자인 청구인(*Williamso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 청구인들이 더 이상 오순절운동(Pentecostal Movement)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인정한 결혼식을 주례할 권리를 취소하기로 한 오순절운동 혼인위원회의 결정(*Spetz and Others v. Sweden*, 위원회 결정).
- 독일 중앙유대인 종교회의(Central Jewish Consistory of Germany)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원직을 상실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전 하노버유대인 행정협의회 위원은 위 결정을 집행한 독일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는데, 이 사건에서 국가는 문제된 결정의 본안을 심사하지 않고 단지 중재재판소의 결정대로 집행했을 뿐이며, 따라서 유대인 공동체의 내부 자율성을 존중했으므로 국가에 의한 제한은 발생하지 않았다(*Kohn v. Germany* (dec.)).

#### 4. 종교단체와 직원 간 분쟁

227. 종교 공동체는 자율성을 보장받으므로 종교 공동체에서 일하거나 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충성을 요구할 수 있다. 신도들이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리적 행동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많은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다(*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 118). 신도가 맡은 직책의 성격은 국가나 관련 종교단체가 취한 제한적인 조치의 비례성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한 **구체적인 임무**는 그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충실의무**가 요구되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31). 이때, 청구인의 활동이 그 종교단체가 표방하는 사명과 얼마나 밀접한지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Schüth v. Germany*, § 69).
228. **종교교육 교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종교교육 교사를 교회나 종교 공동체의 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한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충성심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쳐야 할 신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대 운동을 할 경우, 교육해야 할 관념과 교사의 개인적 신념의 불일치로 인해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종교가 신도의 사생활과 개인적 신념을 규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과 공개적인 발언이 해당 종교와 명백하게 충돌하지 않는 사람이 종교를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37-138).
229.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율성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종교 공동체의 주장만으로는 상충하는 직원의 권리, 특히 마찬가지로 협약에 의해(특히,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보호되는 직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당해 사건에서의 종교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 개연성 있고 실제적이며,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직원의 사생활 존중권에 대한 제한이 종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고,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을 그 개별 사건에서의 사정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 제한은 문제된 권리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종교 공동체의 자율권과 역시 협약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상충하는 권리 사이의 충돌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할 때, 재판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사하고 해당 사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철저히 비교형량해야 한다. 국가는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해야 하며, 한 권리의 보호가 다른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추구하는 목적과 이러한 제한이 비례하도록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23 및 132).

230. 앞서 언급한 이익형량 심사를 수행할 때, 두 권리는 동등하게 고려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구의 내용이 종교단체가 자율권을 침해당했다며 제9조를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분쟁의 다른 당사자가 충돌하는 권리를 보장한 다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청구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 160).
231. 협약에 따라,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에 기초한 기풍을 가진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특정한 충실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 결정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 노동법원이 고용주의 자율권 존중에 기초한 제한적인 사법심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문제가 된 직책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라 관련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Schüth v. Germany*, § 69).
232.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비교형량에서, 고용주인 교회에서 해고된 직원이 경우 다른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이 것은 고용주가 특정한 활동 영역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일반적인 법적용에 대해 일정한 예외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혹은 해고된 직원이 특정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교회 이외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어려운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 144); *Schüth v. Germany*, § 73).
233. 예를 들어, 재판소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외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하게 한 독일 가톨릭 교구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성가대 지휘자인 청구인이, 그러한 행위를 간통죄와 혼인의 영원불변성 위반으로 간주하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적절한 통지를 받은 후) 해고당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협약 제8조(사생활 존중권)에 따라 부과된 적극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은 청구인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재판소는 독일 법원이 내린 판단의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방식을 비판했다. 독일 법원은 왜 고용주 교회의 이익이 청구인의 이익보다 우월한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권리와 고용주의 권리를 협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형량하지 못했다. 특히, 독일 법원은 교회의 이익을 청구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과 비교형량하지 않았고, 단지 직위 유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익과 비교형량하는 데 그쳤다. 청구인의 활동과 해당 종교단체가 선포한 사명 사이의 밀접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갖춘 자격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 독일 법원은 청구인이 가톨릭교회에서 채택한 직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직위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위를 존중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때 가톨릭교회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락한 것이 별거

또는 이혼 시 금욕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Schüth v. Germany*).

234. 반면,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8조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 독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모르몬 교회) 홍보부 유럽담당국장이 상관에게 외도 사실을 밝힌 후 (사전예고 없이) 해임되었다. *Schüth v. Germany* 사건과는 달리 재판소는 노동법원의 논증을 인정했는데, 모르몬교의 가르침에서 간통이 지니는 심각한 의미와 그 교회 안에서 청구인의 차지하고 있는 지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모르몬 교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부과한 충실의무는 납득할 만한 것임을 노동법원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았다. 독일 노동법원은 또한 고용주가 우선 경고와 같이 좀 더 관대한 처벌을 부과할 의무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Obst v. Germany*).
- 교황청으로부터 독신의무를 면제받고 결혼하여 환속한 가톨릭신부인 청구인은 국립중등학교에서 가톨릭종교 및 윤리 교사로 일했었는데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결정은 청구인의 가족상황과 청구인이 사제들의 "선택적 독신을 위한 운동(Movement for Optional Celibacy)" 단체에 소속된 사실을 다룬 언론 보도가 교회법에서 의미하는 "추문"을 야기했다는 지역 교구의 문서를 근거로 내려졌다. 재판소는 첫째, 청구인에 대해 내린 결정보다 덜 제한적인 성격의 조치는 가톨릭교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분명 동일한 효과를 지니지 않았을 것이며, 둘째, 이 사건의 상황, 특히 청구인이 가톨릭교회의 계율과 완전히 배치될 것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발생한 결과가 지나치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235. 고용주의 권리와 충돌하는 협약 제9조에 따라 보장된 직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독일 개신교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했으나 그 가르침이 개신교 교리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 교회·인간의 형제애(Universal Church/Brotherhood of Man)" 소속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해고된 교사의 사건에서 제9조에서 도출된 적극적 의무가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고, 상충하는 관련 이익을 세밀히 비교형량했다. 일반 대중과 유치원 학부모가 개신교에 기대하는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개신교 계율과 모순되는 교리를 가진 종교에 속한 교사가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개신교 교회의 이익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은 결코 불합리한 판단이 아니었다(*Siebenhaar v. Germany*).

236. 종교단체에 고용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즉 협약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자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가톨릭교회의 입장에 위배되는 낙태에 대한 의견을 수록해 언론에 게시된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독일의 가톨릭병원에서 해고된 의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가톨릭병원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톨릭교회에 대한 충실의무에 동의했으며, 이 의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고 언급했다. 청구인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독일 법원에 제소했었는데, 독일 법원의 판례는 가톨릭교회가 직원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견해를 강요할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과도한 요구는 인정될 수 없음을 인정해 오고 있었다. 사실 가톨릭병원의 의사 직책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입장에 위배되는 낙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 의무는 가톨릭교회가 낙태 사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Rommelfanger v. Germany*, 위원회 결정).

237. 반면, 재판소는 밀라노 사크로쿠오레 가톨릭대학교(Milan Catholic University of the Sacred Heart) 법철학 교수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제10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 교황청 산하 가톨릭교육성(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은 이 법철학 교수의 일부 견해가 "가톨릭 교리와 분명히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양립할 수 없는 견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가톨릭교육성 결정의 내용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자신이 정통적인 교리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탈리아 법원은 가톨릭교육성 결정의 정당성을 심사하면서, 법대교수회가 (재계약에 대한) 동의 거부가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만을 심사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입장과 가톨릭 교리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었다. 반면,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을 경우 청구인은 가톨릭 대학에서의 교수 활동과 자신의 의견이 가톨릭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익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학이 가톨릭 교리에 기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익의 중요성은 협약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절차적 보장의 본질을 훼손할 만큼 크지는 않았다(*Lombardi Vallauri v. Italy*).

238. 목사와 성직자를 위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우선 당사자가 협약 **제11조**의 목적상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법원은 협약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사의 자유와 종교 공동체의 자율성이 모두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경우, 종교 공동체는 자신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성원의 집단활동에 관해 자신만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 공동체가 단순히 자율성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협약 제11조에 따라 보호되는 구성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종교 공동체는 주장하는 위협이 실제로 현실화되어 있다는 것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그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종교 공동체의 자율권 행사와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 159).



239. 이 원칙에 따라 재판소는, 대주교의 승낙과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루마니아 정부가 사제단과 평신도 직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승인 및 등록을 거부한 사건에서 협약 제11조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의 승인 및 등록의 거부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승인되어 국내법에 편입된 교회법과 교회 규칙에 근거한 것이었다.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재판소는 루마니아 정교회 성직자들의 상황과 영적 사명에 본질적으로 특별한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고용 관계"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루마니아 법원에서 이미 정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 직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루마니아 정교회 성직자들은 제11조에서 의미하는 결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한편으로, 재판소는 문제된 제한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협약 제11조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노동조합의 등록신청을 거부함으로써 국가는 루마니아 정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이며 따라서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였다. 노동조합 등록신청서가 교회 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구성원들이 조합설립을 위한 특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규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위계질서와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청구인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협약 제11조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240. 협약 제6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두 전직 체코 후스파 교회(Czechoslovak Hussite Church) 성직자가 제기한 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교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된 후 이 결정의 불법성을 인정받고 체납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 체코 법원은 두 번째 쟁점(급여 체납)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첫 번째 쟁점(결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교회의 자율적 지위에서 인정된 전속관할권에 따라 내린 결정의 본안에 대해 법원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심사를 거부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재판소에 제기한 사건은 국내법상 인정되는 "권리"에 대한 다툼과 무관하여, 심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Dudová and Duda v. the Czech Republic* (dec.)).

## C. 적극적 의무

### 1. 제3자에 의한 물리적, 언어적 또는 상징적 공격에 대한 보호

241. 종교를 표명할 자유를 행사하기로 선택한 개인이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비판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그 신앙에 적대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것까지도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Dubowska and Skup v. Poland* (dec.)). 그렇지만,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가 그 신념을 보유하거나 표현하는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당하거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 국가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앙을 가진 자는 국가에 대해 제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평화적 향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Church of Scientology and Others v. Sweden*, 위원회 결정; *Begheluri v. Georgia*, § 160). 사실, 국가는 본질적으로 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실효적으로 존중되도록 할 일정한 의무를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는 개인들 사이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타인의 활동으로 인해 종교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적 수단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Dubowska and Skup v. Poland* (dec.)).

242.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특정 종교 공동체의 신념이나 종교활동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공개 시위를 개최할 때,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시위를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협약 제10조와 제11조)와 종교 공동체가 외부의 부당한 제한없이 평화롭게 신앙을 표명할 권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권리는 협약에 따라 동등하게 보호받는 혜택을 누리고, 그 어느 권리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는 위에서 언급한 협약 조항들의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협약은 이들 권리들 사이에서 선협적인 위계질서를 수립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 모든 권리는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권리는 다원주의, 관용, 포용력에 기초한 사회에서 이러한 모든 권리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상충하는 두 권리가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이 의무는 사인이 어느 한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부과된다.
2. 따라서 국가는 특히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실제로 권리가 존중되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재판소는 유럽 차원에서 사법심사 권한을 행사할 때 사건의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이 협약에 명시된 여러 상충하는 권리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때, 재판소는 행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항들을 가지고 사후적인 평가의 관점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판소는 국가기관의 판단을 재판소 자신의 견해로 쉽게 대체해서는 안 되는데, 어디에 적절한 균형이 있고, 그 균형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쪽은 언제나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 경찰인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현대사회에서 치안유지에 따르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적극적 의무는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Karaahmed v. Bulgaria*, §§ 91-96).

243. 같은 논리로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협약 위반 판결을 내렸다.

- 성직을 박탈당한 정교회 사제가 이끄는 사람들이 평화적인 모임을 갖고 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난폭하게 구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종교 서적을 불태우는 등 물리적인 공격을 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9조 위반 및 제14조(차별 금지)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경찰은 청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신속히 개입하기를 거부했다. 사건 발생 후 청구인들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는데, 이들 관련 기관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청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또한 경찰의 협박 행위를 다룬 사건에 관해서는 *Begheluri v. Georgia* 및 *Tsartsidze and Others v. Georgia* 참조).

- 재판소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있는 이슬람사원의 안팎에서 열린 금요일 기도회에 항의하기 위해 한 정당 당원들이 개최한 시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제14조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제9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시위는 법령에 따라 개최된 시위였으므로 처음에는 합법적이었으나, 폭력 시위로 변했다(위협적인 함성과 몸짓, 계란 던지기, 기도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 모스크 지붕에 확성기 설치, 기도용 깔개를 불태우려는 시도, 억지로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위대들이 신도들에게 가한 물리적 공격 등). 이 사건에서 불가리아 정부는 양 당사자들이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의 정당이 이슬람교와 터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정부는 시위대를 모스크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배치해 폭력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통제하기에는 인원이 너무나 부족했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동한 결과 신도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후 정부에서 착수한 조사는 요구되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Karaahmed v. Bulgaria*).

244. 또한, (제10조 및 제11조와 마찬가지로) 제9조는 종교단체가 특정 사안에 관해 취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이 종교의식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소속된 교회 고위층의 폐단을 고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온 루마니아 정교회 수녀가 총대주교가 진행한 예배에서 소란을 피우며 총대주교가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외친 (혹은 크게 소리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가 명백히 근거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수녀에게 부과된 벌금은 의견의 표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소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가 해당 사안에서 주어진 일반적인 판단재량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Bulgaru v. Romania* (dec.)).

245. 또한, 재판소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Otto-Preminger-Institut v. Austria*, § 47). 하지만, 재판소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심사했으며, 신자의 감정에 대한 존중을 위반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했다(*ibid.*; *Wingrove v. the United Kingdom*; *İ.A. v. Turkey*; *Giniewski v. France*; *Klein v. Slovakia*; *E.S. v. Austria*; *Tagiyev and Huseynov v. Azerbaijan*; *X. Ltd. and Y.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246. 반면, 재판소와 위원회는 종교적 감정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제9조에 따라 제기한 청구들을 지금까지 예외없이 각하였다. 특히, 제9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가, 반드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저술이나 출판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감정을 상하게 한 자를 상대로 일정한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Dubowska and Skup v. Poland* (dec.)). 재판소와 위원회는 다음 사건들에서 이러한 유형의 청구를 각하였다.

- 한 신학 교수가 강의 도중 사이언톨로지에 대해 적대적인 논평을 하고 이어 지방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를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적법요건 흠결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였다. 위원회는 문제된 발언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제9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Church of Scientology and Others v. Sweden*, 위원회 결정).
- 이슬람교의 관점에서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소설 "악마의 시(Satanic Verses)"를 저술하고 출판한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와 출판사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시를 영국 정부가 거부한 것(*Choudhury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 한 주간지 편집장은 폴란드 전역에서 대단히 추앙하는 성화인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이미지에서 두 얼굴을 가스 마스크로 가린 모습을 주간지 표지에 게재한 후 종교적 감정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폴란드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형사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폴란드 검찰은 이 이미지가 폴란드의 대기오염 실상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고의로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종교적 감정이 손상된 것에 대해 국내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구제를 신청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사건의 모든 사정과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면밀히 심사한 후 해당 구제 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청구인들이 제9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막는 것은 없었고, 폴란드 검찰이 궁극적으로 범죄는 없었다고 판단한 사실 자체만으로 제9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같은 이유로 위원회는 제14조가 금지한 차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Dubowska and Skup v. Poland* (dec.); *Kubalska and Kubalska-Holuj v. Poland*, 위원회 결정).
- 모로코에 거주하는 모로코 국민 한 명과 모로코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두 개의 단체는 덴마크 정부가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캐리커처 연재를 금지하고 처벌하기를 거부했다며 덴마크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어떠한 "역외적용 법"을 적용하더라도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청구인과 덴마크 사이에 관할권을 인정할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Ben El Mahi and Others v. Denmark* (dec.)).

## 2. 직장, 군대, 법원에서의 종교

247. 재판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공무원에게 제9조와 관련하여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 또는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대해 신중의무(duty of discretion)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 공무원의

윤리적 의무는 사적인 행위라도 자신이 대표하는 기관의 이미지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사생활 영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협약은 공무원의 중립을 지키고 세속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신중의무 또는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인종차별주의나 외국인혐오 사상을 조장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 또는 그 구성원들에 탈퇴나 해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만들거나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을 따르는 종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Sodan v. Turkey*, §§ 42 및 52). 하지만, 단지 공무원이 특정 종교운동에 동의했거나 그 단체에 소속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이 업무에서 편견을 드러냈거나,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그 단체가 국가안보에 진정한 위협을 제기했다는 명확한 증거없이, 그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Sodan v. Turkey*, § 54).

248.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대의 구성원이 종교를 표명**할 권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가가 특정 유형의 행동, 특히 군복무 요건을 반영하여 확립된 명령에 위배되는 태도를 금지하는 징계규정을 둘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터키 공군 대령인 법무관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행동과 태도에서 그가 불법적인 원리주의자의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군 복무를 선택함에 따라 군기 제도에 따르기로 스스로 동의했다고 언급했으며, 군 징계제도는 본질적으로 민간인에게 부과될 수 없는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군 구성원에는 부과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구인은 군 생활 요건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종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치는 청구인의 종교적 의견이나 신념,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행동과 태도, 즉 군율과 세속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였다(*Kalaç v. Turkey*; 또한 *Çinar v. Turkey* (dec.); *Acarca v. Turkey* (dec.); *Sert v. Turkey* (dec.) 참조).
249. 터키를 상대로 제기된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와 위원회는 터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군복무에 적용되는 일정한 제한에는 군의 인력이 종교규칙을 우위에 두는 것을 지향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Muslim fundamentalist movement)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Tepeli and Others v. Turkey* (dec.); *Yanaşık v. Turkey*, 위원회 결정). 특히 자유의사에 따라 군복무를 선택했고 군복무 요건에서 정한 한계 안에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생도들에 대해 터키 육군사관학교가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ibid.*).
250. 공무원과 관련하여, 공직 수행에 있어 편견을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있고 "내성적"이며 그의 아내가 이슬람 베일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터키 수도(앙카라)의 부지사를 지방의 비슷한 직위로 전출시킨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협약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또한, 청구인의 아내가 이슬람 베일을 착용한 사실은 관련 당사자들의 사적인 문제였고, 게다가 이 사안을 규율하는 어떠한 규정도 채택된 적이 없었다(*Sodan v. Turkey*, § 54).

251. 러시아 **판사**가 법관의 고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사한 논리에 따랐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판사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속한 종교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의 당사자를 위협했다. 예를 들어, 이 판사는 법원 심리 중에 공개적으로 기도했고, 특정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 자신이 속한 교회에 가입할 경우 유리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특정 당사자의 도덕성을 공공연히 비난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교회에 소속되었다거나 다른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이 아니라, 법관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특정 활동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10조와 제9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았지만 해당 제한은 추구된 정당한 목적과 비례한다고 판결했다(*Pitkevich v. Russia* (dec.)).
252. 더 오래된 사건에서, 위원회는 (목회 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지만) 서품을 받은 가톨릭 사제이기도 한 변호사가 부판사(substitute judge) 직위에 지원했으나 벨기에 법무부장관이 교회 직위를 가진 자는 판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벨기에법을 근거로 판사 임명을 거부했다며 (제9조 및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에 따라) 제기한 청구를 각하했다. 위원회는 첫째, 청구인이 성직자의 의무를 포함한 종교의 행사에 전혀 방해받지 않았으며, 둘째, 협약이 그 자체로 판사 직위에 지원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Demeester v. Belgium*, 위원회 결정; 또한 제1의정서 제3조에 따라 심사한 사건에 관해서는 *Seyidzade v. Azerbaijan* 참조).
253. **공공부문 고용 관계** 체계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불가리아 국립직업학교의 수영장 관리인인 청구인이 개신교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정치, 언론 캠페인이 진행되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과는 반대로 개신교 복음주의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협약 제9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문제된 해고 조치가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결정되었고, 공식적으로 수영장 관리인 직책에 대한 자격 기준이 변경되어 청구인이 충족하지 못한 새로 도입된 기준을 바탕으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체 사실관계를 심사한 재판소는 해고 조치의 진정한 이유가 사실은 청구인의 종교적 소속과 신념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정부는 청구인이 학교에서 전도 활동을 하거나 직무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Ivanova v. Bulgaria*).
254. 특정 종교의 **의식에 대한 계율(ritual precepts)**(제II.A.2절 ‘양심적 거부: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에 언급된 **윤리적 계율(ethical precept)**과 혼동하지 말 것)은 때때로 신도의 직업적 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도는 (공공 고용주이든 민간 고용주이든) 고용주에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는 제9조가 특정 종교의 휴일에 결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Kost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45).
255. 위원회는 이 관점에 따라 심사한 모든 사건들에서 청구인에게 협약 제9조제1항의 보호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으며,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청구인에 대해 취한 조치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청구인과 고용주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적 의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다음 사건들에서 이러한 논리로 판단했다.

- 이슬람교 신앙을 가진 국립학교 교사인 청구인이 모스크에서 열리는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고자 휴가를 받고자 했으나 영국 교육 당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교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더 적은 급여를 받는 시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었다. 위원회는 이슬람교도가 모스크에서 열리는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참석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심사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을 가르칠 의무를 수락했고, 따라서 교육기관에서의 근무와 금요일 기도회 참석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고만 언급했다. 게다가, 청구인은 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후 6년 동안 금요일에 휴가를 요청한 적이 없었으며 모스크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에 휴가를 낼 필요가 있다고 고용주에게 말한 적도 없었다. 그 밖에도, 교육제도를 구성하는 요건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최선일 것인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평가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X. v. the United Kingdom*, 1981년 3월 12일 위원회 결정).
- 핀란드국영철도의 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금요일 일몰 이후 노동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해고된 사건. 위원회는 핀란드 법률이 일요일을 통상적인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에 대한 차별(협약 제14조) 상황은 없다고 판단했다(*Kontinen v. Finland*, 위원회 결정).
- 민간부문(여행사)에 종사하는 직원이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후 해고된 사건(*Stedma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256.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마케도니아 전력공사의 직원으로 이슬람교도임을 밝힌 바 있는 청구인이 이슬람교 축제 기간에 1년 중 두 차례에 걸쳐 일을 쉬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계처분(한시적 임금 삭감)이 내려진 사건에서 협약 제9조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마케도니아 법원은 법에 따라 이슬람교를 믿는 시민이 종교 축제일에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를 알지 못했고 과거 항상 기독교 휴일을 기념했다는 점에서 이슬람교에 속해 있다는 공개적 발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이 단지 추가 휴가를 받기 위해 이슬람교도라고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법에서 특정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특히 고용 분야)에 대해 특권이나 특별 면제를 설정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 종교 공동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제9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청구인이 원칙적으로 신념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양심적 거부 사건과 동일한 논리를 채택함).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청구인이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의 "표명"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도 문제된 제한이 제9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또한 제14조에서 의미하는 차별도 없었다고 판결했다(*Kost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57. 재판절차 당사자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 위원회는 유대교 신자인 오스트리아 국민 2명이 유대인 초막절(*Sukkot*) 기간에 예정된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며 제기한 청구를 각하했다. 위원회는 주로 제6조제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라 사건을 심사한 후, 청구인들은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법원에 알릴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너무 늦게 알렸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제9조만을 근거로 제기한 청구와 제14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9조를 근거로 제기한 청구 또한 각하했다(*S.H. and H.V. v. Austria*, 위원회 결정).
- 재판소는 유대교를 믿는 변호사인 청구인이 형사사건의 원고 2명 중 1명의 대리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법당국이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협약 제9조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기를 요청했던 심리일은 유대인의 종교 휴일과 같은 날짜였다. 청구인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청구인 없이 심리가 진행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시행 중인 법령 조항에 따라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어야 하며, 해당 심리에서 자기 대신 다른 변호사가 변호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Francesco Sessa v. Italy*).

3. 재소자의 종교의 자유

258.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재소자들은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협약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과 자유를 계속 누린다(*Korostelev v. Russia*, § 57). 따라서 국가기관은 협약 제9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도소의 특수한 요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소자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교도소가 특정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 대한 세부 규정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대해 결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기관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Erich and Kastro v. Romania*, § 34). 세부 규정을 채택할 경우,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재소자가 적절한 정보를 전달받고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조정해야 한다(*Saran v. Romania*, § 40).

259. 다른 재소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종교 서적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상 교도소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지만, 종교를 표명할 자유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Kovalkovs v. Latvia* (dec.)). 다른 한편으로, 원칙적으로 제9조는 재소자가 수감된 시설에서 전도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해당 시설 밖에서 종교를 표명할 권리 또한 부여하지 않는다(*J.L. v. Finland* (dec.)).

260. 마찬가지로, 제9조는 다른 재소자와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정치범"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교도소 노역, 죄수복 착용, 감방 청소 의무를 비롯해 교도소 생활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칙에서 면제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McFeel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X. v. the United Kingdom*, 1982년 3월 6일 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또한 제9조가 재소자가 종교생활을 영위하거나 삶의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재소자에게 제공할 일반적인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X. v. Austria*, 1965년 2월 15일 위원회 결정).

261.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교도소 내에서 한 재소자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주기로 한 결정이 구금시설에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재소자가 받는 처우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구금시설의 이익 및 다른 재소자들의 이익과, 특별한 조치가 적용되는 재소자의 구체적인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Jakóbski v. Poland*, § 50; *Erllich and Kastro v. Romania*, § 34). 또한, 재소자가 종교 계율을 준수하는 음식을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치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재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Erllich and Kastro v. Romania*, § 40).
262. 사실,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이러한 조치가 규정된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일반원칙이 교도소 구금과 가택 구금에 적용된다(*Süveges v. Hungary*, §§ 147-157). 추방 전 외국인의 구금에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된다(*C.D. and Others v. Greece*, §§ 78-79).
263. 재판소는 다음 사건들에서 협약 제9조가 위반되었다고 판결했다.
- 재소자가 신부나 목사와 면회할 수 없었던 사건(*Poltoratski v. Ukraine*, §§ 163-171; *Kuznetsov v. Ukraine*, § 143-151; *Mozer v.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97-199).
  - 관할 기관이 유치장에 구금된 청구인에게 교도소 예배당에서 열리는 종교행사 참석을 허가하지 않았고, 국내법상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조치인 종교 서적과 종교 물품을 압수한 사건(*Igors Dmitrijevs v. Latvia*; *Moroz v. Ukraine*, §§ 104-109).
  - 불교 신자인 청구인에게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교도소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Jakóbski v. Poland*; *Vartic v. Romania (no. 2)*). 특히 *Vartic v. Romania* 사건에서, 청구인은 육류가 포함된 환자용 음식만 받을 수 있었다. 재판소는 특히 법무부가 식품이 담긴 소포를 우편으로 받는 것을 금지한 이후 청구인은 자신의 종교에서 허용하는 식품을 구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었다고 언급했다(*ibid.*, §§ 47-50).
  -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이슬람교도가 된 재소자에게 새 종교에 따라 요구되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Neagu v. Romania*; 또한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된 후 자신이 이슬람교도임을 밝혔으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 사실상 행정상의 실수와 관련 기관들 사이의 업무조정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인 *Saran v. Romania* 참조).
  - "취침시간 중 활동금지"를 규정한 교도소 규칙을 어기고 밤에 이슬람 기도(Salah)를 하여 독거실에 수감된 이슬람교도 재소자에게 부당한 견책의 징계조치(*Korostelev v. Russia*).

264. 이와 반대로, 재판소와 위원회는 다음 사건들에서 제9조의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 교정당국은 불교 신자인 재소자에게 (신원 확인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염소수염(*goatee beard*)을 금지하고 수감될 당시 교도소 예치함에 맡긴 목주를 돌려주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 제한이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9조제2항에 부합한다고 보았다(*X. v. Austria*, 1965년 2월 15일 위원회 결정).
- 독일에 수감된 영국 국적의 재소자는 성공회 예배 참석이나 성공회 사제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실제로는 개신교 예배를 보았었고 개신교 목회자를 만났었다고 확인했다(*X. v. Germany*, 1966년 12월 16일 위원회 결정).
- 불교 신자인 재소자는 불교 잡지에 기고문을 게재하고자 했으나 교정당국은 이를 금지했다, 청구인은 종교 계율을 준수하는 것과 기고문의 게재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했다(*X. v. the United Kingdom*, 1974년 12월 20일 위원회 결정). 또한 다른 불교 신자 재소자 사건에서는 자신의 종교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가톨릭 잡지를 구독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X. v. Austria*, 1965년 2월 15일 위원회 결정).
- 정통파 유대교도는 채식주의자 코셔 음식을 제공받았고 교도소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평신도 유대인을 면회할 수 있었으며, 유대교 최고지도자는 교정당국이 청구인의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했다(*X v. the United Kingdom*, 1976년 3월 5일 위원회 결정).
- 교정당국은 특별한 법령이 없었음에도 유대교도 두 명이 종교 식단에 맞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교정당국은 유대교 재단이 승인한 코셔 음식을 만들 별도의 주방을 설치했으며, 유대교 재단으로부터 코셔 제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상환받을 수 있었다)(*Erllich and Kastro v. Romania*, § 40).
- 이슬람교도 남성 4명은 추방되기 전 수용소에 구금되었을 때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청구를 제기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교도 수용자들에게 제공된 음식에는 돼지고기가 들어 있지 않았으며, 수용소에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 중 두 곳이 이슬람교도가 운영하는 업체였으며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C.D. and Others v. Greece*, §§ 78-79).
- 교정당국은 그림이 포함된 무슬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교 재소자가 주문한 철학·종교 서적을 재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했다. 이 제한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이었다(*X. v. the United Kingdom*, 1977년 10월 4일 위원회 결정).

- 교도소장은 교도소 등록부에 "*위카(Wicca)*" 종교의 신자로 등록하기를 원했던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했다. 위원회는 등록부에 종교를 등록함으로써 재소자에게 종교행사를 위한 일정한 특권과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신고한 종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해당 종교의 객관적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X. v. the United Kingdom*, 1977년 10월 4일 위원회 결정). 비슷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빛을 숭배하는 자"라고 자처했으나 이 종교가 어떤 종교활동을 하며 교정당국이 어떻게 이 활동을 방해했는지 설명하지 않은 재소자의 청구를 각하했다(*X. v. Germany*, 1970년 4월 1일 위원회 결정).
- 교정당국은 행정상 오류로 소속 종교가 잘못 기재된 재소자의 파일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이 재소자는 유대인임을 밝혔으나 정교회 기독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재소자가 주장한 행정상 오류는 그가 원하는 종교를 표명하는 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Mariş v. Romania* (dec.)).
- 죄수복 착용과 감방 청소를 거부한 재소자에 대해 여러 건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청구인은 특히 자신이 "정치범"임을 주장했기 때문에 시크교도로서 자신과 신 사이에 어떠한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죄수복 착용을 거부한 이유). 게다가, 그가 카스트 제도에서 상위 계급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닥을 청소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감방 청소를 거부한 이유). 위원회는 죄수복에 관한 첫 번째 청구는 (부분적으로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는 청구인적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각하했고, 두 번째 청구는 명백히 근거없는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제한은 건강을 보호하고 제9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었기 때문이다(*X. v. the United Kingdom*, 1982년 3월 6일 위원회 결정).
- 채식주의자로서 동물실험(염색)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제품을 다루는 것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쇄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한 재소자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제9조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가정해도 해당 제한은 제9조제2항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반면, 위원회는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할당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된 처벌이 관대했다고 주장한 피청구국의 의견에 동의했다(*W.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 위험인물로 여겨져 특히 삼엄한 구금제도에 따라 수감되어 있는 청구인이 미사에 참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청구인은 목회자와 면회가 금지되었다는 주장은 제기한 바 없었고, 감방에서 미사를 지켜볼 수 있었다(*Indelicato v. Italy* (dec.); 또한 *Natoli v. Italy*, 위원회 결정 참조).
- 가택 구금 중인 청구인은 매주 집 밖으로 나가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엇보다 그 요청을 너무 광범위한 문구로 표현했고 어느 교회나

예배장소에 참석하고 싶은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Süveges v. Hungary*, §§ 153-154).

- 교정당국은 *하레 크리슈나(Hare Krishna)* 종교운동의 추종자인 청구인이 종교 자료를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요청한 것에 대해 거부했으며, 다른 재소자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초를 압수했다(*Kovaļkova v. Latvia* (dec.)).

265. 재판소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밝히자, 병원은 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 교단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른 환자와 병원 직원들에게 전단을 배포하고 설교한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재판소는 이 조치가 병원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머지 청구의 경우 재판소는 제9조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가 존중되었다고 보았다(*J.L. v. Finland* (dec.)).

##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참조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부가 본안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의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그리고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또한 30개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된 많은 주요 판례의 번역본과 제3자가 작성한 약 100개의 온라인 판례집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 —A—

*Abrahamsson v. Sweden*, no. 12154/86, Commission decision of 5 October 1987

*Acarca v. Turkey* (dec.), no. 45823/99, 3 October 2002

*Adyan and Others v. Armenia*, nos. 75604/11 and 21759/15, 12 October 2017

*Agga v. Greece (no. 2)*, nos. 50776/99 and 52912/99, 17 October 2002

*Agga v. Greece (no. 3)*, no. 32186/02, 13 July 2006

*Agga v. Greece (no. 4)*, no. 33331/02, 13 July 2006

*Ahmet Arslan and Others v. Turkey*, no. 41135/98, 23 February 2010

*Aktas v. France* (dec.), no. 43563/08, 30 June 2009

*Al-Nashif v. Bulgaria* (dec.), no. 50963/99, 25 January 2001

*Al-Nashif v. Bulgaria*, no. 50963/99, 20 June 2002

*Alexandridis v. Greece*, no. 19516/06, 21 February 2008

*Alujer Fernández and Caballero García v. Spain* (dec.), no. 53072/99, 14 June 2001

*Angeleni v. Sweden*, no. 10491/83, Commission decision of 3 December 1986, Decisions and Reports p(DR) 51

*A.R. and L.R. v. Switzerland* (dec.), no. 22338/15, 19 December 2017  
*Araç v. Turkey* (dec.), no. 9907/02, 19 September 2006  
*Arrowsmith v. the United Kingdom*, no. 7050/75, Commission report of 12 October 1978, DR 19  
*Ásatrúartélagið v. Iceland* (dec.), no. 22897/08, 18 September 2012  
*Association Cultuelle du Temple Pyramide v. France*, no. 50471/07, 31 January 2013  
*Association de solidarité avec les témoins de Jéhovah and Others v. Turkey*, nos. 36915/10 and 8606/13, 24 May 2016  
*Association des Chevaliers du Lotus d'Or v. France*, no. 50615/07, 31 January 2013  
*Association Les Témoins de Jéhovah v. France*, no. 8916/05, 30 June 2011  
*Association Sivananda de Yoga Vedanta v. France*, no. 30260/96, Commission decision of 16 April 1998

—B—

*B.C. v. Switzerland*, no. 19898/92, Commission decision of 30 August 1993, DR 75  
*Baciu v. Romania* (dec.), no. 76146/12, 17 September 2013  
*Balsytė-Lideikienė v. Lithuania* (dec.), no. 72596/01; 24 November 2005  
*Bayatyan v. Armenia* [GC], no. 23459/03, ECHR 2011  
*Begheluri v. Georgia*, no. 28490/02, 7 October 2014  
*Bektashi Community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s. 48044/10 and 2 autres, 12 April 2018  
*Belcacemi and Oussar v. Belgium*, no. 37798/13, 11 July 2017  
*Ben El Mahi and Others v. Denmark* (dec.), no. 5853/06, ECHR 2006-XV  
*Bernard and Others v. Luxembourg*, no. 17187/90, Commission decision of 8 September 1993, DR 75  
*Biblical Centre of the Chuvash Republic v. Russia*, no. 33203/08, 12 June 2014  
*Biserica Adevărat Ortodoxă din Moldova and Others v. Moldova*, no. 952/03, 27 February 2007  
*Blumberg v. Germany* (dec.), no. 14618/03, 18 March 2008  
*Boffa and Others v. San Marino*, no. 26536/95, Commission decision of 15 January 1998, DR 95  
*Boychev and Others v. Bulgaria*, no. 77185/01, 27 January 2011  
*Boudelal v. France* (dec.), no. 14894/14, 13 June 2017  
*Bouessel du Bourg v. France*, no. 20747/92, Commission decision of 18 February 1993  
*Bruno v. Sweden* (dec.), no. 32196/96, 28 August 2001  
*Bukharatyan v. Armenia*, no. 37819/03, 10 January 2012  
*Buldu and Others v. Turkey*, no. 14017/08, 3 June 2014  
*Bulgaru v. Romania* (dec.), no. 22707/05, 15 May 2012  
*Buscarini and Others v. San Marino* [GC], no. 24645/94, ECHR 1999-I  
*T.N.B. v. Romania* (dec.), no. 34644/02, 5 January 2010

—C—

*C. v. the United Kingdom*, no. 10358/83, Commission decision of 15 December 1983, DR 37  
*C.D. and Others v. Greece*, nos. 33441/10 and 2 autres, 19 December 2013  
*C.J., J.J. and E.J. v. Poland*, no. 23380/94, Commission decision of 16 January 1996, DR 84  
*C.R. v. Switzerland* (dec.), no. 40130/98, 14 October 1999  
*Canea Catholic Church v. Greece*, 16 Dec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Cârmuirea Spirituală a Musulmanilor din Republica Moldova v. Moldova](#) (dec.), no. 12282/02, 14 June 2005

[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no. 27417/95, ECHR 2000-VII

[Chappell v. the United Kingdom](#), no. 12587/86, Commission decision of 14 July 1987, DR 53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nos. 25088/94 and 2 others, ECHR 1999-III

[Choudhury v. the United Kingdom](#), no. 17439/90, Commission decision of 5 March 1991

[Church of Scientology and Others v. Sweden](#), no. 8282/78, Commission decision of 14 July 1980, DR 21

[Church of Scientology of Moscow v. Russia](#), no. 18147/02, 5 April 2007

[Church of Scientology of St Petersburg and Others v. Russia](#), no. 47191/06, 2 October 2014

[Çinar v. Turkey](#) (dec.), no. 39334/98, 9 July 2002

[Religious Community of Jehovah's Witnesses of Kryvyi Rih's Ternivsky District v. Ukraine](#), no. 21477/10, 3 September 2019

[Company X. v. Switzerland](#), no. 7865/77, Commission decision of 27 February 1979, DR 16

[Cserjés v. Hungary](#) (dec.), no. 45599/99, 5 April 2001

[Cumhuriyetçi Eğitim ve Kültür Merkezi Vakfı v. Turkey](#), no. 32093/10, 2 December 2014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ECHR 2001-IV

## —D—

[D. v. France](#), no. 10180/82, Commission decision of 6 December 1983, DR 35

[Dahlab v. Switzerland](#) (dec.), no. 42393/98, ECHR 2001-V

[Dakir v. Belgium](#), no. 4619/12, 11 July 2017

[Daratsakis v. Greece](#), no. 12902/87, Commission decision of 7 October 1987

[Darby v. Sweden](#), no. 11581/85, Commission's report of 9 May 1989

[Darby v. Sweden](#), 23 October 1990, Series A no. 187

[Das Universelle Leben Aller Kulturen Weltweit e.V. v. Germany](#) (dec.), no. 60369/11, 17 November 2015

[Dautaj v. Switzerland](#) (dec.), no. 32166/05, 20 September 2007

[Demeester v. Belgium](#), no. 8493/79, Commission decision of 8 October 1981, DR 25

[Deschomets v. France](#) (dec.), no. 31956/02, 16 May 2006

[Dimitras and Others v. Greece](#), nos. 42837/06 and 4 others, 3 June 2010

[Dimitras and Others v. Greece \(no. 2\)](#), nos. 34207/08 and 6365/09, 3 November 2011

[Dimitras and Others v. Greece \(no. 3\)](#), nos. 44077/09 and 2 others, 8 January 2013

[Dimitrova v. Bulgaria](#), no. 15452/07, 10 February 2015

[Dogru v. France](#), no. 27058/05, 4 December 2008

[Dor v. Romania](#) (dec.), no. 55153/12, 25 August 2015

[Dubowska and Skup v. Poland](#) (dec.), nos. 33490/96 and 34055/96, Commission decision of 18 April 1997, DR 89, p. 156

[Dudová and Dud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40224/98, 30 January 2001

[Dyagilev v. Russia](#), no. 49972/16, 10 March 2020

## —E—

[E. and G.R. v. Austria](#), no. 9781/82, Commission decision of 14 May 1984, DR 37

[E.S. v. Austria](#), no 38450/12, 25 octobre 2018

[Ebrahimian v. France](#), no. 64846/11, CEDH 2015

*Efstathiou v. Greece*,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Église Évangélique Missionnaire and Salaûn v. France*, no. 25502/07, 31 January 2013  
*El Majjaoui and Stichting Touba Moskee v. the Netherlands* (dec.), no. 25525/03, 14 February 2006  
*El Majjaoui and Stichting Touba Moskee v. the Netherlands* (striking out) [GC], no. 25525/03, 20 December 2007  
*El Morsli v. France* (dec.), no. 15585/06, 4 March 2008  
*Enver Aydemir v. Turkey*, no. 26012/11, 7 June 2016  
*Erçep v. Turkey*, no. 43965/04, 22 November 2011  
*Erlich and Kastro v. Romania*, nos. 23735/16 and 23740/16, 9 June 2020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s. 48420/10 and 3 others, ECHR 2013

—F—

*F.L. v. France* (dec.), no. 61162/00, 3 November 2005  
*F.P. v. Germany*, no. 19459/92, Commission decision of 29 March 1993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GC], no. 56030/07, ECHR 2014  
*Feti Demirtaş v. Turkey*, no. 5260/07, 17 January 2012  
*Finska Församlingen i Stockholm and Hautaniemi v. Sweden*, no. 24019/94, Commission decision of 11 April 1996, DR 85  
*Folgerø and Others v. Norway* [GC], no. 15472/02, ECHR 2007-III  
*Francesco Sessa v. Italy*, no. 28790/08, ECHR 2012  
*Fränklin-Beentjes and CEFLU-Luz da Floresta v. the Netherlands* (dec.), no. 28167/07, 6 May 2014  
*Fusu Arcadie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22218/06, 17 July 2012

—G—

*Gamaleddyn v. France* (dec.), no. 18527/08, 30 June 2009  
*Genov v. Bulgaria*, no. 40524/08, 23 March 2017  
*Giniewski v. France*, no. 64016/00, ECHR 2006-I  
*Glas Nadezhda EOOD and Anatoliy Elenkov v. Bulgaria*, no. 14134/02, 11 October 2007  
*Gluchowski and Others v. France* (dec.), no. 44789/98, 14 December 1999  
*Gottesmann v. Switzerland*, no. 10616/83, Commission decision of 4 December 1984, DR 40  
*Gough v. the United Kingdom*, no. 49327/11, 28 October 2014  
*Greek Catholic Parish of Pesceana and Others v. Romania* (dec.), no. 35839/07, 14 April 2015  
*Griechische Kirchengemeinde München und Bayern e.V. v. Germany* (dec.), no. 52336/99, 18 September 2007  
*Gromada Ukrayinskoyi Greko-Katolitskoyi Tserkvy Sela Korshiv v. Ukraine* (dec.), no. 9557/04, 3 May [2016  
*Grzelak v. Poland*, no. 7710/02, 15 June 2010  
*Güler and Uğur v. Turkey*, nos. 31706/10 and 33088/10, 2 December 2014  
*Gündüz v. Turkey* (dec.), no. 59997/00, 9 November 2004  
*Gütl v. Austria*, no. 49686/99, 12 March 2009



—H—

*H. and B. v. the United Kingdom*, no. 11991/86,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1986  
*Habitants d’Alsemberg and de Beersel v. Belgium*, no. 1474/62, Commission decision of 26 July 1963  
*Habitants de Leeuw-St. Pierre v. Belgium*, no. 2333/64, Commission decision of 15 July 1965  
*Hamidović v. Bosnia and Herzegovina*, no. 57792/15, ECHR 2017  
*Hasan and Eylem Zengin v. Turkey*, no. 1448/04, 9 October 2007  
*Hassan and Tchaouch v. Bulgaria* [GC], no. 30985/96, ECHR 2000-XI  
*Hernandez Sanchez v. Spain*, no. 30479/96, Commission decision of 4 September 1996  
*Herrmann v. Germany* [GC], no. 9300/07, 26 June 2012  
*Hizb Ut-Tahrir and Others v. Germany* (dec.), no. 31098/08, 12 June 2012  
*Hoffmann v. Austria*, 23 June 1993, Series A no. 255-C  
*Holy Synod of the Bulgarian Orthodox Church (Metropolitan Inokentiy) and Others v. Bulgaria*, nos. 412/03 and 35677/04, 22 January 2009  
*Hubaux v. Belgium* (dec.), no. 11088/84, Commission decision of 9 May 1988

—I—

*İ.A. v. Turkey*, no. 42571/98, ECHR 2005-VIII  
*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nos. 1413/08 and 28621/11, 28 August 2018  
*Iera Moni Profitou Iliou Thiras v. Greece* (dec.), no. 32259/02, 21 November 2002  
*Iglesia Bautista "El Salvador" and Ortega Moratilla v. Spain*, no. 17522/90, Commission decision of 11 January 1992, DR 72  
*Igors Dmitrijevs v. Latvia*, no. 61638/00, 30 November 2006  
*Indelicato v. Italy* (dec.), no. 31143/96, 6 July 2000  
*Inhabitants of Leeuw-St. Pierre v. Belgium*, no. 2333/64, Commission decision of 15 July 1965  
*Institut de prêtres français and Others v. Turkey*, no. 26308/95, Commission decision of 19 January 1998, DR 92  
*Institut de prêtres français and Others v. Turkey* (friendly settlement), no. 26308/95, 14 December 2000  
*ISKC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20490/92, Commission decision of 8 March 1994, DR 76  
*Islamische Religionsgemeinschaft in Berlin e.V. v. Germany* (dec.), no. 53871/00, ECHR 2002-X  
*Ismailova v. Russia*, no. 37614/02, 29 November 2007  
*Ivanova v. Bulgaria*, no. 52435/99, 12 April 2007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no. 62649/10, ECHR 2016

—J—

*J.L. v. Finland* (dec.), no. 32526/96, 16 November 2000  
*Jakóbski v. Poland*, no. 18429/06, 7 December 2010  
*Jasvir Singh v. France* (dec.), no. 25463/08, 30 June 2009  
*Jehovah’s Witnesses of Moscow and Others v. Russia*, no. 302/02, 10 June 2010  
*Jehovas Zeugen in Österreich v. Austria*, no. 27540/05, 25 September 2012  
*Jenik v. Austria* (dec.), nos. 37794/07 and 7 others, 20 November 2012  
*Johannische Kirche and Peters v. Germany* (dec.), no. 41754/98, ECHR 2001-VIII  
*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18 December 1986, Series A no. 112

*Jone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2639/04, 13 September 2005  
*Josephides v. Turkey* (dec.), no. 21887/93, 24 August 1999  
*Juma Mosque Congregation and Others v. Azerbaijan* (dec.), no. 15405/04, 8 January 2013

—K—

*K. v. the Netherlands*, no. 15928/89, Commission decision of 13 May 1992  
*K. and v. v. the Netherlands* (dec.), no. 11086/84, Commission decision of 16 July 1987  
*Karaahmed v. Bulgaria*, no. 30587/13, 24 February 2015  
*Kalaç v. Turkey*, 1 Jul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Karaduman v. Turkey*, no. 16278/90, Commission decision of 3 May 1993, DR 74  
*Karaduman v. Turkey* (dec.), no. 41296/04, 3 April 2007  
*Karakuzey v. Germany*, no. 26568/95, Commission decision of 16 October 1996  
*Karlsson v. Sweden*, no. 12356/86, Commission decision of 8 September 1988, DR 57  
*Keller v. Germany*, no. 36283/97, Commission decision of 4 March 1998  
*Kenar v. Turkey* (dec.), no. 67215/01, 1 December 2005  
*Kervanci v. France*, no. 31645/04, 4 December 2008  
*Khan v. the United Kingdom*, no. 11579/85, Commission decision of 7 July 1986, DR 48  
*Kimlya and Others v. Russia*, nos. 76836/01 and 32782/03, ECHR 2009  
*Kjeldsen, Busk Madsen and Pedersen v. Denmark*, 7 December 1976, Series A no. 23  
*Klein v. Slovakia*, no. 72208/01, 31 October 2006  
*Klein and Others v. Germany*, nos. 10138/11 and 3 others, 6 April 2017  
*Knudsen v. Norway*, no. 11045/84, Commission decision of 8 March 1985, DR 42  
*Kohn v. Germany* (dec.), no. 47021/99, 23 March 2000  
*Kokkinakis v. Greece*, 25 May 1993, Series A no. 260-A  
*Kontakt-Information-Therapie and Hagen v. Austria*, no. 11921/86, Commission decision of 12 October 1988, DR 57  
*Konttinen v. Finland*, no. 24949/94, Commission decision of 3 December 1996, DR 87  
*Korostelev v. Russia*, no. 29290/10, 12 May 2020  
*Köse and Others v. Turkey* (dec.), no. 26625/02, ECHR 2006-II  
*Kost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55170/00, 13 April 2006  
*Koppi v. Austria*, no. 33001/03, 10 December 2009  
*Kovalkovs v. Latvia* (dec.), no. 35021/05, 31 January 2012  
*Krupko and Others v. Russia*, no. 26587/07, 26 June 2014  
*Kubalska and Kubalska-Holuj v. Poland* (dec.), no. 35579/97, Commission decision of 22 October 1997  
*Kurtuluş v. Turkey* (dec.), no. 65500/01, ECHR 2006-II  
*Kustannus OY Vapaa Ajattelijä AB and Others v. Finland*, no. 20471/92, Commission decision of 15 April 1996, DR 85  
*Kuznetsov v. Ukraine*, no. 39042/97, 29 April 2003  
*Kuznetsov and Others v. Russia*, no. 184/02, 11 January 2007

—L—

*Lachiri v. Belgium*, no. 3413/09, 18 September 2018  
*Lajd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dec.), no. 20984/05, 3 March 2009  
*Lang v. Austria*, no. 28648/03, 19 March 2009  
*Larissis and Others v. Greece*, 24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Lautsi and Others v. Italy* [GC], no. 30814/06, ECHR 2011  
*Le Court Grandmaison and Fritz v. France*, nos. 11567/85 and 11568/85, Commission decision of 6 July 1987, DR 53  
*Leela Förderkreis e.V. and Others v. Germany*, no. 58911/00, 6 November 2008  
*Leyla Şahin v. Turkey* [GC], no. 44774/98, ECHR 2005-XI  
*Löffelmann v. Austria*, no. 42967/98, 12 March 2009  
*Logan v. the United Kingdom*, no. 24875/94, Commission decision of 6 September 1996, DR 86  
*Lombardi Vallauri v. Italy*, no. 39128/05, 20 October 2009  
*Lotter v. Bulgaria* (dec.), no. 39015/97, 6 February 2003  
*Lotter and Lotter v. Bulgaria* (friendly settlement), no. 39015/97, 19 May 2004  
*Lundberg v. Sweden* (dec.), no. 36846/97, 28 August 2001

—M—

*Magyar Keresztény Mennonita Egyház and Others v. Hungary*, nos. 70945/11 and 8 others, ECHR 2014  
*Mann Singh v. France* (dec.), no. 24479/07, 13 November 2008  
*Manoussakis and Others v. Greece*, 2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Mansur Yalçın and Others v. Turkey*, no. 21163/11, 16 September 2014  
*Mariş v. Romania* (dec.), no. 58208/14, 29 September 2020  
*Martins Casimiro and Cerveira Ferreira v. Luxembourg* (dec.), no. 44888/98, 27 April 1999  
*Marty v. Switzerland*, no. 21566/93, Commission decision of 30 August 1993  
*Masaev v. Moldova*, no. 6303/05, 12 May 2009  
*McFeel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8317/78, Commission decision of 15 May 1980, DR 20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no. 71156/01, 3 May 2007  
*Metropolitan Church of Bessarabia and Others v. Moldova*, no. 45701/99, ECHR 2001-XII  
*Metodiev and Others v. Bulgaria*, no. 58088/08, 15 June 2017  
*Mignot v. France* (dec.), no. 37489/97, Commission decision of 21 October 1998  
*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no. 798/05, 15 September 2009  
*Moscow Branch of the Salvation Army v. Russia*, no. 72881/01, ECHR 2006-XI  
*Mockutė v. Lithuania*, no. 66490/09, 27 February 2018  
*Moroz v. Ukraine*, no. 5187/07, 2 March 2017  
*Mozer v.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no. 11138/10, ECHR 2016  
*Murphy v. Ireland*, no. 44179/98, ECHR 2003-IX  
*Mushfig Mammadov and Others v. Azerbaijan*, nos. 14604/08 and 3 others, 17 October 2019

—N—

*N.F. v. Italy*, no. 37119/97, ECHR 2001-IX  
*Nasirov and Others v. Azerbaijan*, no. 58717/10, 20 February 2020  
*Natoli v. Italy*, no. 26161/95, Commission decision of 18 May 1998  
*Neagu v. Romania*, no. 21969/15, 10 November 2020  
*Nolan and K. v. Russia*, no. 2512/04, 12 February 2009  
*Nyyssönen v. Finland*, no. 30406/96, Commission decision of 15 January 1998

—O—

*Obst v. Germany*, no. 425/03, 23 September 2010  
*Office culturel de Cluny v. France* (dec.), no. 1002/02, 22 March 2005  
*Omkananda and Divine Light Zentrum v. Switzerland*, no. 8118/77, Commission decision of 19 March 1981, DR 25  
*Orthodox Ohrid Archdiocese (Greek-Orthodox Ohrid Archdiocese of the Peć Patriarchy)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3532/07, 16 November 2017  
*Otto-Preminger-Institut v. Austria*, 20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5-A  
*Osmanoğlu and Kocabaş v. Switzerland*, no. 29086/12, ECHR 2017  
*Ouardiri v. Switzerland* (dec.), no. 65840/09, 28 June 2011  
*Öz v. Germany*, no. 32168/96, Commission decision of 3 December 1996

—P—

*Palau-Martinez v. France*, no. 64927/01, ECHR 2003-XII  
*Pannulo and Forte v. France* (dec.), no. 37794/97, 23 November 1999  
*Papavasiliakis v. Greece*, no. 66899/14, 15 September 2016  
*Parry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2971/05, ECHR 2006-XV  
*Pavlidis and Georgakis v. Turkey* (dec.), nos. 9130/09 and 9143/09, 2 July 2013  
*Pendrago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1496/98, Commission decision of 19 October 1998  
*Pentidis and Others v. Greece*, 9 June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I  
*Perovy v. Russia*, no. 47429/09, 20 October 2020  
*Perry v. Latvia*, no. 30273/03, 8 November 2007  
*Phull v. France* (dec.), no. 35753/03, ECHR 2005-I  
*Pichon and Sajous v. France* (dec.), no. 49853/99, ECHR 2001-X  
*Pitkevich v. Russia* (dec.), no. 47936/99, 8 February 2001  
*Poltoratski v. Ukraine*, no. 38812/97, ECHR 2003-V  
*Pretty v. the United Kingdom*, no. 2346/02, ECHR 2002-III

—R—

*Ranjit Singh v. France* (dec.), no. 27561/08, 30 June 2009  
*Razaghi v. Sweden* (dec.), no. 64599/01, 11 March 2003  
*Refah Partisi (the Welfare Party) and Others v. Turkey* [GC], nos. 41340/98 and 3 others, ECHR 2003-II  
*Reformed Church of X. v. the Netherlands*, no. 1497/62, Commission decision of 14 December 1962  
*Religionsgemeinschaft der Zeugen Jehovas and Others v. Austria*, no. 40825/98, 31 July 2008  
*Representation of the Union of Councils for Jew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Union of Jewish*  
*Religious organisations of Ukraine v. Ukraine* (dec.), no. 13276/05, 1 April 2014  
*Revert and Legallais v. France*, nos. 14331/88 and 14332/88, Commission decision of 8 September 1989, DR 62  
*Rommelfanger v. Germany*, no. 12242/86, Commission decision of 6 September 1989, DR 62  
*Rupprecht v. Spain* (dec.), no. 38471/10, 19 February 2013  
*Rymsko-Katolytska Gromada Svyatogo Klimentiya v Misti Sevastopoli v. Ukraine* (dec.), no. 22607/02, 3 May 2016

—S—

*S.A.S. v. France* [GC], no. 43835/11, ECHR 2014  
*S.H. and H.V. v. Austria*, no. 19860/91, Commission decision of 13 January 1993  
*Sadik Amet and Others v. Greece* (dec.), no. 64756/01, 10 October 2002  
*Salonen v. Finland* (dec.), no. 27868/95, Commission decision of 2 July 1997, DR 90, p. 60  
*Saniewski v. Poland*, (dec.), no. 40319/98, 26 June 2001  
*Saran v. Romania*, no. 65993/16, 10 November 2020  
*Savda v. Turkey*, no. 42730/05, 12 June 2012  
*Savez crkava "Riječ života" and Others v. Croatia*, no. 7798/08, 9 December 2010  
*Schüth v. Germany*, no. 1620/03, ECHR 2010  
*Schilder v. the Netherlands* (dec.), no. 2158/12, 16 October 2012  
*Scientology Kirche Deutschland e.V. v. Germany*, no. 34476/97, Commission decision of 7 April 1997, DR 89  
*Serbisch-griechisch-orientalische Kirchengemeinde zum Heiligen Sava in Wien v. Austria*, no. 20966/92, Commission decision of 30 November 1994  
*Serif v. Greece*, no. 38178/97, ECHR 1999-IX  
*Şerife Yiğit v. Turkey* [GC], no. 3976/05, 2 November 2010  
*Sert v. Turkey* (dec.), no. 47491/99, 8 July 2004  
*Seyidzade v. Azerbaijan*, no. 37700/05, 3 December 2009  
*Siebenhaar v. Germany*, no. 18136/02, 3 February 2011  
*Šijakova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no. 67914/01, 6 March 2003  
*Sinan Işık v. Turkey*, no. 21924/05, ECHR 2010  
*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no. 2330/09, ECHR 2013  
*Skugar and Others v. Russia* (dec.), no. 40010/04, 3 December 2009  
*Sodan v. Turkey*, no. 18650/05, 2 February 2016  
*Sofianopoulos and Others v. Greece* (dec.), nos. 1977/02 and 2 others, ECHR 2002-X  
*Sotirov and Others v. Bulgaria* (dec.), no. 13999/05, 5 July 2011  
*Spampinato v. Italy* (dec.), no. 23123/04, 29 March 2007  
*Spetz and Others v. Sweden*, no. 20402/92, Commission decision of 12 October 1994  
*Staatkundig Gereformeerde Partij v. the Netherlands* (dec.), no. 58369/10, 10 July 2012  
*Stedman v. the United Kingdom*, no. 29107/95, Commission decision of 9 April 1997, DR 89  
*Stavropoulos and Others v. Greece*, no. 52484/18, 25 June 2020  
*Sukyo Mahikari France v. France* (dec.), no. 41729/09, 8 January 2013  
*Supreme Holy Council of the Muslim Community v. Bulgaria*, no. 39023/97, 16 December 2004  
*Svyato-Mykhaylivska Parafiya v. Ukraine*, no. 77703/01, 14 June 2007

—T—

*Tagiyev and Huseynov v. Azerbaijan*, no. 13274/08, 5 December 2019  
*Tanyar and Others v. Turkey* (dec.), no. 74242/01, 7 June 2005  
*Tarhan v. Turkey*, no. 9078/06, 17 July 2012  
*Tennenbaum v. Sweden*, no. 16031/90, Commission decision of 3 May 1993  
*Tepeli and Others v. Turkey* (dec.), no. 31876/96, 11 September 200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the United Kingdom*, no. 7552/09, 4 March 2014

*The Religious Denomination of Jehovah's Witnesses in Bulgaria v. Bulgaria*, no. 5301/11, 10 November 2020

*Thlimmenos v. Greece* [GC], no. 34369/97, ECHR 2000-IV

*Tiğ v. Turkey* (dec.), no. 8165/03, 24 May 2005

*Tsartsidze and Others v. Georgia*, no. 18766/04, 17 January 2017

*Tsaturyan v. Armenia*, no. 37821/03, 10 January 2012

## —U—

*Union des Athées v. France*, no. 14635/89, Commission's report of 6 July 1994

*Universelles Leben e.V. v. Germany*, no. 29745/96, Commission decision of 27 November 1996

## —V—

*V. v. the Netherlands*, no. 10678/83, Commission decision of 5 July 1984, DR 39

*Valsamis v. Greece*,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Van den Dungen v. the Netherlands*, no. 22838/93, Commission decision of 22 February 1995, DR 80

*Vartic v. Romania (no. 2)*, no. 14150/08, 17 December 2013

*Van Schijndel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no. 30936/96, Commission decision of 10 September 1997

*Vavřic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nos 47621/13 and 5 others, 8 April 2021

*Vereniging Rechtswinkels Utrecht v. the Netherlands*, no. 11308/84, Commission decision of 13 March 1986, DR 46

*Vergos v. Greece*, no. 65501/01, 24 June 2004

*Viel v. France* (dec.), no. 41781/98, 14 December 1999

*Von Pelser v. Italy*, no. 14254/88, Commission decision of 9 November 1990

## —W—

*W. v. the United Kingdom*, no. 18187/91, Commission decision of 10 February 1993

*Wasmuth v. Germany*, no. 12884/03, 17 February 2011

*Williamson v. the United Kingdom*, no. 27008/95, Commission decision of 17 May 1995

*Wingrove v. the United Kingdom*, 25 Nov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 —X—

*X. v. Austria*, no. 1753/63, Commission decision of 15 February 1965

*X. v. Austria*, no. 1718/62, Commission decision of 22 April 1965

*X. v. Austria*, no. 4982/71, Commission decision of 22 March 1972

*X. v. Austria*, no. 8652/79, Commission decision of 15 October 1981, DR 26

*X. v. Denmark*, no. 7374/76, Commission decision of 8 March 1976, DR 5

*X. v. Germany*, no. 2413/65, Commission decision of 16 December 1966

*X. v. Germany*, no. 3110/67, Commission decision of 19 July 1968

*X. v. Germany*, no. 4445/70, Commission decision of 1 April 1970

*X. v. Germany*, no. 6167/73, Commission decision of 18 December 1974, DR 1

*X. v. Germany*, no. 8741/79, Commission decision of 10 March 1981, DR 24

*X. v. Iceland*, no. 2525/65, Commission decision of 6 February 1967  
*X. v. Sweden*, no. 172/56, Commission decision of 20 December 1957  
*X. v. Sweden*, no. 434/58, Commission decision of 30 June 1959  
*X. v. Sweden*, no. 911/60, Commission decision of 10 April 1961  
*X. v. Sweden*, no. 7911/77, Commission decision of 12 December 1977, DR 12  
*X. v. the Netherlands*, no. 1068/61, Commission decision of 14 December 1962  
*X. v. the Netherlands*, no. 2065/63, Commission decision of 14 December 1965  
*X. v. the Netherlands*, no. 2988/66, Commission decision of 31 May 1967  
*X. v. the Netherlands*, no. 2648/65, Commission decision of 6 February 1968  
*X. v. the United Kingdom*, no. 5442/72, Commission decision of 20 December 1974, DR 1  
*X. v. the United Kingdom*, no. 5947/72, Commission decision of 5 March 1976, DR 5  
*X. v. the United Kingdom*, no. 6886/75, Commission decision of 18 May 1976, DR 5  
*X. v. the United Kingdom*, no. 7291/75, Commission decision of 4 October 1977, DR 11  
*X. v. the United Kingdom*, no. 7992/77, Commission decision of 12 July 1978, DR 14  
*X. v. the United Kingdom*, no. 8160/78, Commission decision of 12 March 1981, DR 22  
*X. v. the United Kingdom*, no. 8231/78, Commission decision of 6 March 1982, DR 28  
*X. and Church of Scientology v. Sweden*, no. 7805/77, Commission decision of 5 May 1979, DR 16  
*X. Ltd. and Y. v. the United Kingdom*, no. 8710/79, Commission decision of 7 May 1982, DR 28  
*X., Y. and Z. v. Germany*, no. 6850/74, Commission decision of 18 May 1976, DR 5

—Y—

*Yanaşık v. Turkey*, no. 14524/89, Commission decision of 6 January 1993, DR 74

—Z—

*Z. and T.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7034/05, ECHR 2006-III  
*Zaoui v. Switzerland* (dec.), no. 41615/98, 18 January 2001